

기부금 조세지원법제 개선방안 연구

김도승·김현동·이전오



재정법제 연구 11-15-⑧

기부금 조세지원법제 개선방안 연구

김도승·김현동·이전오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기부금 조세지원법제 개선방안 연구

The Study and Improvement of Tax Regulations
about Charitable Contributions

연구자 : 김도승(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Kim, Do-Seung

김현동(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Kim, Hyun-Dong

이전오(성균관대학교 교수)

Lee, Jeon-Oh

2011. 11. 30.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요 약 문

- 금융위기, 사회양극화 심화 등으로 감세와 재정지출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경제위기 극복 및 사회통합을 위한 기부문화 활성화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부에 대한 조세 규정은 더욱 주목을 받고 있음.
- 기부금 공제제도는 기부하는 자가 기부금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가 공제분에 대해 보조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
 - 이는 원래 징수하여야 할 세수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기부금 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것은 불필요한 세수의 누수 방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 기부금 공제대상 단체에 대한 조세지원의 효과를 고려할 때 지정단체의 적정성은 조세지출의 적정성 문제와 결부되므로, 기부금 공제제도가 원래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제도를 올바르게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
 - 하지만 현행 기부금 공제제도는 공익성 기준이 불명확함에 따른 조세혜택의 불합리성, 기부금 공제대상 여부 및 공제 수준에 대한 일관성 결여, 각 공제한도의 타당성 결여, 공제율 격차의 과다 등에 대한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음.

- 공익성기부의 사회적 효과를 고려하였을 때, 원래의 입법 취지가 법규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관련 법규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고찰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익(public benefit)이란, 사회 전체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공익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판단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음.
- 세법상 공익의 개념이 무엇인지 법을 통해 그 개념을 규명하는 것은 한계에 직면
 - 현행법 체계에서 공익의 개념은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등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 현행법상 열거주의에 의한 공익사업에 관한 규정 태도는 열거주의가 가지는 장·단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음.
 - 공익성을 가지는 단체가 법에 빠짐없이 규정되지 않는 이상 비슷한 수준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중 법에 규정된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
 - 정립되지 않은 공익의 개념은 조세혜택의 차등적 부여에 대한 현행 규정의 근거를 약화
- 상기의 문제점들을 고려하였을 때 공익의 개념을 법에 담는 것보다 기부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단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

- 현행법에 따르면 법이나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단체이기만 한다면 기부받은 재산 등의 실제 사용처와 관계 없이 법정이나 지정기부금의 분류를 적용
 - 이러한 방식은 기부 받은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평가는 배제한 채 기부 받은 단체가 법에서 어떻게 분류되는지에 따라 공제혜택을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을 적용받는 단체들이더라도 실제로 모집한 기부금을 어느 사업에 지출하는지 실제 사용비율을 따져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함.
- 기부행위가 금전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형태, 예컨대 주식이나 부동산 등 여러 형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을 기부하는 경우 현행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
 - 비영리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은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 고유목적사업과 무관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부를 받을 당시 고유목적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하지만 세무관서의 판단을 받지 않는 이상 그러한 판단이 옳은지 명확하지 않음.
 - 비상장주식을 기부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평가에 관한 사항임.

- 여러 다각도의 측면에서 기부방법을 다각화하려는 노력이 필요
 - 부나 기부를 받는 단체 간의 지속적인 정책협의를 통해 기부형태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여, 현실태와 향후 기부를 확산시키기 위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가능한 방안을 모색
- 일반적으로 소액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행위를 통해 이전되는 금전이나 재산의 사용은 기부 이후 기부자가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이 통상
 - 어느 정도의 고액을 기부하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라는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경우가 발생
 - 기부금의 사용과 기부자의 의사가 적절히 조화될 필요성
- 기부가 있는 경우 기부재산에 대한 소유권 및 관리권이 수증단체에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기부자의 수익자 지정권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의 수익권을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
- 용처를 지정하여 기부한 기부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계약위반이라는 이유로 기부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발생할 때, 만약 해당 기부금을 다른 단체에 기부한다면 가산세나 가산금을 추징함이 없이 종전의 세제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 기부금 수령단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음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 미국과 같이 연간 수입기준으로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공익법인에 관한 여러 규제를 한 곳에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 주제어 : 기부금, 기부, 자선단체, 공익, 비영리단체, 법인세, 소득세

Abstract

- Due to tax reduction from financial crisis and fiscal payment, concerns have been raised over financial soundness. In these circumstances, tax regulations about charitable contributions receive attention for overcoming economic crisis and social integration.
- The tax regulations about charitable contributions generate the effect to decrease internal revenue by allowing the deduction of charitable contributions. Therefore, to design the tax system of charitable contributions reasonably is interrelated to prevent decreasing of internal revenue.
- This paper studies the problems of regulations of tax law about charitable contributions and suggest the solutions.
 - The current law does not regulate the definition of public benefit due to the difficulty of defining. This could be grounds for the current regulations, that is positive system designating the tax deductible organizations when the donors transfer cash or property.
 - However, this method could be against fairness if regulations do not enumerate the organizations without exception. Regarding to the above problems, it is appropriate to replace positive system by negative system.

- Making a contribution could happen not only cash or cash equivalent but also securities, real estate, and so on. In this case, there are various difficulties. For example, it is not easy to evaluate unlisted securities because there are various theories.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required to diversify the method of a contributions.

- Recently, donors tend to figure out the use of the contributions. Thus, it needs to harmonize the intention of donors and the use of the donation. Additionally, the criteria of posting documents such as balance sheet, income statement, the detailed statement about contributions in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should be amended to the criteria of annual revenue. Furthermore, various regulations on NPO should be integrated into a single law.

➤ Key Words : charitable contribution, donation, charity, public benefits, NGO, Corporations Tax Act, Income Tax Act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9
제 1 장 서 론	15
제 1 절 연구의 목적	15
제 2 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 방법	18
제 2 장 기부의 법적 의미와 현황	21
제 1 절 기부의 법적 의미	21
1. 기부의 민법상 의미	21
2. 기부의 세법상 의미	22
제 2 절 우리나라 기부금의 규모	23
1. 개 요	23
2. 개인의 기부금 현황	24
3. 법인의 기부금 현황	28
4. 조세지출보고서에 나타난 기부금 규모	39
제 3 장 우리나라 기부금 조세지원법제	41
제 1 절 기부금 공제제도 관련 법령 제 · 개정 추이 분석	41
1. 소득세법	41
2. 법인세법	48

제 2 절	현행 기부금 조세지원법제 분석	55
제 3 절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관련 제도	62
1.	비영리법인의 범위	62
2.	정보 공개제도	65
3.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	67
4.	기부금 관리제도	70
제 4 장	주요국의 입법례	73
제 1 절	미 국	73
1.	개 요	73
2.	이론적 논쟁	76
3.	기부금공제 단체들의 자격	82
4.	자선단체들의 기본개념	83
5.	기부금 관련 세부내용	84
6.	소득공제 제한규정의 적용 순서	85
7.	기부금 공제시기	87
8.	기부금액의 산정	87
9.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88
10.	소 결	93
제 2 절	캐나다	94
1.	개 요	94
2.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95
제 3 절	일 본	99
1.	개 요	99
2.	기부금 관련 세제	100

3.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105
4.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관련 제도	111
제 4 절 영 국	131
1. 개 요	131
2. 기부금 대상단체	132
3. 개인에 의한 기부금	133
4. 법인에 의한 기부금	138
제 5 절 프 랑 스	140
1. 개인에 의한 기부	140
2. 법인에 의한 기부	140
제 6 절 주 요 국 의 세 제 비 교	141
제 5 장 기부금 조세지원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43
제 1 절 논의의 기초	143
1. 입법형식의 측면	143
2. 입법내용의 측면 : 실질적 법치주의, 평등의 원칙	146
제 2 절 공익성 기준에 대한 법적 정합성	149
1. 공익의 일반적 개념	149
2. 세법상 공익의 개념	150
3. 문제점과 개선방안	154
제 3 절 기부금의 재분류 문제	156
1. 문제점	156
2. 지출기준의 적용	158

제 4 절 기부 방법 및 평가에 관한 문제점	159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159
2. 개선방안	161
제 5 절 기부자 의사를 반영한 제도 마련	167
1. 평 가	167
2. 개선방안	168
제 6 절 기부금 수령단체의 투명성 제고	170
1. 공익법인 규모별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관리감독 방법	170
2. 수입 및 사용내역의 공시	171
제 6 장 결 론	175
참 고 문 헌	181

【 불 임 】

< 불임 1 >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 단체	185
< 불임 2 >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	191
< 불임 3 > 소득세법상 기부금대상민간단체(2011.6.30. 현재)	203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오늘날 사회복지 및 공익 증진을 위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정부만의 역할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분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는 여러 지원정책을 사용한다. 기부에 대한 조세 규정(세제유인정책)은 그러한 정책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

사실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굳이 기부에 대한 혜택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 공익목적에 사용되는 재원의 통로가 무엇인지 따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갈수록 다변화되고 복잡해지는 사회구조와 국가 역할 내지 기능의 한계를 감안하여 본래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역할 내지 기능의 일부를 민간부문과 나누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의 분담 측면뿐만이 아니라, 법인이나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의 용처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측면에서도 기부에 대한 조세규정은 의미를 가진다. 법인 또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징수한 법인세나 소득세 중 일부를 국가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세금이 징수된 후의 가처분소득 중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공익목적으로 기부를 할 경우를 가정해 본다면, 기부금 규모 자체로 보았을 때 후자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이 세후소득의 전액을 개인의 유흥이나 오락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그 중 일부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위기, 사회양극화 심화 등으로 감세와 재정지출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경제위기 극복 및 사회통합을 위한 기

부문화 활성화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부에 대한 조세 규정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기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반적으로 기부란 자선 사업 내지 공공사업을 위하여 돈이나 기타 물건 등을 반대급부 없이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세법에서는 ‘기부’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만, 기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는 않고 있으며, 다만 ‘기부금’을 타인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으로 정의하고 있다.¹⁾ 따라서 기부는 사업과 무관하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타인에게 증여하는 행위로 일응 해석할 수 있다.

사전적 의미나 세법상의 개념과 같이 기부금은 본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의 경우 과세소득의 계산에서 손금 내지 필요경비, 세액공제 등을 통해 과세소득이나 세액을 감소시키는 지출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과세상의 원칙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기부금이 미치는 영향과 기부금 공제 대상단체의 사회적 역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기부금 중 특히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행법은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즉,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정요건에 해당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개인의 경우 필요경비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법인의 경우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기부금 공제제도는 기부하는 자가 기부금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가 공제분에 대해 보조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는 원래 징수하여야 할 세수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기부금 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것은 불필요한 세수의 누수 방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

기부금 공제대상 단체에 대한 조세지원의 효과를 고려할 때 지정단체의 적정성은 조세지출의 적정성 문제와 결부되므로, 기부금 공제제도가 원래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제도를 올바르게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행 기부금 공제제도는 공익성 기준이 불명확함에 따른 조세혜택의 불합리성, 기부금 공제대상 여부 및 공제 수준에 대한 일관성 결여, 각 공제한도의 타당성 결여, 공제율 격차의 과다 등에 대한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최근 이른바 ‘반값등록금’ 문제와 관련하여 대학 기부금 공제를 확대하려는 정책과 관련하여 기부금 공제의 법제도적 성격, 타당성 등에 대한 논의가 촉발된 바 있다.

기부에 관한 종전의 대부분의 논의들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직까지 기부문화의 확산이 여전히 필요한 한국의 상황에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은 기부의 긍정적 효과를 감안하였을 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의 개선방안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지더라도 구체적인 접근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 기부금 공제한도의 확대나 기부금 공제대상단체의 확대 등을 통해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실현할 수도 있으나, 기부금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기부가 올바른 곳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투입 대비 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방식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다.

아직까지 기부문화가 일반화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여건상 일단 규모 자체를 늘리는 것에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진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재원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배분 측면, 기부규모가 국가경제, 예컨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무한정 상승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기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기부문화가 확

산되려는 현 시점부터 관련 세제는 올바르게 자리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기부금 관련 세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제 2 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 방법

전술한 연구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본 연구가 고찰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익성을 기준으로 기부금 단체를 지정하고 소득공제범위를 차등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지정 기부금 단체 간의 공익성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공익성 개념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이다.

둘째,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를 정립된 공익성 기준의 충족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에서 격차를 축소하는 방안에 관한 고찰이다.

셋째, 기부금 공제대상 여부 및 공제 수준을 관련부처에서 당시 판단에 따라 법률 또는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함으로써, 합리적 기준이나 원칙을 발견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비판이 있는바, 일관성이 있는 기준 또는 원칙 마련을 모색한다.

논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 기부의 법적 의미와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3장에서는 우리나라 기부금 세제지원제도 현황 및 관련 법제를 분석한다. 4장에서는 기부금 공제와 관련한 주요국의 입법례를 고찰하고 5장에서는 기부금 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해 논한다. 마지막으로 6장은 결론 및 요약으로 그간의 논의를 정리한다.

본 보고서의 전반 및 법제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과제책임자인 김도승 부연구위원이 총괄하였고, 현행 법제 분석 및 문제점 제시(제2장 및 제3장)에 대해서는 이전오 교수가 참여하였으며, 기부금 조세지원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제4장)에 대해서는 김현동 교수가 참여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제 2 장 기부의 법적 의미와 현황

제 1 절 기부의 법적 의미

1. 기부의 민법상 의미

기부는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음”이라는 의미를 뜻한다.²⁾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민법상 기부와 유사한 용례로 증여나 유증 등을 들 수 있다.

(1) 증 여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민법상 정의된다(민법 제554조). 증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상대방에게 재산의 수령을 강요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상대방인 수증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는 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독행위인 유증이나 채무면제와 구분된다.

증여는 낙성, 무상, 편무, 불요식의 계약인데 이 때 “무상”이란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어떠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재산을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

(2) 유 증

대가 없는 재산의 이전은 반드시 계약에 의해서만 뿐만 아니라 한쪽 상대방의 의사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유증이 그 예에 해당한

2) 네이버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5692700>

다(민법 제1074조). 유증은 유언자의 유언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이익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로, 상속권자가 아닌 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재산을 이전하는 자의 생전의 증여(계약)나 유언을 통해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게 된다. 상속권자는 유언이 없더라도 상속을 받게 되지만, 유언을 통해 상속비율이 변경될 수는 있다.

2. 기부의 세법상 의미

세법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여러 조문에서 “기부”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기부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다.

국세기본법의 경우 고액·상습채납자 등의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대한 명단공개에 대해 규정하면서 “기부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국세기본법 제85조의5).³⁾

기부라는 용어의 세법상 정의를 알 수 없으나, 기부라는 행위를 통해 이전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⁴⁾

한편, 조세지원이란 일반적으로 정부가 특정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이나 개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다.⁵⁾ 특히 이는 경제성장과정에서 금융지원과 더불어 정부의 산업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3) ③ 국세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 대상자에게 채납자 또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채납액의 납부 이행 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이행 등을 고려하여 채납자 또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4) 이에 관한 상세는 후술하도록 한다.

5) 옥무석, “S/W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정책연구 04-13, 31면. 이하 조세지원에 관한 일반적 논의는 당해 연구보고서를 참조한 것이므로 각주를 생략하였다.

조세지원에 대한 용어정의는 명확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용어들이 세법상 사용되고 있다. 먼저 조세지출(tax expenditure)은 정부가 세금을 경감해주는 제도에 대하여 정부의 간접적 지출이라는 점이 강조되는 것이고, 조세감면 또는 세제혜택(tax concession)은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 줄어든다는 측면이 강조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조세지원(tax preference)은 정부가 특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세를 감면해준다는 측면이 강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용어들이 구체적인 세법규정에서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지는 불분명하고 실제로는 혼용되어 사용되거나 tax incentive라고 통칭되기도 하지만, 국제적으로 조세감면에 대하여 통용되는 용어는 조세지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세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그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조세지출은 재정지출에 대응하는 조세보조금으로서 조세의 정상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특례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세입의 감소라고 한다.

따라서 법인과 개인이 지출한 일정한 기부금에 대해 세금을 경감해 주고 있으므로 기부금에 관한 현 세제 역시 조세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제 2 절 우리나라 기부금의 규모

1. 개 요

현재 우리나라 기부금규모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 통계자료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여러 문헌에서도 기부금규모를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 추산하고 있다.

그 중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은 국세청이 매년 발간하고 있는 ‘국세 통계연보’를 통해 추산하는 것이다.

하지만 세무자료를 이용한 기부금 규모의 추산은 정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개인의 경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것이고 법인의 경우 과세소득의 계산에 있어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신고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세무상 공제를 위해 신고가 되지 않는 기부의 경우 자료에 포착되지 않는다. 또한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지출된 기부금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 공제가 허용되고 있으므로, 만약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 역시 세무자료에 포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였을 때 세무자료상 확인되는 규모보다 실제 기부금의 규모는 더 크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

기업의 경우 관련 단체의 조사자료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기부 규모를 추산해볼 수 있다. 예컨대, 전경련의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 백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여러 방식을 통한 우리나라 기부금의 규모를 이하에서 고찰하도록 한다.

2. 개인의 기부금 현황

(1) 국세통계연보에 나타난 기부금 규모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09년 현재 개인의 기부금 규모는 약 6.15조 원, 법인의 경우 약 3.46조 원이다. 개인에 의한 기부금이 법인보다 약 1.78배 높은 수준이다. 원래는 금액적 측면에서 법인이 개인보다 더 많이 기부를 하고 있었으나, 2000년대에 접어들어 지속적으로 개인의 기부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0년 기준으로 개인에 의한 기부가 전체 기부금 총액 중 73%를 차지하고 있다.⁶⁾ 이는 금액으로는 약 2,117억 달러 수준

6) Giving USA foundation, “The Annual Report on Philanthropy for the Year 2010 - Executive Summary”, 2011, p. 4.

이다. 법인의 경우는 5%(152.9억 달러)로 상당히 미미한 수준을 보인다. 아직까지는 개인의 기부금 총액이 법인에 비해 많지는 않으나, 개인에 의한 기부가 법인에 의한 기부를 앞질렀다는 점에서 기부문화가 이미 성숙의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평가받는 미국과 같은 추세를 향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표 1 > 법인과 개인의 주요 연도별 소득공제대상 기부금

(단위: 조 원, %)

연도	개인		법인		계	
	금액	증가비율	금액	증가비율	금액	증가비율
1999	0.85	-	2.05	-	2.90	-
2001	2.98	250.5	1.69	△17.56	4.67	61.03
2003	3.74	25.50	2.16	27.81	5.90	26.33
2005	4.32	15.50	2.47	14.35	6.79	15.08
2007	5.43	25.69	3.32	34.41	8.75	28.86
2008	5.66	4.235	3.38	1.807	9.04	3.314
2009	6.15	8.657	3.46	2.366	9.61	6.305

* 출처: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아래 표는 개인의 기부금을 보다 상세히 분석한 것이다.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로 구분하여 1999년 이후 주요 연도별 기부금의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종합소득자에 비해 근로소득자의 기부금이 항상 많음을 알 수 있다.

< 표 2 > 개인의 주요 연도별 소득공제대상 기부금 변화 추이

(단위: 조 원, %)

연 도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자	소 계
1999	0.80	0.05	0.85
2001	2.70	0.28	2.98
2003	3.20	0.54	3.74
2005	3.58	0.74	4.32
2007	4.15	1.28	5.43
2008	4.27	1.39	5.66
2009	4.64	1.51	6.15

(2)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한 우리나라의 기부금 규모⁷⁾

가계동향조사의 가계지출이란 실질적으로 가계의 자산이 감소되는 지출로서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소비지출에는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가구 간 이전 등이 포함되어있다. 비소비지출 중 비영리단체로의 이전은 ‘종교기부금’과 ‘회비 및 기타기부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에서 비영리단체로의 이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2.942%, 2009년 2.706%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큰 변화 없이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비영리단체로의 이전에서 종교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을 기점으로 다소 증가하지만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평균 36.7%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7) 손원익 · 이순태 · 박세경,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2010, 41-43면의 내용을 인용하였음.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비영리단체로의 이전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8%이며,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중 종교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36.65%이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중 회비 및 기타기부금이란 노조, 종중, 상조회 등으로 이전된 금액을 포함한다. 따라서 회비 및 기타기부금에는 일반적인 기부금의 개념과 벗어나는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는 종교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세무자료의 경우 기부금 명세서 전산자료 제출 대상에 따라 누락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기부금 명세서 전산자료 제출 대상은 2007년 연간 200만 원 이상, 2008년 100만 원 이상, 2009년 50만 원 이상을 기부한 기부자이며, 2010년에는 금액 제한이 폐지되어 모든 기부자가 대상이 된다. 따라서 2008년의 경우에는 연간 100만 원 이상인 기부자의 기부금명세서 전산자료만이 세무서 제출 대상이기 때문에 연간 100만 원 이하 소액 기부자의 기부금액이 종교단체 기부금 비율 산정 시 누락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세무자료에 따른 개인기부금에서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기준 약 86.3%에 이르고 있어 가계동향조사에 의한 38.6%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 표 3 > 우리나라의 기부금 규모

(단위: %)

연도	소득 ¹⁾ 에서 차지하는 비중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중 종교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	기부자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²⁾	종교기부금	회비 및 기타기부금		
2003	2.942	0.984	1.959	33.428	89,567명
2004	2.913	0.997	1.916	34.235	88,391명

제 2 장 기부의 법적 의미와 현황

연 도	소득 ¹⁾ 에서 차지하는 비중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중 종교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	기부자
	비영리 단체로의 이전 ²⁾	종교기부금	회비 및 기타기부금		
2005	2.720	1.000	1.720	36.751	102,837명
2006	2.698	1.042	1.655	38.632	90,696명
2007	2.814	1.086	1.728	38.587	86,235명
2008	2.804	1.063	1.741	37.919	84,908명
2009	2.706	1.001	1.705	36.995	85,197명
평 균	2.800	1.025	1.775	36.650	

주: 1) 소득 : 가구 구성원 전체의 소득

2) 비영리단체로의 이전은 종교기부금과 회비 및 기타기부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영리단체로의 이전이란 종교단체, 정당, 종중, 사회운동 단체, 자생상조회 등으로 이전된 금액을 말함. 이 중 종교기부금이란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특정되지 않은 금액을 말하고, 회비 및 기타기부금이란 노조, 종중, 상조회 등 비영리단체의 회비를 말함.

3. 법인의 기부금 현황

(1) 국세통계연보

법인에 의한 기부금은 2009년 기준으로 3.46조 원으로, 구체적으로 법정기부금은 9,437억 원, 특례기부금 9,515억 원, 지정기부금 1.565조 원으로 조사된다. 기부금 수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신고법인수 역시 증가하고 있다.

기부금 전체 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부를 한 것으로 신고한 법인의 수를 고려한 기업당 평균 기부액은 2004년 이후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8년부터는 감소하고 있다.

법인 규모별로는 일반법인에 비해 중소기업의 신고수는 약 4배 정도로 월등히 높으나, 평균기부액은 일반법인이 약 35.12백만 원으로 중소기업에 비해 25배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한편, 주식시장에 상장된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신고법인수 기준으로 상장법인이 1,778개, 비상장법인이 417,642개로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에 비해 234배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업 평균 기부금은 상장법인의 경우 828.36백만 원, 비상장법인의 경우 4.759백만 원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평균 기부금은 상장법인이 오히려 비상장법인에 비해 174배나 높은 수치를 보인다.

< 표 4 > 법인의 기부금 신고 현황

(단위: 개, 백만 원)

구분	신고 법인 수	기부금				기업당 평균 기부액
		소 계	법정 기부금	특례 기부금	지정 기부금	
2004년	316,777	2,158,691	**	**	**	6.815
2005년	333,313	2,470,266	380,991	1,036,945	1,052,330	7.411
2006년	352,647	2,795,622	403,534	1,263,670	1,128,418	7.928
2007년	372,141	3,325,078	833,498	1,139,910	1,351,670	8.935
2008년	398,331	3,378,565	841,681	1,001,506	1,535,378	8.482
2009년	419,420	3,460,709	943,734	951,553	1,565,422	8.251
소 계	419,420	3,460,709	943,734	951,553	1,565,422	8.251
일반 법인	85,415	3,000,122	820,032	916,740	1,263,350	35.12

제 2 장 기부의 법적 의미와 현황

구분	신고 법인 수	기부금				기업당 평균 기부액
		소계	법정 기부금	특례 기부금	지정 기부금	
중소 기업	334,005	460,587	123,702	34,813	34,813	1.378
소계	419,420	3,460,709	943,734	951,553	1,565,422	3.73
상장 법인	1,778	1,472,834	360,562	466,035	646,237	828.36
비상장 법인	417,642	1,987,875	583,172	485,518	919,185	4.759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표 5 > 업태별 기부금 신고 현황

(단위: 개, 백만 원)

업태별	by Industry[C]	419,420	7,478,990	3,460,709	943,734	951,553	1,565,422
농·임·어업	Agriculture, Forestry & Fishing	4,855	14,808	5,023	426	543	4,054
광업	Mining	1,059	12,102	11,838	552	8,883	2,403
제조업	Manufacturing	89,937	2,645,052	1,170,827	297,135	252,250	621,442
전기·가스· 수도업	Utilities	946	18,251	115,702	32,012	66,169	17,521
건설업	Construction	77,573	987,353	334,481	114,682	62,484	157,315
도매업	Wholesale	84,370	1,352,150	172,930	53,240	12,644	107,046
소매업	Retail	13,273	142,462	57,096	12,245	6,982	37,869
음식·숙박업	Food Services & Accommodation	3,627	38,665	24,632	12,259	4,633	7,740

제 2 절 우리나라 기부금의 규모

운수·창고·통신업	Transportation, Warehousing & Telecommunication	25,394	366,139	176,915	35,187	113,348	28,380
금융·보험업	Finance & Insurance	13,378	556,330	832,320	197,043	280,910	354,367
부동산업	Real Estate	16,628	103,092	153,865	53,940	53,927	45,998
서비스업	Services	78,104	1,165,629	315,722	65,375	84,788	165,559
보건업	Health Care	1,134	33,523	84,711	69,108	3,519	12,084
기타 업종	Others	9,142	43,434	4,647	530	473	3,644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표 6 > 기업규모별 기부금 신고 현황

(단위: 개, 백만 원)

수입금액 규모별	by Size of Total Revenue	419,420	7,478,990	3,460,709	943,734	951,553	1,565,422
5억 이하	500 million won or less	200,053	596,875	69,261	17,680	1,844	49,737
10억 이하	1 billion won or less	53,176	414,558	28,925	4,327	1,683	22,915
20억 이하	2 billion won or less	54,588	623,432	30,271	6,341	1,841	22,089
50억 이하	5 billion won or less	58,951	1,074,265	71,760	17,969	4,107	49,684
100억 이하	10 billion won or less	26,080	802,400	101,698	35,050	20,031	46,617
200억 이하	20 billion won or less	13,582	674,430	83,977	18,167	8,756	57,054
500억 이하	50 billion won or less	7,858	724,747	153,018	60,054	16,301	76,663
1000억 이하	100 billion won or less	2,596	499,329	122,814	38,986	21,796	62,032
5000억 이하	500 billion won or less	1,972	891,819	491,624	184,378	81,259	225,987
1조 이하	1 trillion won or less	245	316,350	150,082	29,973	38,237	81,872
1조 초과	1 trillion won over	319	860,785	2,157,279	530,809	755,698	870,772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 전경련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2008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조사하여 『2008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를 발간하였다. 『2008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촉진하기 위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조상대상 기업 중 응답기업의 수는 209개 기업(응답율 41.8%)이고 조사기간은 2008년 6월 2일~9월 30일이다.

『2008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를 살펴보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지출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1개사 평균 사회공헌비용 역시 꾸준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2008년 조사에 응답한 209개 기업은 사회공헌활동에 총 2조 1,601억 4,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07년과 비교해볼 때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총지출액은 10.5% 증가하였다. 각 기업별 평균 사회공헌비용은 103억 3,600만 원으로 2007년 94억 200만 원에 비해 9억 3,4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총지출액 및 평균지출액이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비용의 비율이 2006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경제상황에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

< 표 7 > 기업 사회공헌비용 총지출액 및 평균지출액 규모 추이

(단위: 백만 원)

	총지출액	평균지출액
2002년(202개사)	1,086,594	5,379
2004년(227개사)	1,228,432	5,412
2005년(244개사)	1,402,510	5,747

8) 손원익·이순태·박세경,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2010, 41-43면의 내용을 인용하였음.

	총지출액	평균지출액
2006년(202개사)	1,804,816	8,979
2007년(208개사)	1,955,642	9,402
2008년(209개사)	2,160,141	10,336

자료: 전경련,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2007, 2008)

< 표 8 >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 비용 추이

(단위: %)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비용
2002년 (190개사)	0.2
2004년 (201개사)	0.2
2005년 (197개사)	0.2
2006년 (196개사)	0.3
2007년 (205개사)	0.2
2008년 (208개사)	0.1

자료: 전경련,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2007, 2008)

아래 표는 연도별 직접운영 프로그램 집행액 및 기업기부 지출규모 추이를 나타낸다.

< 표 9 > 연도별 직접운영 프로그램 집행액 및 기업기업 지출규모 추이

(단위: 백만원)

	직접운영 프로그램 집행액 추이		기업기부 지출규모	
	(기업)전체 지출비용	평균지출비용	총기부액	평균기부액
2002년 (202개사)	228,100	1,129	858,494	-
2004년 (189개사)	322,591	1,706	686,379	3,632

제 2 장 기부의 법적 의미와 현황

	직접운영 프로그램 집행액 추이		기업기부 지출규모	
	(기업)전체 지출비용	평균지출비용	총기부액	평균기부액
2005년 (205개사)	395,441	1,929	741,086	3,615
2006년 (200개사)	782,386	3,912	1,022,430	5,112
2007년 (203개사)	858,921	4,231	1,047,832	5,038
2008년 (188개사)	830,888	4,329	938,009	4,990

주: 1. 해당 항목 응답기업 기준

2. 직접운영: 기업이 직접 수행한 사회공헌사업비용, 기업이 직접 수행한 임직원의 봉사활동에 사용된 각종 경비
3. 기부금: 직접운영 프로그램을 제외한 지출액 중 손금산입 등으로 세금 혜택을 받는 금액(법인세법상 기부금 인정항목 해당/운영방식의 경우 관련 비용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 모두 해당)

자료: 전경련,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2007, 2008)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사회공헌백서』를 통해 연도별 직접운영 프로그램 집행액과 기업의 기부금 지출 추이를 보면, 2008년 응답기업의 직접운영 프로그램 지출비용은 약 8,309억 원으로 평균적으로 43억 원을 지출하였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직접운영프로그램의 집행액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응답기업의 기부금 지출은 2006년을 기점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직접운영에 대한 지출액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보아 기업이 점차적으로 직접운영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운영 프로그램 집행액과 기업의 기부금 지출액의 차이를 살펴보면, 2004년의 경우에는 기부금 지출이 직접 운영프로그램 집행액에 비해 약 19억 원가량 더 많았으나 2008년의 경우 약 6억 원가량 더 많아 그 차이가 크게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표 10 > 분야별 직접운영 프로그램 지출비용 현황

(단위: 백만원, %)

분야	총집행액	기업평균 집행액	구성비
사회복지	368,185	2056.9	45.2
교육, 학교, 학술연구	85,679	478.7	10.5
문화예술 및 체육	104,529	584.0	12.8
국제구호활동	46,180	258.0	5.7
환경보전	9,423	52.6	1.2
농촌 지원활동	18,975	106.0	2.3
응급 및 재난구호	791	4.4	0.1
의료보건	3,136	17.5	0.4
기 타	176,950	988.5	21.7
계	813,848		100.0

주: 해당 항목 응답기업 179개사 기준

자료: 전경련,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2008) 재구성

기업의 사회공헌(협의)은 과거의 자선적 기부활동에서 기업의 마케팅과 관련된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국내외적으로 공통된 추세이다.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은 기업의 사회공헌프로그램을 직접 운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직접운영 프로그램은 기업의 독점적 사업으로 기업의 다른 경영활동인 마케팅 및 홍보와 관련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현상은 2008년 전경련 『사회공헌백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직접운영 프로그램의 비율이 증가한 것은 기업의 고유한 역량과 자원을

활용한 전략적 사회공헌으로 사회공헌활동의 방향이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표 11 > 분야별 기부 현황

(단위: 백만원, %)

분 야	총집행액	기업평균 집행액	구성비
사회복지	322,657	1,844	41.1
교육, 학교, 학술연구	244,066	1,395	31.1
문화예술 및 체육	92,889	531	11.8
의료보건	62,658	375	8.0
기타	25,964	148	3.3
환경보전	17,177	98	2.2
응급 및 재난구호	7,218	42	0.9
국제구호활동	5,134	29	0.7
농촌지원활동	5,086	29	0.6
계	785,849	4.491	

주: 해당 항목 응답기업 175개사 기준

자료: 전경련,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2008) 재구성

전경련 『사회공헌백서』를 통해 직접운영 프로그램과 기부금의 분야별 기부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교육학술, 문화예술 순으로 지출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기업의 직접운영 프로그램과 기부금 지출액의 분야별 지출액 순위에는 다소 차이가 존재하지만, 두 부문 모두 1위는 사회복지 영역이고, 2위는 교육·학교·학술연구 영역이며, 3위는 문화예술 및 체육 영역으로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보아 상위권을 차지한 분야는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직접운영 프로그램과 기부금 지출액의 분야별 지출액이 모두 사회복지 영역에 대한 지출이

가장 많은 까닭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정부나 사회의 높아진 관심을 반영한 결과로서 사회의 취약 영역에 대한 관심의 증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표 12 > 분야별 직접운영 프로그램 지출비율의 연도별 추이

(단위: %)

분 야	2002	2004	2005	2006	2007	2008
사회복지	20.6	40.3	38.4	35.3	25.3	45.2
의료보건	0.7	4.2	5.8	0.3	0.3	0.4
교육, 학교, 학술연구	17.2	6.8	7.2	9.9	10.1	10.5
문화예술 및 체육	22.2	11.3	9.8	8.3	9.7	12.8
환경보전	0.4	5.6	7.9	1.8	3.1	1.2
응급 및 재난구호	0.3	0.8	0.2	0.2	0.3	0.1
국제구호활동	0.1	0.1	0.1	4.4	4.6	5.7
농촌지원활동	-	-	-	3.9	3.0	2.3
기타	38.5	31.0	30.5	35.8	43.6	21.7

주: 1. 직접운영 프로그램 지출 총액 중 각 해당 항목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2. 해당 항목 응답기업 기준(2002년 202개사, 2004년 201개사, 2005년 208개사, 2006년 200개사, 2007년 198개사, 2008년 178개사)

자료: 전경련,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2008)

분야별 직접운영 프로그램 지출비율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직접운영 프로그램의 분야별 지출비율에서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한 부문은 사회복지 영역으로 지출 비중은 연도에 따라 증감하지만, 대부분의 기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보아 기업의 직접운영 프로그램이 사회의 취약 영역을 돌보는 일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분야별 직접운영 프로그램 지출비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2년의 경우 다른 해와 달리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가 사회복지 분야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2002년 한일 월드컵으로 인해 문화 영역에 많은 지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2004년에 비해 2005년에 국제구호활동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업들의 활발해진 해외진출활동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며, 국제적인 대형 재난피해에 우리나라 기업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표 13 > 기부대상별 기부 참여율

(단위: 참여기업 수 %, 중복응답)

구 분	1998	2000	2002	2004	2005	2006	2007	2008
자사출연재단 (특정공익법인)	38.0	53.9	60.9	28.8	29.6	40.8	38.8	40.0
지정기부금 (주요모금단체)	54.3	58.1	58.9	44.2	46.7	78.7	74.1	78.1
국가지방 자치단체	63.6	55.0	58.9	33.1	32.2	43.1	71.2	66.3
시민단체 등 NGO	24.0	36.1	36.5	38.5	45.7	50.6	60.6	73.1
기 타	74.4	49.2	51.8	37.5	43.7	69.0	74.7	71.3

주: 해당 항목 응답기업 기준

자료: 전경련,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2008)

2008년 기부대상별 기부 참여율을 살펴보면, 응답기업 중 자사출연 재단에 기부하는 기업은 40.0%로 전년도인 2007년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국가지방단체에 기부하는 기업은 66.3%로 나타났다. 또한 시민단체 등 NGO에 기부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상당 수준 증가하여 73.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 대비 12.5%p 증가한 수치이다. 따라서 주요 모금단체를 통한 지정기부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조세지출보고서에 나타난 기부금 규모

한편, 앞서 세법상 기부금에 대한 공제제도는 조세지출에 해당함을 살펴본 바 있다. 이러한 조세지출 측면에서의 기부금 규모는 기획재정부의 ‘조세지출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현재 개인과 법인에 의한 기부금 규모는 8,516억 원, 7,735억 원으로 조사된다.

< 표 14 > 법인과 개인의 기부금 관련 연도별('98~'08) 조세지출

(단위: 억 원, %)

연 도	기부금 특별공제(개인)		기부금 손금산입(법인)	
	금 액	증가비율	금 액	증가비율
1998	1,163	3.663	3,663	4,826
1999	1,164	0.09	1,891	△48.38
2000	1,194	2.58	4,417	133.58
2001	2,986	150.08	4,270	△3.33
2002	4,022	34.70	3,551	△16.84
2003	4,702	16.91	4,083	14.98
2004	4,448	△5.40	4,530	10.95
2005	5,067	13.92	5,295	16.89
2006	5,045	△0.43	5,390	1.79
2007	6,054	20.00	6,670	23.74
2008	8,516	40.66	7,735	15.96

* 출처: 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 각 연도

제 3 장 우리나라 기부금 조세지원법제

제 1 절 기부금 공제제도 관련 법령 제·개정 추이 분석

1. 소득세법⁹⁾

소득세법상 기부금 공제제도는 1967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는데,¹⁰⁾ 당시 규정은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었다. 사업자가 아닌 종합소득이 있는 자가 특별공제의 하나로 기부금을 공제할 수 있게 된 것은 1982년에 이르러서였다.¹¹⁾

특별공제가 아닌 필요경비로서의 기부금의 공제에 관한 법령의 연혁을 살펴보면, 최초로 규정이 도입된 때에 구 소득세법은 필요경비에 불산입되는 기부금(지정기부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우선 기부금을 현행법과 같이 “타인에게 당해 사업과 직접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기부금을 정의한 다음, 지정기부금으로 국방헌금, 홀병금,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의 구호금의 가액, 대한적십자사에 지공한 기부금 또는 유공회비, 기술진흥을 위한 기부금과 장학금 및 학술연구를 위한 기부금, 운동기능향상을 위한 기부금,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책임량수출제와 수출자가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 동업자단체에 대하

9) 특례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되고 있었던 기부금으로 개인과 법인에 적용되었다. 여기에서는 개인의 기부금에 관한 내용을 고찰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을 포함하여 기술하였음을 밝힌다.

10) 1967.11.29-1966호 소득세법 전문개정

11) 1981.12.31-347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 제66조의3.

여 수출자가보상을 목적으로 소속단체원이 기능하는 금품의 가액, 제사업자가 참가가격안정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으로 규정하였다.

최초의 기부금에 관한 소득세법의 규정은 법정기부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부르고 있었으며, 지정기부금의 종류는 현재와 달리 매우 제한적이었다.

공제한도 역시 정해지지 않고 있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면 모두 필요경비로 수입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하였다.

또한 소득세법에서는 기부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지정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는 것 외 법률에서 구체적인 종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시행령에 위임하였다.

1974.12.24. 개정¹²⁾에 이르러 소득세법은 종전 동법시행령에서 규정되고 있던 지정기부금 중 국방헌금, 홀병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액 및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에 관한 내용을 제47조로 신설하여 규정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1974년 개정 이후에는 종전의 ‘필요경비불산입’ 규정과 ‘기부금의 필요경비계산’ 두 조문에서 기부금에 관해 규정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법체계는 다시 1994년 개정¹³⁾에 이르러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규정 하나로 합쳐졌다. 1974년 개정을 통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상세 항목은 소득세법에서 규정되고 지정기부금의 상세항목은 하위법령에서 규정되는 규정체계가 확립된다.

모법에서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부금의 종류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체계가 이와 같이 이원화된 체제로 변화된 것은 공제한도에 차등을 두기 위함이었다.

즉, 1974년 개정에 따라 구 소득세법 제47조로 이관된 국방헌금 등은 제한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었으나, 그 외 구 소득세법시행

12) 소득세법 [1974.12.24-2705호] 전문개정

13) 소득세법 1994.12.22.

령에서 규정되던 종전의 지정기부금은 일정한 한도 내의 금액¹⁴⁾만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게 되었다.

지정기부금의 한도에 관한 규정은 1974년 이래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구체적인 지정기부금의 한도에 관한 변천과정은 아래 < 표 15 >에 정리되어 있다.

< 표 15 > 지정기부금 한도액의 변천

개정 시기	한도액
1967.11.29	한도 없었음
1974.12.24	① + ② ① 당해연도 소득금액 × 5% ② 과세연도 말 출자금의 합계액 / 12 × 1%
1978.12.05	① + ② ① 당해연도 소득금액 × 10% ② 과세연도 말 출자금의 합계액 / 12 × 2%
1990.12.31	① + ② ① 당해연도 소득금액 × 7% ② 과세연도 말 출자금의 합계액 / 12 × 2%
1998.12.28	당해연도 소득금액 × 5%
2000.10.23	당해연도 소득금액 × 10%
2007.12.31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둘 중(①, ②) 적은 금액 ① (소득금액 - 필요경비산입 법정기부금 - 이월결손금) × 10% +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이월결손금)] × 5% ②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14) 다음 금액의 합계액이 한도가 된다. ①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당해 과세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출자금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개정 시기	한도액
	2. 그 이외의 경우 (소득금액 - 필요경비산입 법정기부금 - 이월결손금) × 15%
2009. 12.31.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둘 중(①, ②) 적은 금액 ① (소득금액 - 필요경비산입 법정기부금 - 이월결손금) × 10% +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이월결손금)] × 10% ②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2. 그 이외의 경우 (소득금액 - 필요경비산입 법정기부금 - 이월결손금) × 20%
2010.12.27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둘 중(①, ②) 적은 금액 ① (소득금액 - 필요경비산입 법정기부금 - 이월결손금) × 10% +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이월결손금)] × 20% ②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2. 그 이외의 경우 (소득금액 - 필요경비산입 법정기부금 - 이월결손금) × 30%

‘법정기부금’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2001년 소득세법시행령 개정¹⁵⁾을 통해서인데, 새로운 용어가 사용되었을 뿐 그 이전에도 이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기부금은 법에서 규정되고 있었음은 물론이다.¹⁶⁾ 법정기부금은 국방헌금, 홀병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액 및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으로 규정되다가 2000년에 이르러 다음의 항목이 추가된다.¹⁷⁾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15) 소득세법시행령 [2001.12.31-17456호] 일부개정

16) 따라서 편의상 법정기부금이라는 용어를 소급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17) 소득세법 [2000.10.23-6276호] 일부개정

-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그 이후 일부 항목의 추가를 위한 개정이 있었고,¹⁸⁾ 2003년¹⁹⁾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²⁰⁾을 새롭게 범위에 포함하였다. 제한적이기는 하나 용역기부를 소득세법상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후 2010년 개정²¹⁾을 통해 법인세법상의 법정기부금의 범위를 준용하고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와 같이 법인세법에서 규정되고 있지 않는 항목은 따로 규정하는 체제로 전환되었다.

최초의 지정기부금은 전술한 바와 같이 후에 법정기부금으로 재분류된 국방헌금이나 홀병금을 비롯한 아홉 가지로 규정되고 있었으나,²²⁾

18) 예를 들어 대한적십자사가 2005.12.31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추가되었다.

19) 소득세법 [2003.12.30-7006호] 일부개정

20) 구체적인 가액은 아래 ①과 ②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① 봉사일수 × 5만원

* 봉사일수 = 총 봉사시간 ÷ 8시간

②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의 경우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

21) 소득세법 [2010.12.27-10408호] 일부개정

22) ‘기술진흥을 위한 기부금과 장학금 및 학술연구를 위한 기부금’에 관해 상세한 사항은 별도의 조문을 통해 규정되고 있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이 규정되고 있었다(소득세법시행령 [1967.12.30-3320호]전문개정).

① 전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기부금과 장학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일부 항목의 추가를 거쳐 1974년²³⁾에는 국방헌금 등 세 항목이 소득세법으로 이관되고, 별도의 조문에서 규정되고 있던²⁴⁾ 항목이 합쳐지는 등의 변화를 거치게 된다. 또한 이와 더불어 지정기부금의 종류를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추가적으로 규정하기 시작하였다.²⁵⁾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부 항목의 추가를 거듭하였고, 1994년 12월 개정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에서의 규정되는 ‘지정기부금’을 준용하기 시작하였다.²⁶⁾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준용하는 골격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일부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1999년부터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몇 년간은 2~3개 단체²⁷⁾가 추가된 것으로 유지되다가

1. 학교의 교육상 필요한 시설을 위하여 지출한 기부금.
2.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개인 또는 단체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
 - ② 제1항제2호에서 “단체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학교 및 단체를 말한다.
 1. 학교.
 2.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 및 기술진흥을 위한 단체.
 - ③ 제1항제1호와 전항제1호에서 “학교”라 함은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④ 전조제1항제7호에서 “운동기능향상을 위한 기부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대한체육회 또는 그 추천한 자에게 국제올림픽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운동선수의 양성비 또는 단체경기비용으로 지출한 기부금을 말한다.
- 23) 소득세법시행령 [1974.12.31-7458호] 전문개정
- 24) ‘기술진흥을 위한 기부금과 장학금 및 학술연구를 위한 기부금’을 말한다.
- 25) 소득세법시행규칙 [1977.08.23-1279호]일부개정
 제53조의2 【공익성기부금의 범위】 영 제102조제1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1. 총력안보체제확립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총력안보중앙협의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2. 지역새마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3. 불우 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4.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의 사업비·시설비·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26) 소득세법 시행령 [1996.12.31]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 27) 예컨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2.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2007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부터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서 종전의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기부금대상민간단체’라고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하기 시작하여 법에서 규정되는 기부금단체와 고시를 통해 규정되는 단체로 구분되기 시작하였다.

< 표 16 > 지정기부금 제도의 주요 변천

구분	내용	비고
1967.11.29. 개정	- 기부금 공제제도가 최초로 도입 -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사업소득,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의 필요경비 - ‘지정기부금’이라는 용어만 사용됨 - 공제한도 없었음 - 지정기부금 대상은 매우 제한적임
1974.12.24. 개정	-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각각 구체적인 기부금 종류가 규정 - 공제한도에 차등을 두기 시작함	· 소득세법에서 규정되는 국방헌금 등은 한도에 제한이 없음. ·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되는 지정기부금은 한도가 설정
1981.12.31. 개정	- 종합소득이 있는 자의 특별공제항목으로서의 기부금 공제제도의 신설	-
1994.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의 지정기부금 범위를 준용	-
1999년 이후	- 법인세법의 지정기부금의 범위 외 추가되는 단체를 규정하는 체제로 변경	-

3.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4.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그가 속한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제외한다)

구 분	내 용	비 고
2001.12.31. 개정	- 법정기부금 용어의 사용	-
2003.12.30. 개정	- 일부 용역기부를 법정기부금 으로 인정	-
2006년	- 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 금에 포함	-
2010년	- 법인세법의 법정기부금의 범 위를 준용하고 그 외의 항목에 대해서 따로 규정하는 체제로 전환	-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및 제88의4에서 규정되고 있는 기부금을 ‘특례기부금’이라고 불렀다. 특례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한 법정 기부금을 제외한 기본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범위는 법인에 적용되는 특례기부금과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 특례기부금에 관한 추가적인 논의는 바로 뒤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2. 법인세법

(1) 법정기부금

입법 당시부터 국방헌금 또는 홀병금 등은 한도의 제한 없이 손금 산입이 허용되었고 이를 제외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이 허용되었다.²⁸⁾ 손금산입에 있어 제한이 없는 기부금,

28) 1950.12.01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구체적으로 국방헌금·홀병금,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의 구호금품, 대한적십자사에 제공한 기부금 등에 대해서는 현행법과 달리 ‘지정기부금’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었다.²⁹⁾ 이후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지칭하기 시작하였다. 편의상 현행법상 사용되어지는 용례에 따라 고찰대상기간의 기부금을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법정기부금에 대해 살펴보면, 최초 법정기부금은 국방헌금과 홀병금 정도였으나,³⁰⁾ 이후 개정을 통해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2011년 11월 현재 법인세법 외 하위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법정기부금 단체로는 한국학교 14개교, 전문모금기관 2곳, 공공기관 47곳이 있다.³¹⁾

입법연혁적 측면에서 법정기부금 대상단체의 변화추이는 아래 표에 정리되어 있다.

< 표 17 > 법정기부금 대상범위의 주요 변화추이

구 분	법정기부금
법령(1950.02.09-448호) 제4조	국방헌금, 홀병금
법령(1961.12.30) 제9조	국방헌금, 홀병금, 화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의 구호금품의 가액

29) 1962.11.28 법인세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당시 법령에 따른 지정기부금은 다음과 같다. 1. 국방헌금, 2. 홀병금, 3.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4. 천재, 지변으로 인한 이재민의 구호금품의 가액, 5.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대한적십자사에 제공한 기부금이나 유공회비, 6. 기술진흥을 위한 기부금, 7. 운동기능향상을 위한 기부금

30) 법인세법 시행령 1951.02.09-448호

31) 상세는 별첨 자료를 참고할 것.

제 3 장 우리나라 기부금 조세지원법제

구 분	법정기부금
법령(1965.03.04) 제9조	국방헌금, 홀병금,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천재, 지변으로 인한 이재민의 구호금품의 가액,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대한적십자사에 제공한 기부금이나 유공회비, 기술진흥을 위한 기부금, 운동기능향상을 위한 기부금
법법(1967.11.29) 제18조	- 위 항목 외 다음이 추가됨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책임량수출제와 수출자가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 동업자단체에 대하여 수출자가보상을 목적으로 소속단체원이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잠사가격안정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업자가 잠사가격안정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법법(1974.12.21) 제18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국방헌금과 홀병금,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법법(2005.12.31) 제2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다음 각 기관(병원을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증설,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에 한한다),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법법(2010.12.30) 제24조	- 위 항목 외 다음 항목이 추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구 분	법정기부금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에 한함), 괄호안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괄호안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전술한 바와 같이 도입 당시부터 공제한도에 제한이 없었던 법정기부금에 대해서 2006년부터 한도가 설정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2) 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 외 기부금에 대해서는 최초 도입 시기부터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이 인정되었기에,³²⁾ 그 점에서 법정기부금과는 구별되고 있었다. 1974년 12월 31일 개정을 통해 지정기부금의 구체적인

32) 1950.12.01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범위가 규정되었는데, 14종의 기부금이 대통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³³⁾ 종전 법정기부금에 속하고 있던 일부 기부금³⁴⁾이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부 단체가 추가되는 등의 개정이 있었다.

손금산입 한도 역시 변화를 겪어 왔다. 예컨대, 1974년 12월 31일에 개정된 당시 법령에 따르면 다음의 산식에 따른 한도가 적용되었다.

-
- 33)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에 복지 또는 자선을 위한 사업비·시설비·운영비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2. 국립 및 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
 3. 제2호의 학교의 장 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
 4.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
 5.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6.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7.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가 추천하는 자·대한체육회에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8.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9. 한국반공연맹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반공연맹 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하여 설립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10.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하여 설립한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유공회비
 11.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12.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스카우트주관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13. 제1호 내지 제12호와 유사한 공익성기부금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14.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지출하는 금액
- 34) 예컨대, 국립 및 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 등.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 5%) + (사업연도말 현재 주식발행자본
금 또는 출자금액 합계액 / 12) × 1%

위 산식의 기본적인 골격이 유지된 채 수치가 조정되는 등의 변화를 거치다가, 소득금액의 일정 비율만을 한도로 방식으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3) 특례기부금

한편,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외 공제가 허용되는 기부금으로 특례기부금이 있다. 특례기부금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³⁵⁾에서 규

-
- 35)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2012년 12월 31일(제 14호의 기부금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 법인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2. 법인이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 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 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 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 바.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 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4. 「독립기념관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 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라.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
 - 마.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 바.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산업안전연구원
 - 사.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같은 조 제3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과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의 사업

정되고 있었던 기부금을 말하는 것이다. 특례기부금은 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개정을 통해 2011년 6월 30일까지 지출되는 분에 한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를 할 수 있다.

-
- 중 정보문화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만 해당한다)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연 연구기관(법률 제5733호로 같은 법이 시행되기 전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포함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8.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9.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10. 결식아동의 결식 해소 또는 빈곤층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그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1.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신탁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 반환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12.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1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 지출하는 기부금
 14. 법인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5. 다음 각 목의 국제행사 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 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라 한다)
 - 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16.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17.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신용대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그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특례기부금의 폐지는 세무상 기부금의 종류가 복잡하다는 비판을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개정을 통해 구분체계의 합리화와 단순화를 달성하려는 취지가 있다.

제 2 절 현행 기부금 조세지원법제 분석

현행법은 기부금의 종류를 공익성 정도에 따라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개인에 한함),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소득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한도를 정하고 있다.³⁶⁾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기부금 단체의 공익성에 따라 소득공제 또는 손비인정 한도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국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등 공익성이 아주 높은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분류하여 소득공제 또는 손비인정 한도를 높게 인정한다. 반면에,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여 법정기부금 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소득공제 또는 손비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동일한 기부금이라고 하더라도 기부자가 개인 또는 법인인지에 따라 조세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다. 우선 법인의 기부금에 관한 관련 규정을 이하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법인세법은 기부금을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고(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제2항), 각 기부금에 해당하는 단체 중 일부를 법에 명시하고 있다(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기부금 단체의 지정 법체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우선 법정기부금단체는 법률에 열거된 경우와(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한국학

36) 단, 종전의 ‘특례기부금’은 2011.6.30.까지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만 법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50%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011.7.1. 이후 지출되는 특례기부금은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재분류되어 해당 규정을 적용을 받게 된다. 개인의 경우도 같다.

교, 전문모금기관, 공공기관 등과 같이 시행규칙에서 규정되고 있는 경우³⁷⁾로 구분된다.

한국학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항 전단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제12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전문모금기관이 모두 충족하여야 할 요건은 아래와 같다.

1.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결산서류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5. 법인세법 시행령 제5항에 따른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종료일까지의 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이하 제6호에서 같다] 평균 기부금 배분 지출액이 총 지출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고 기부금의 모집·배분 및 법인의 관리·운영에

37)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제4항, 별표 6의4(한국학교의 범위), 별표 6의5(전문모금기관의 범위), 별표 6의6(공공기관 등의 범위).

사용한 비용이 기부금 수입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이 경우 총 지출금액, 배분지출액 등의 계산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6.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 개별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별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전체 배분지출액의 100분의 25 이하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에 따른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같은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없을 것
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항 전단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제12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한편, 공공기관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설립 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3. 법인세법 시행령 제5항에 따른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평균 정부지원금 및 기부금 합계액이 연간 총 수입금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이 경우 정부지원금 및 총 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1항 전단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제12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났을 것

학교, 전문모금기관, 공공기관들이 법에서 정하는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매 반기 종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을 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반기 종료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된 학교, 전문모금기관, 공공기관들은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7항),³⁸⁾ 전문모금기관과 공공기관은 기부금 공제단체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및 지정 후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준수 여부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 제8항).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11항).

지정기부금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에 열거된 단체³⁹⁾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단·재단법인, 해외지정기부금단체로 구분된다.⁴⁰⁾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단체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

38) 1.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것

2.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3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6의3.

40)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2011년 9월 30일 현재 1841개 단체가 지정되어 있다.

채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 (4)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 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 (5)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제8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한편, 비영리외국법인 또는 국제기구로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비영리외국법인으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거나 국제기구일 것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항 제1호 사목 (1)부터 (5)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에 따른 법적 효력은 6년간 지속되므로, 기한 종료 후에는 다시 신청을 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단서, 제5호). 지정을 받는 단체들은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9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0항 등).

법정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50%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데(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한도기준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까지는 공제한도가 100%였으나 2006~2008년 기간은 75%, 2009년부터는 50%가 적용되고 있다. 물론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산입될 수 없다. 다시 말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정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을 공제한 금액의 10%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종전에는 5%를 한도로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2011년부터 10%로 확대된 바 있다.

다음으로 개인에 적용되는 기부금 관련규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법인세법과 차이가 나는 부분으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이 포함된다. 개인에 대한 다른 기부금들은 모두 소득세법과 그 하위법에서 규정되고 있으나,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율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 제12항). 개인에 적용되는 기부금의 종류를 전체적으로 열거해보자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이 있고, 각 기부금에 해당하는 단체는 법인의 경우와 같이 법에 명시되고 있다(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 제12항).

개인의 기부금의 공제와 관련하여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기부금을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나(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제2항, 제4항, 제52조 제6항), 비사업자는 공제방법만을 적용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물론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 총액을 필요경비에 모두 산입하지 않고 일부만을 산입하고 그 나머지는 공제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공제한도는 우선 법정기부금의 경우 기준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서 한도를 계산한다. 이하 같다).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의 30%를, 지정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의 30%(종전 20%에서 30%로 확대)를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의2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제4항, 제88의4 제12항).

법인보다 개인의 소득공제 한도가 높은 것은 소액·다수의 개인 위주의 기부 문화를 활성화함과 아울러 법인의 경우 준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기부금은 수익과 관련이 없는 비용인데, 주식회사는 이익극대화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 기본목적이므로 과도한 기부는 소액주주 등의 권리 침해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아래 표는 공제대상 기부금의 범위를 법인과 개인의 기준으로 비교한 표이다.

< 표 18 > 공제대상 기부금의 범위 비교(법인세법 및 소득세법)⁴¹⁾

구분	종류	비고
(1) 법정기부금	①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법인, 개인
	②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개인에 한함
	③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으로서 10만원 초과금액	개인에 한함
(2)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 제외)	개인에 한함
(3) 지정기부금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른 지정기부금	법인, 개인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비 -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교원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등	개인에 한함

41) 특례기부금을 제외한 것이다.

구분	종류	비고
	③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④ 「비영리법인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초과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제 3 절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관련 제도⁴²⁾

1. 비영리법인의 범위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는 공익법인,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 그 설립근거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각각의 설립근거 법에서 해당 법인의 운영 및 감독과 관련된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가장 포괄적으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중심으로 한 공익법인의 투명성 관리 제도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유지와 관련된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이 받은 출연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이들 법인의 공익성 및

42) 손원익·박대규, “한국의 민간기부에 관한 연구 - 규모, 구조와 특징, 관련 정책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8.2, 78-87면의 내용을 발췌하였음.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후관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공익법인이란 종교·자선·학술·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그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이므로 대부분의 비영리법인이 동법에서 정의하는 공익법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용범위를 살펴보기 위하여 동법에서 정의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⁴³⁾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
-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 사업

4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 3 장 우리나라 기부금 조세지원법제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허가받은 한국전자파연구원이 동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동법 제5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 「한국과학기술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 호(제3호를 제외한다) 및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기부금을 받은 자가 당해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가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연수사업·중소기업상품전시사업(국외의 전시장 설립 및 박람회 참가사업을 포함한다) 및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자원 관련 사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지방중소기업지원사업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영유아보육시설이 운영하는 사업

2. 정보 공개제도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의무규정이 2007년 12월 31일 법 개정을 통해 마련되었다. 공익법인 등은 법에 명시된 서류를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은 공익법인이 해당 서류를 공시하지 않았거나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공시하거나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⁴⁴⁾ 공시의무 대상인 서류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명세, 해당 공익법인 등의 대표자·이사·출연자·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주식보유 현황 등이다. 종교단체와 대차대조표상 총 자산가액 10억원 미만인 경우 결산서 등의 공시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⁴⁵⁾ 2007년 현재 자산규모 10억원 미만의 공익법인은 23,961개로 전체의 87.1%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공익법인은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운용명세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⁴⁶⁾ 장부는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익사업의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이어야 하며 해당 장부 및 관련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⁴⁷⁾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①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경우 또는 ② 당해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산서와 영수증

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①, ②

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의 2)개정안(2008. 1,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4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

4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4조①

등에 의하여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비치한 것으로 간주한다.⁴⁸⁾ 장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의 0.07%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한다.⁴⁹⁾ 공익법인 등의 특성, 출연받은 재산의 규모,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공익법인은 상기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등에 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⁵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수지계산서 포함) 등의 결산에 관한 서류와 다음에 관한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 터 3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⁵¹⁾

-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 출연재산(출연재산의 운용소득 포함)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
- 매각재산 및 그 사용명세
-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 등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를 가산세로 징수한다.

4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4조②
4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⑤
5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⑤
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①

3.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 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당해 공익법인으로부터 업무상 독립된 2인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이하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⁵²⁾ 세무확인 결과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관할세무서장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여부,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내국법인 주식 등의 초과보유’·‘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 이행 여부⁵³⁾, 출연받은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의 적정성 여부,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의 준수 여부, 공익법인 등의 수혜자 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⁵⁴⁾

일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
-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즉 출연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

5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①, ②

5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시행령 제37조 및 제39조 참조

54)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③

법인 등이 출연받은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공익법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감사원법」 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 검사를 받는 공익법인 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함)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0.07%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한다.⁵⁵⁾ 공익법인 등의 특성, 출연받은 재산의 규모,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공익법인은 상기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2007년 세법개정에서 공익법인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⁵⁶⁾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교단체, 학교법인 등은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 100억원 미만인 경우도 외부감사에서 제외한다.⁵⁷⁾ 참고로, 2007년 현재 자산규모 100억 원 미만의 공익법인은 현재 26,303개로 전체의 약 95.6%에 해당한다.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2007년 신설된 제도로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함)를 사용하는 제도가 있다.⁵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5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⑤

5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③

57)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 3항, 4항

5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2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종교단체는 전용계좌 개설 대상에서 제외한다.⁵⁹⁾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수입과 지출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지급받는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 인건비·임차료 지급, 기부금·장학금·연구비 등 직접 공익목적사업비 지출로서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하는 경우 등이다.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이 있으나 전용계좌 사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이란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자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⁶⁰⁾ 주무관청이 감독상 필요한 때에 공익법인에 대하여 업무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를 감사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공익법인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인회계사 기타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무관청의 지도나 관계전문기관의 감사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 때에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의무규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감사의 대상도 주무관청이 정하는 액수 이상의 기본재산을 관리·운용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동법에서는 그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고 있다.⁶¹⁾

59)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60)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6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①, ②

4. 기부금 관리제도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에는 기부법인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본점 등의 소재지, 기부금액, 기부금 기부일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일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는 액수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내국법인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로 범위가 점차 확대된다(2007. 12. 31 개정). 또한 보관하고 있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2007. 12. 31 신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등록청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⁶²⁾ 다음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할 수 있다.⁶³⁾

-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의 구휼사업

62) 정치자금법, 결핵예방법, 보훈기금법, 문화예술진흥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재해구호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3조)

6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②

-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 영리 또는 정치·종교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①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②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③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④ 사회적 약자의 권익신장에 관한 사업, ⑤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⑥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⑦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⑧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부금품 모집자가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⁶⁴⁾ 기부금품의 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서류 등을 작성하고 기부금품 모집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또한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때,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부금품 모집자에게 회계감사의무도 부여하고 있는데, 기부금품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청은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모집된 기부금품이 1억원 이하이면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6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①, ②

제 4 장 주요국의 입법례

제 1 절 미 국

1. 개 요

미국의 기부금 관련 세제상의 규정은 소득세(income tax), 유산세(estate tax), 증여세(gift tax)로 분류가능하다.

미국 연방소득세에 기부금공제제도가 도입된 것은 1917년으로, 1차 세계대전 전쟁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방소득세가 대폭 증세되어진 시점이다. 소득세를 증세하면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가 감소되는 것을 우려해 도입된 제도이다.⁶⁵⁾ 도입 당시 기부금의 공제한도는 기부자의 순소득의 15%로 규정되고 있었다.

기부금공제제도의 도입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자료 중의 하나인 1938년 입법자료에서는 기부금공제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금전이나 재산을 자선의 목적으로 기부하는 것을 조세상 공제하는 것은 정부가 공제를 허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세수의 손실은 공제를 허용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공적 자금의 책정, 그리고 사회전체의 복지의 증가를 야기하는 편익에 의해 상쇄된다는 논리에 근거한 것이다.”⁶⁶⁾

65) Paul R, McDaniel, Federal Income Taxation, Cases and Materials, Third Edition, 1994, p. 653.

66) “The exemption from taxation of money or property devoted to charitable and other purposes is based upon the theory that the Government is compensated for the loss of revenue by its relief from financial burden which would otherwise have to be met by appropriations from public funds, and by the benefits resulting from the promotion of the general welfare.” HR Rep. No. 1860, 75th Cong., 3d Sess. (1938), reprinted in 1939-1 CB(pt.2) 728, 742.

다시 말해 기부금 지출에 대해 공제를 허용함으로써 국가의 입장에서는 재정수입이 줄어들지만, 기부금은 공익적 사업을 위해 사용되므로 국가가 벌어들인 세수를 다시 공익적 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세수의 감소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공제가능한 기부금은 정부로부터 자선단체에게 지급되는 현금 교부금(cash grants)과 유사하다”고 판시하고 있다.⁶⁷⁾

기부금공제에 관한 미국 내국세입법 제170조는 대응 교부금(matching grant)이라는 논리로 합리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었지만 이에 대한 몇 가지 비판적 시각도 있었다.⁶⁸⁾

입법 당시는 기부금공제의 성질을 세제상 유인조치로 보는 관점과 더불어, 조세지출예산(tax expenditure budget)에 제도화된 바 있다.⁶⁹⁾ 기부금공제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감소는 특정 납세자에게 이익을 주는 조세지출에 해당하는 까닭이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사적기부(private philanthropy)”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어 기부금공제제도가 더 이상 직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명확한 이론적 근거에 기인하여야 한다는 식의 사고가 설득력을 얻게 되고, 이는 결국 1969년 세제개혁으로 이어졌다.⁷⁰⁾

1969년 세제개혁에 의해 사적재산(private foundation) 투자소득에 대한 부가세(excise tax)가 과세되게 되었고 비과세법인을 이용한 tax shelter를 규제하는 규정이 도입되었다.

현재, 미국은 우리나라(정치자금기부금은 세액공제방식)와 같이 소득공제방식을 취하고 있다. 개인(individual)과 법인(corporation)으로 구

67) Regan v. Taxation with Representation of Wash., 461 US 540, 544 (1983).

68) 이에 관한 상세는 후술한다.

69) 이은미, “기부금세제에 관한 소고 - 소득세법상 기부금공제제도를 중심으로 -”, 원광법학 제25권 제4호, 2009, 396면.

70) Boris I. Bitteker and George K. Raedart, The Exemp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 from Federal Income Taxation, 85 Yale Law Journal, 1976, p. 326.

분하여 기부금에 관한 법적 효과를 다르게 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같다.

아래 표는 기부금에 관한 미국의 세제를 요약한 것이다.

< 표 19 > 기부금에 관한 개인과 법인 관련 세제 개요

기부 주체	기부받는 단체		소득공제 제한
개인	IRC §170(c) 상의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public charitable organization: 교회나 교회단체, 교육기관, 의료기관, 의료교육기관, 미국정부관련 기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AGI의 50% 5년간 이월공제 가능 자본이득의 경우 30%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private foundation(공공 다수의 재정지원을 받는 단체가 아닌 한명 또는 몇명의 기부자들의 지원을 받는 자선단체) 중 operating foundation(대부분의 수입과 자산을 직접 자선활동에 사용하는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non operating foundation 중 특정요건 충족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 이외 모든 §170(c)상의 단체 자산단체를 위한 신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AGI의 30% 5년간 이월공제 가능 자본이득의 경우 20% 적용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 받는 단체에 따른 소득공제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 과세표준 (taxable income)의 10% 5년간 이월공제 가능

2. 이론적 논쟁⁷¹⁾

(1) McDaniel과 Bittker의 논쟁

1) McDaniel의 주장

1960년대 말에 등장한 조세지출론은 기부금공제제도를 조세이론과의 관계에서 재검토를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조세지출론자 중의 하나인 McDaniel은 기부금공제제도가 자선공익단체(Public Charity)에 대한 기부를 촉진하고 재정적 기반을 강화시킨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을 부여하는 한편, 그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였다.⁷²⁾

자선 기부금지출은 본래 소득세의 구조에서 본다면 소득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며, 기부금은 특별한 보조금, 즉 조세지출에 해당한다. 그런데 소득세는 누진세율 체계이므로 공평성을 해치는 문제가 발생한다. 동일한 금액을 기부하더라도 적용세율에 따라 공적보조금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⁷³⁾ 1972년 당시에도 항목별공제를 이용하는 자는 전체 납세자 중 30% 정도에 불과하고 70% 이상이 표준공제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70% 이상이 기부금공제를 이

71) 이은미, “기부금세제에 관한 소고 - 소득세법상 기부금공제제도를 중심으로 -”, 원광법학 제25권 제4호, 2009, 398-402면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72) Paul R. McDaniel, Federal Matching Grants for Charitable Contribution : A Substitute for the Income Tax Deduction, 27 Tax Law Review 1972, p. 377.

73) 인용한 문헌에서는 이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의 사례를 가정해 본다. 40%의 세율이 적용되는 납세의무자의 경우 100불을 기부하였을 때 실제로 기부로 인해 유출되는 부는 60불이 된다. 물론 국가의 입장에서는 40불의 세수 손실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대응교부금 비율은 66.7%¹⁾가 된다. 만약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납세의무자의 경우에는 100불을 기부하였을 때 실제로 유출되는 부는 80불이 되며, 국가의 입장에서는 20불의 세수 손실이 발생한다. 이 때 대응교부금 비율은 25%가 된다. 결국 대응교부금의 비율이 일정하지 않고 세율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소액기부를 하는 경우 다른 항목별공제가 없으면 표준공제 쪽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기부금공제제도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고 저소득자에게는 불리한 구조이다. 따라서 기부금공제제도는 공익활동에 대한 개인의 주도권을 존중해 주면서 공적으로 보조하는 것임에도 적용세율에 따라 공적보조금의 정도가 크게 달라지므로 공평하지 않는 제도라고 McDaniel은 비판을 가했다.

이상과 같이 기부금공제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뒤 McDaniel은 동일한 정책적 목적을 좀 더 공평하게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Matching Grants 제도를 제안하였다.⁷⁴⁾

Matching Grants란 기부자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기부금액의 비율에 따라 자선단체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갖는다. 가령 A가 대학에 100을 기부하면 정부가 일정한 Grants를 지급하는데, 그 지급금액은 A의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기부금의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총소득의 2% 이하이면 기부금의 5%가 지급되고, 총소득의 10% 이상이면 기부금의 50%가 지급된다.

Matching Grants는 기부금공제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자선단체에 지원을 하면서도 기부하는 자의 자유와 유연성을 훼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에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당시 기부금 공제제도의 옹호론자들도 기부금공제제도가 다원성 확보와 권력분산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고소득자 내부의 다원주의에 불과하고 Matching Grants 제도야말로 공적자금을 납세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원성 확보에 더 큰 역할을 한다고 한다.

74) McDaniel, op. cit., p. 385.

2) Bittker의 주장

McDaniel이 Matching Grants 제도를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Bittker는 그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면서 동시에 기부금 공제제도의 근거 및 존속시켜야 하는 이유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다.⁷⁵⁾

첫째, Matching Grants는 기부금공제제도와 기능적으로 등가물이 될 수 없다. 교회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지출하는 것은 헌법상 문제가 될 수 있고, 개인의 선택에 따라 자동적으로 공제가 이루어지는 기부금공제에 반해 Matching Grants는 정부의 결정이 개입되어지는 만큼 정치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또한 자선단체와 기부자 간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둘째, 기부지출을 임의소비지출과 동일하게 보는 견해는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에도 반한다. 기부금은 윤리적 책임으로 이행하는 것이어서 소득에서 공제가 허용되는 위자료(alimony)와 유사한 것이다. 자선단체에 대한 무상노동을 귀속소득으로 보아 과세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기부금지출에서도 과세하지 않는 것이 공평하다.

셋째, 기부금공제가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고 수직적 공평에 반한다고 하지만 이는 기부금공제의 혜택이 기부자에게 귀속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부금공제가 조세지출이라고 할지라도 기부금공제의 혜택이 기부자에게 귀속한다고 한정할 수 없다. 과세측면에서 수직적 공평이 다소 희생된다고 할지라도 효율적 측면에서 사회개선이 된다면 이는 정당화 될 수 있으며, 기부금공제에 의해서 소득재분배적 자선활동이 촉진되는 면도 있다.

저소득자가 교회에 기부를 하고 고소득자는 대학에 기부를 하였다는 가정에서 저소득자는 교회의 구성원이므로 재분배를 필요로 하지

75) Boris I. Bittker, Charitable Contribution : Tax Deductions or Matching Grants?, 28 Tax Law Review, 1972, p. 37 이하

않지만 대학에 대한 기부는 수익자가 학생이며, 점차적으로 중간소득자의 가정출신의 학생이 많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⁷⁶⁾

(2) Andrews의 주장

MaDaniel과 Bittker가 기부금공제제도를 공익을 지원하고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다면, 1970년 전반에 소비형 소득개념을 주장했던 Andrew는 기부금공제제도는 소득과세의 내재적 논리에 의해서 요청되는 것으로 특별조치가 아니라고 보았다.⁷⁷⁾

기부금은 개인의 임의처분 또는 소비가 아니며 단지 소득의 이전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기부된 금액으로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거나 순자산으로 축적하는 자는 기부를 하는 자가 아니라 기부를 받는 자이므로, 개인의 정확한 소득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기부한 만큼 소득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Andrew는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를 구제활동에 이용되는 기부와 공공재 및 서비스 생산에 이용되는 기부로 구별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전자 즉, 구제활동에 대한 집구는 한계세율이 0이거나 0에 가까운 개인에게 재화 및 서비스를 기부할 것이므로 기부자의 높은 세율로 과세할 필요가 없고, 실물 재화의 가치가 종국적으로 소비되어지는 시점에 실제적으로 소비를 행하는 자에게 과세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부금공제는 소비를 하지 않는 기부자의 과세소득을 조정하는 규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기부는 소득의 이전이며 소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부자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말아야 한다.

후자인 공공재의 제공에 대하여 소비와 적용세율의 논의는 적당하지 않으며, 사실 대부분의 기부는 구제활동보다 공공재의 공급자, 즉

76) Bittker, op. cit., p. 52.

77) William D. Andrews, Personal Deduction in an Ideal Income Tax, 86 Harvard Law Review, 1972, p. 309.

대학이나 병원에 주로 행하여지는데, 기부자가 기부에 의해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의 일부를 소비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외부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소비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 소비부분의 가치를 계산하는 것은 곤란하며, 기부금공제제도를 불인정하고 기부자에게 과세하면 개인적으로 소비를 하지 않은 부분까지 기부자에게 과세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런데 Andrew의 주장은 사실상 지지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며, 당시 학자들은 여전히 기부금 공제를 정책적 의도를 가진 특별조치로 보았다.⁷⁸⁾

(3) Simons의 주장

McDaniel, Bittker, Andrews는 기부금공제도의 근거를 제시함에 있어서 기부금은 바람직하다는 가치판단을 전제로 기부금공제제도가 소득과세에서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측면에서 접근을 하였다.

이와 달리 다원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반인 자선단체의 역할을 중시하는 측면에서 기부금공제의 근거를 제시하는 견해, 공공선택론 관점에서 기부금공제를 보는 견해가 1980년대에 들어 등장하였다.⁷⁹⁾

그 중에서 Simon은 기부금공제제도를 민주적 정치과정의 수단으로 보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⁸⁰⁾ 기부금은 본래 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된 다음에 정치적 과정을 거쳐서 분배가 되어야 하지만 기부금공제제도로 말미암아 개인적 의사결정에 맡기는 분권적 구조를 가져온다고 한다. 이러한 구조는 고소득자에게 분배의 권한을 편중시키는 문제를 낳지만 결코 민주적 과정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78) Andrews, op. cit., p. 351.

79) Saul Levmore, Taxes as Ballots, 65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1998, p. 387.

80) John G. Simon, Charity and Dynasty under the Federal Tax System, in Economics of Nonprofit Institutions, Susan Rose-Ackerman, 1986, p. 246.

고소득자에게 경제적 자원분배의 결정권한을 주는 것과 관련해서 Simon의 두 가지 논의를 소개한다. 첫째, 고소득자는 빈곤층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수탁자라는 관점과 둘째, 고소득자는 경제적 안정·개인적 명성에 대한 갈망, 자애심 등의 이유보다는 개인적 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 또는 다수파와 달리 자유로운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고소득자에 의해 결정되는 분배는 사회 다수파가 선호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을 갈 가능성이 높으며, 고소득에게 자원분배의 힘을 부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회에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하도록 한다고 주장한다.

Simon은 기부금에 대한 보다 설득적 근거로서 “단일의 결집된 지원 (Single-source support)”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고소득 기부자는 조세우대조치를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소수이지만 자선단체에 상당한 금액을 기부할 것이고, 이렇게 모인 경제적 자원은 다수파 생각에 묶이지 않고 소수 기부자의 뜻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다수로부터 모인 소액의 기부는 다수의 선호에 따라 이용될 것이므로 통상의 민주적 정치과정과 별 차이가 없으므로 굳이 기부금공제라는 사회적 자원배분장치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 Simon은 자선단체 및 기부금 공제제도의 의미를 다양한 가치추구, 사회 다수파와 다른 실험적·선도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

다만, Simon의 주장처럼 국가에 의한 집합적 분배결정에 비해서 개인기부에 의한 공공재 공급이 우월할 수 있지만 시장과 비교하면 다양성·실험성 측면에서 우위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고소득자 기부자가 현실적으로 실험적 분야나 최첨단 분야에 기부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도 없다.⁸¹⁾ Simon 자신도 결집된 금액이 다원주의를 촉진한다고 실증적으로 증명하지는 못했다.⁸²⁾

81) Mark P. Gergen, The Case For a Charitable Contributions Deduction, 74 Virginia Law Review, 1989, p. 1393.

82) Simon, op, cit., pp. 258-259.

(4) 소 결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기부금을 소득공제의 대상으로 삼는 근거를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기부금은 본래 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람직한 기부행위에 대한 혜택을 주고 기부를 유인하기 위해서 소득공제가 필요하다(McDaniel, Bittker의 주장).

둘째, 기부를 하면 그 만큼 소득이 감소하게 되므로 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기부금공제가 필요하다(Andrews의 주장).

셋째, 개인의 다양한 가치나 욕구를 추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인 자선단체의 역할을 중시하는 측면에서 기부금공제가 필요하다(Simon의 주장). 이러한 이론적 근거 중에서 어느 하나의 견해만을 취해서 기부금 공제의 근거로 정리하기 보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부금공제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근거에 비중을 두고 정책을 실현하는가에 따라 그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3. 기부금공제 단체들의 자격

미국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에서의 공제가능한 자선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이란 아래의 단체들에 기부(contribution) 또는 증여(gift)하는 것을 말한다(IRC §170(c)).

- 가. 미국, 주, 미국령, 컬럼비아특별구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기부금이 공공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
- 나. 미국이나 미국령 내에서 설립되었거나 미국 정부의 법령에 따라 조직된 단체로서,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경우 - 종교, 자

선, 과학, 문학, 교육, 국내외의 아마추어 스포츠 경기의 육성, 아동·동물의 학대 방지를 위해 설립·운영되는 법인, 신탁, 공공기금, 기금, 재단 등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사용되어야 함. 그리고 이들 활동으로부터 얻은 순이익은 민간출자자 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아야 함. 또한 이러한 조직은 법률 제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함으로써 비과세단체로서의 자격을 잃지 않아야 하며, 관공서에서 일하게 될 후보자를 위해 정치적 캠페인에 참여하거나 개입하여서는 아니 됨.

다. 미국이나 미국령 하에서 조직된 참전군인단체 지부 또는 조직, 그 보조단체나 조합, 신탁, 재산 등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이들 활동으로부터 얻은 순이익은 민간출자자 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되지 않아야 함.

라. 개인이 기부하는 경우 지부형태(lodge system)로 운용되는 국내 공제조합 또는 협회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종교, 자선, 과학, 문학, 교육, 아동·동물의 학대 방지를 위해 배타적으로 사용되어야 함.

마. 회원의 이익을 위해 독점적으로 소유·운영되는 비영리 공동묘지회사(nonprofit cemetery companies) 또는 오로지 매장 목적으로 공인된 기업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직은 영리를 위해 운영되어서는 안되며 이들 조직의 순이익은 민간출자자 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아야 함.

4. 자선단체들의 기본개념

IRC §170(c)상 자선단체는 우리나라의 공익법인과 유사하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한편, IRC §170(c)상 자선단체의 범위는 연방소득세가 면제되는 IRC §501(c)(3)상 자선단체의 범위와 유사하다. 기부금 수령자가 연방소득세가 면제된다는 사실이 IRC §170(c)에 의

한 공제가 자동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예컨대, social welfare organization, chambers of commerce, social clubs에 대해서는 연방소득세가 면제되나, 이들 단체에 대한 기부는 공제가 가능하지 않다.

IRC §170(c)(2)(A)는 기부금의 공제가 가능한 수령 단체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요건 중 하나가 수령단체가 내국단체(domestic organization)이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은 문제점을 가진다. 만약 미국에 소재한 단체가 단지 외국단체의 도관(conduit)으로 외국단체가 실질적인 수증자인 경우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내국단체가 독립적인 기구로 자유재량에 의해 외국의 자선단체에 교부하더라도 IRC §170(c)(2)에 의거하여 내국단체에 대한 기부는 공제가 가능하다.⁸³⁾

5. 기부금 관련 세부내용

기부주체별로 개인의 경우와 법인의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개인과 관련하여 Public Charitable Organization은 기부금 혜택을 인정받는 자선단체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단체 중의 하나로, 소득공제의 한도가 AGI의 50%이다. 구체적인 범위에 교회나 교회단체, 교육기관, 의료기관, 의료교육기관, 정부지원을 받고 대학교를 위하여 자산을 관리하는 기관, 미국정부관련기관, 정부 관련 기관이나 일반 공공으로부터 지원받는 조직 등이다.⁸⁴⁾

Private Foundation은 공공 다수의 재정지원을 받는 단체가 아닌 한 명 또는 몇 명의 기부자들의 지언을 받는 자선단체로 다시 Private Operating Foundation과 Private Non Operating Foundation으로 세분된다.

83) Rev. Rul. 63-252, 1963-2 CB 101.

84) IRC §170(b)(1)(A)

Private operating foundation이 되기 위한 요건들은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Private Operating Foundation은 미국 재무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income test(소득기준 테스트)를 충족하여야 하며, 추가로 내국세입법상 세 가지 테스트(asset test, expenditure test, support test) 중 한 가지를 충족하여야 한다. 당해 단체들의 경우 AGI(Adjusted Gross Income)⁸⁵⁾의 50%가 소득공제의 한도로 적용된다.

한편, Private Non Operating Foundation의 경우 다시 Conduit Foundation과 Common Fund Foundation으로 구분되는데, 각 요건은 IRC §170(b)(1)(A)(vii) 등에서 규정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단체들은 손금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 5년간 이월공제(carry forward)가 허용된다.

위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IRC §170(c)의 단체나 자선단체를 위한 신탁의 경우 보다 낮은 한도가 적용된다. 즉, AGI의 30%가 한도로 적용된다. 다만, 5년간의 이월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는 없다.

법인이 IRC §170(c)에 속하는 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는 개인이 기부한 경우와 달리 기부를 받는 단체별 소득공제의 한도가 따로 구분되지 않는다. 법인의 과세표준(taxable income)의 10%가 소득공제의 한도로 적용되고 개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5년간의 이월공제가 공히 적용된다.

6. 소득공제 제한규정의 적용 순서

기부자가 한 가지 이상의 소득공제 한도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다음의 한도에 따라 소득공제규정을 적용한다.

85) AGI(수정 후 소득금액)란, 다음의 산식을 통해 산출되는 소득을 말한다. Gross Income(총소득) - Above the line Deductions(상위 공제액) = Adjusted Gross Income. 이렇게 산출된 AGI에서 Itemized Deduction(또는 Standard Deduction)을 제하고 난 뒤 과세표준(taxable income)을 구하게 된다.

제 4 장 주요국의 입법례

- ① 기부금이 50% 제한규정에만 해당하는 경우: 기부자의 총수입(AGI)의 50% 한도까지
- ② 30% 제한규정이 적용되는 기부금의 경우: 다음 중 적은 금액이 제한한도가 됨
 - 총수입의 30%
 - 총수입의 50% - 50% 제한규정이 적용되는 기관에 기부한 기부금(30% 특별제한규정이 적용되는 자본이득자산 포함)
- ③ 30% 특별제한규정이 적용되는 자본이득자산을 기부한 경우: 다음 중 적은 금액이 제한한도가 됨
 - 총수입의 30%
 - 총수입의 50% - 50% 제한규정이 적용되는 기관에 기부한 기부금
- ④ 20% 제한규정이 적용되는 기부금의 경우: 다음 중 적은 금액이 제한한도가 됨.
 - 총수입의 20%
 - 총수입의 30% - 30% 제한규정이 적용되는 기부금액
 - 총수입의 30% - 30% 특별제한규정을 적용받는 자본이득자산의 기부금액
 - 총수입의 50% - 50% 제한규정을 받는 기관에 대한 기부금 총액과 30% 제한규정이 적용되는 기부금액
- ⑤ 자격요건을 갖춘 보 존 목적의 기부에 대한 특별 50% 제한 규정
 - 총수입의 50% - 위의 ① ~ ④까지의 기부금액이 한도임
- ⑥ 농부나 낙농업자들의 자격요건을 갖춘 보 존 목적의 기부 100% 제한규정
 - 총소득의 100% - 그 외의 모든 기부금액

7. 기부금 공제시기

기부금에 대한 공제가 결정되는 시기에 있어서, 내국세입법은 기본적으로 소유권(title)이 이전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현금을 기부하는 경우 현금이 기부를 받는 단체에게 전달되는 시점이 공제시점이 된다. 따라서 예컨대 현금으로 기부를 하겠다는 의도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나 기부자가 장부에 기입하는 등의 행위는 기부금의 공제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수표를 통한 기부의 경우에도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기가 공제시점의 기준이 된다.

기부금이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경우에는 의무발생시점이 공제시점이 된다. 즉, 기부자가 카드로 기부금액을 결제하는 시점이 공제시점이다(실제로 기부자가 카드금액을 은행에 납부하는 시점이 아님).

전화를 통하여 기부하는 경우도 소득공제가 인정된다. 주로 폰뱅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금융기관이 자선단체에 지불하는 시점이 소득공제시기이다. 이는 금융기관을 기부자의 대리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주식이나 채권, 그 밖의 증권들을 기부하는 경우, 소득공제시점은 배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유효한 증권이 기부받는 단체에 전달된 시기이다. 만일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라면, 우편물을 부친 날짜가 공제시점이 된다.

8. 기부금액의 산정

자산을 기부한 경우 기부금액은 양도한 자산의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가 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가치가 상승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미실현된 가치상승분이 공제가 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가치상승분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과세에 있어 법리를 위배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가치가 상승한 장기보유자산인 경우는 기부금액 산정에 있어서, 일반적인 경우는 기부시점의 시장가치가 기준이 되지만, 본래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유형의 동산에 대하여서는 자산의 원가로 산정한다.

가치가 하락한 자산 혹은 가치가 상승한 자산 중에서 단기보유자산의 경우는 기부시점의 시장가치와 자산의 원가 중 적은 금액을 기부금액으로 한다.

9.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제도⁸⁶⁾

(1) 법인세

IRC §501(c)(3)에서 규정하는 자선, 교육, 종교, 연구 등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면세를 받으려면 해당 단체는 주식회사, 신탁기금 또는 재단으로 설립되어야 하며 Form 1023을 작성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면제되지만, 본래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사업으로부터 얻은 소득이 10,000달러 이상인 경우 영리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고유목적무관사업소득세(Unrelated Business Income Tax, UBIT)가 부과된다.

세법에 명시된 고유목적무관사업이라 함은 고유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서 정규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을 말한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500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면 분기별로 납부해야 하는 신고일에 확인 신고하여야 한다.

86) 김진수·김태훈·김정아, “주요국의 기부관련 세제지원제도와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09.8, 49-54면.

(2) 유산세와 증여세

IRC §2055에 따라 종교, 자선, 과학, 문학 및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단체와 법인에게 이전되는 유산자산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산자산(taxable estate)에서 제외된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한 개인 또는 법인이 과세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기부받는 비영리법인은 과세대상과 무관하다.⁸⁷⁾

증여나 유산, 유증, 상속받은 것의 자산에서 생긴 소득은 과세대상으로 총소득에 포함된다.

증여세 부과 시 종교, 자선, 과학, 문학,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에 이전되는 재산은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서 공제한다.⁸⁸⁾

(3) 가산세(Excise Tax)

민간재단(private foundation)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가산세(Excise Tax)라고 불리는 세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IRC §4940에서부터 §4945까지에 규정되어 있다.

순투자수익에 대한 과세(tax on net investment income)규정인 IRC §4940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법률에서 규정하는 위반사항들에 대한 벌금 과세의 성격을 가지며, 이러한 제재는 위반사항들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경고의 의미가 있다.

이러한 벌금 과세 형태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로는 자기내부거래 행위, 고유 목적에 지출되지 않는 소득, 기업주식 초과보유, 투기적인 투자, 과세대상 지출 등이 있다.

제한 시간 내에 이러한 수정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좀 더 높은 금액의 두 번째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은 민간재단의

87) IRC §2502(e)

88) IRC §2522

등록 취소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간재단의 모든 자산의 정부에 몰수된다.

민간재단은 관리규정(governing instrument)에서 금지하고 있는 활동에의 참가 또는 소득의 누적을 금지하지 않는 경우 면세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⁸⁹⁾

1) 순투자수익에 대한 과세(Tax on Net investment income)

IRC §4940규정에 따라 민간재단의 순투자수익(net investment income)에 대하여 2%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1959년 세법개정으로 민간재단(private foundation)의 투자수익에 대해 4% 가산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으며 1976년 이후 2% 인하되었다.⁹⁰⁾ 순투자수익(net investment income)이란 총투자수익(gross investment income)과 순자본이익(capital gain net income)을 합한 금액에서 수익을 위해 지불한 비용들을 뺀 금액을 의미한다.

2) 자기내부거래(Self-Dealing)에 대한 과세

IRC §4941(d)(1)에서는 민간재단과 부적격자(disqualified persons)⁹¹⁾간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다섯 가지 유형을 정의하고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정부 공무원과의 거래에 대한 제한 규정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내부거래 유형은 아래와 같다.

① 매매 및 교환(sales and Exchanges) : 민간재단과 부적격자 간에 자산의 매매나 교환이 있는 경우, 거래가격이 공정시장가격에 거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자기내부 거래에 해당됨.

89) IRC §508(e)

90) IRC §4940

91) 부적격자란 ① 재단에 상당한 기부를 한 자, ② 재단경영자, ③ 법인의 의결권, 조합의 이익분배권, 신탁 혹은 비법인조직의 수익원의 20% 이상을 소유한자로 재단에 상당한 기부를 한 자, ④ ①~②에 해당하는 자의 가족

- ② 상품이나 서비스, 편의시설의 제공(Fornishing of Goods, Services or Facilities) : 민간재단과 부적격자 간에 상품이나 서비스, 편의시설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 자기내부거래에 해당함.
- ③ 보수에 대한 지불(Payment of Compensation) : 민간재단과 부적격자 간에 보수나 부채에 대한 배상비용이 지나치게 많거나 자선목적 수행하는 데에 합리적이고 필요한 만큼이 아닌 경우 자기내부거래에 해당함.
- ④ 자산이나 수입의 사용 또는 이전(Use of Transfer of assets or income) : 민간재단의 수입이나 자산을 부적격자의 이득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자기내부거래에 해당됨.
- ⑤ 자금대출(Loan) : 민간재단이 부적격자에게 돈을 대출해 주는 경우 자기내부거래에 해당됨.
- ⑥ 정부 공무원에게 돈을 지불하는 경우(Payment to Government Officials) : 민간재단이 정부 공무원에게 돈을 지불하는 계약을 맺은 경우, 비록 그 비용이 금액상 합리적인 경우이더라도 자기내부거래에 해당됨.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사적인 사용·수익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고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 자기내부거래(self-dealing)로 분류되어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적격자에게는 적격자와 민간재단 간에 이루어진 자기내부거래금액의 5%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관련 재단 매니저에게는 거래금액의 2.5%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⁹²⁾

3) 교육목적에 지출되지 않은 소득

IRC §4942에서는 민간사업재단(private operating foundation)이 아닌 민간재단(private nonoperating foundation)의 경우, 매년 고유목적에 최

92) IRC §4941

소 금액을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단의 순투자자산의 5%인 최소투자수익(minimum vestment return)을 매년 고유(공익)목적으로 지출 또는 분배하여야 한다.

지출하지 않은 소득(undistributed income)이란 지출할 수 있는 금액(distributed amount)에서 적격지출액(qualifying distribution)을 차감한 금액이며, 다음 회계연도 시작일 전까지 지출하지 않은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의 1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15%의 가산세를 부과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지출하지 않은 소득(undistributed income)의 100%금액을 가산세로 추가 부과하고 있다.

4) 기업주식 초과보유(Excess Business Holding)에 대한 과세

IRC §4943에서는 민간재단과 비적격자의 지분을 모두 합하여 주식회사의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간재단에 의한 기업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재단의 소유주식 지분을 제한하는 것이며, 민간재단은 면세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민간재단에 의해 기업이 지배될 경우 일반 영리기업과의 세제상 형평성이 위배되기 때문이다.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추가 보유분에 대해서는 그 가액의 5%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⁹³⁾

최초 가산세가 부과된 이후 회계연도 말에도 여전히 기업주식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을 경우 그 가액의 200%에 상당하는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5) 투기적인 주자(Jeopardy Investments)에 대한 과세

IRC §4944에서는 민간재단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협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 재단에 의해서 투자되는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93) IRC §4943

가산세가 부과된 후에도 당해 과세기간 안에 투기적인 투자가 계속 되는 경우 투자액의 25%에 상당하는 추가가산세가 민간재단에 부과된다.

재단 매니저가 그 투자에 참여했다면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5%의 가산세가 재단 매니저에게 부과되면 과세기간 안에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5%에 상당하는 세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6) 과세대상지출(Taxable Expenditures)에 대한 과세

IRC §4945에서는 출연재산의 부적절한 사용을 막기 위하여 세법상 과세대상지출을 명시하고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과세대상지출은 다섯 가지로 분류되어 규정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홍보나 로비활동
- 입법에 영향을 주거나 투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
- 개인들에 대한 보조금
- 공공 자선단체 이외 다른 단체에 대한 보조금
- 자선목적 외의 다른 목적의 지출
- 명시된 과세대상지출을 하는 민간재단에는 1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과세대상지출이라는 것을 알고 지출에 동의한 재단 매니저에게는 2.5%의 가산세(최고 5,000달러 한도로)를 부과

10. 소 결

미국 내국세입법은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공제 단체들의 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하위법이 기부금공제 대상이 되는 단체를 직접 규정하고 매년 그 범위를 조정하기 위해 개정을 거쳐야 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제 2 절 캐나다

1. 개 요⁹⁴⁾

(1) 소득세

자선기부금(Charitable donations) 규정에 따라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은 CAD200 이하의 기부금은 기부금의 15%를, CAD200 초과와 기부금은 기부금의 29%를 세액공제할 수 있다. 자선단체(Charities)란 CRA(Canada Revenue Agency)에 자선단체로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기부금의 한도는 기부자의 순소득(net income)의 75%(만약 문화유산 및 생태보호토지의 기부의 경우 순소득의 100%, 당해연도 사망자의 경우 순소득의 100%를 적용), 당기에 기부한 자본자산(capital property)으로 인해 발생한 자본이득 중 소득(income)에 포함시킨 자본이득의 25% 및 당기에 감가상각자산의 기부로 인하여 과세소득에 포함시켜야 할 감가상각비 환수액(recapture depreciation)의 합계액이 된다.

공제한도를 초과한 자선기부금은 5년 동안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자본자산의 기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은 전액 세액공제된다. 미사용된 세액공제액은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등록정당(registered federal political party)이나 공개적으로 추천된 입후보자에게 지급한 기부금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CAD400 이하인 경우 기부금액의 75%, CAD400 초과 750 이하의 경우에는 기부금액의 50%, CAD750 초과 1,275 이하의 경우에는 기부금액의 33.33%가 공제한도가 된다. 다만, 총액한도는 CAD650이다.

94) 김진수·김태훈·김정아, “주요국의 기부관련 세제지원제도와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09. 8., 54-57면.

(2) 법인세

자선기부금(charitable donations) 규정에 따라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은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자선단체는 소득세의 경우와 같이 CRA에 자선단체로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한편, 공제한도는 기부자의 순소득의 75%, 당기에 기부한 자본자산으로 인해 발생한 자본이득 중 소득에 포함시킨 자본이득의 25% 및 당기에 감가상각자산의 기부로 인하여 과세소득에 포함시켜야 할 감가상각비 환수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공제한도를 초과한 자선기부금은 5년 동안 이월공제된다.

자본자산의 기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은 전액 세액공제되며, 미사용된 세액공제액은 5년간 이월공제된다.

2.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제도⁹⁵⁾

(1) 공익법인이 출연받는 재산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자선단체(charities)나 비영리조직(NPO)은 수취하는 기부금(contribution)에 대하여, 자선단체나 비영리조직은 과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는 기부받은 금액의 연간지출한도(annual disbursement quota) 이상의 금액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2) 공익법인(운용소득)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비영리단체는 자선단체, 비영리조직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 자선단체란 자선활동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등록된 비영리단체를 말한다.⁹⁶⁾ 조세당국에서 자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을 인정하는

95) 김진수·김태훈·김정아, “주요국의 기부관련 세제지원제도와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09. 8., 57-62면.

96) sec. 149(1)(f) ITA

경우에는 모든 형태의 조직이 자선단체가 될 수 있다. CRA는 적절한 자선사업 영위 비영리단체에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소득세법(income tax act)에서는 ‘자산활동(charity)’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제시하고 있지 않음. 다만, 일반적으로 다음의 4가지 목적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⁹⁷⁾

- ① 빈곤 구제
- ② 교육 제공
- ③ 종교활동 제공
- ④ 기타 공동체의 공익을 위한 목적

비영리조직(NPO)이란 비영리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중 자선단체가 아닌 것을 말하며, 자선사업 이외의 사회복지(social welfare), 공공개선(civic improvement) 및 기타 비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단체를 의미한다. 정부, 의료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 과학연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법인)⁹⁸⁾ 포함한다.

1) 자선단체(charities)의 법인세(income tax) 면제⁹⁹⁾

자선단체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는 면제된다. 다만, CRA에 등록되어야 소득에 대한 과세가 면제된다.

자선단체의 사업소득, 자산소득,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 자본이득 등은 소득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과세되지 않는다. 자선단체의 경우, 자선활동과 그와 관련된 사업(related business)만 수행 가능하기 때문에 자선활동과 관련 없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선단체(charities)는 자선조직, 자선재산, 공공 자선재단, 민간 자선재단으로 분류된다.¹⁰⁰⁾

97) canada, Cahier, IFA (1999)

98) sec. 149(1)(i), (8)-(9) ITA

99) sec. 149(1)(f) ITA

100) <http://www.cra-arc.gc.ca/E/Pub/tg/rc4108/rc4108-02e.pdf>

우선 자선조직(charitable organization)은 단체가 직접 자선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임원의 50% 이상이 공정가액으로 거래하여야 하며, 자선단체가 기부받은 자산의 50%가 한사람이나 조직에 의해서 받지 않아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를 말한다.

한편, 자선재단(charitable foundation)은 일차적으로 자선활동을 하는 단체에 자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공공 자선재단은 자선활동을 목적으로 법인이나 신탁의 형태로 설립되고 운영되며, 적격한 수혜자(qualified donee)에게 소득의 50%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단체이다. 민간 자선재단은 자선활동을 목적으로 법인이나 신탁의 형태로 설립되고 운영되며, 자선조직이나 공공 자선재단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자선단체가 유지되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영리단체(법인)의 주주, 회원 등에게 소득의 일부를 배분해서는 안되며, 자선단체(charity)는 연간 지급한도(disbursement quota)를 준수하여야 한다. 중요한 연간 지급한도는 다음과 같다.

- 직전연도에 발행한 기부금영수증 총계의 80%
- 직전 2개연도 평균 총자산의 4.5%를 지출하여야 함.

지급한도는 다음에 기초하여야 한다.

- 자선조직 : 직전연도에 수취한 기부금
- 자선재단 : 직전연도에 수취한 기부금과 재단의 투자 포트폴리오 금액

자선재단의 제한사항이 있는데 우선, 자선재단에 의한 다른 법인에 대한 통제권 취득은 금지된다. 또한 자선재단은 일반적으로 부채의 부담이 금지되나, 다만 영업자금, 투자자산의 취득과 처분을 위한 자

금 및 자선활동의 관리 과정 중에 필요한 자금 등을 위해서 부채를 부담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른 자선 단체에 대한 기부활동은 금지되는데, 이는 지출한도를 맞추기 위하여, 순환적인 기부를 막기 위함이다. 한편, 자선조직의 정치 활동 참여는 금지된다.

2) 비영리조직(Non-profit organizations) 법인세 면제¹⁰¹⁾

자선단체가 아닌 비영리조직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에 대한 과세가 면제된다.¹⁰²⁾ 이러한 비영리단체는 CRA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비영리사업의 경우, 사업소득, 자산소득,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 자본이득 등 소득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주로 급식시설, 레크리에이션 시설, 스포츠 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조직이 CAD2,000을 초과하는 연간투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Part I tax)를 부담한다.¹⁰³⁾

적용대상으로는 클럽(club), 협회(society) 및 사단(association) 등이 사회복지(social welfare), 공익증진(civic improvement), 레크레이션(recreation) 및 기타 비영리목적만을 위하여 설립되고 운영되어야 하는 단체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소득은 주주 등에게 지급되거나 주주 등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아마추어 선수 육성을 위한 비영리조직은 그러한 사용이 허용된다.

만약, 비영리조직이 영리활동의 의도를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경우, 영리활동에 의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과세된다.

101) sec. 149(1)(l) ITA

102) sec. 149(1)(l) ITA

103) sec. 149(5) ITA

3) 과학연구·실험개발을 위한 비영리법인(Non-Profit Corporation)
법인세 면제¹⁰⁴⁾

과학연구와 실험개발을 수행할 목적만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의 법인세는 면제된다. 면세를 위한 적용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연구와 실험개발을 수행할 목적만을 위하여 설립되어야 한다.

둘째, 해당 법인의 소득은 주주 등에게 지급되거나 주주 등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셋째, 다른 회사의 통제권을 취득할 수 없다.

넷째, 수익사업을 수행해서는 안되며, 연구와 개발에 지급한 비용이 전체 수익의 90%를 미달하지 않아야 한다.

제 3 절 일 본

1. 개 요

일본 법인세법은 기부금을 금전, 기타 자산과 같은 경제적 이익의 증여 또는 무상의 공여라고 정의하고 있다.¹⁰⁵⁾ 일본에서도 기부금이 개인이나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를 유발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부금을 경비로 하여 차감하는 것은 이익처분의 성질을 가질 수 있음을 고려하였을 때 그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을 지적하는 논의가 있다.¹⁰⁶⁾

일본은 기부 받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 기부금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고, 각 기부금의 종류와 기부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공제 한도에 있어 차등을 부여하고 있다.

104) sec. 149(1)(j) ITA

105) 일본 법인세법 제37조 제7항.

106) 金子宏, 租税法(第14版), 弘文堂, 2009, 305면.

기부금의 종류는 개인이나 법인별로 같다. 다만, 공제한도에 있어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다.

< 표 20 > 일본의 개인과 법인에 대한 기부금 세제

구분	종류	공제한도
개인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	· Min[소득금액의 40%, 특정기부금액), 2천엔].
	· 지정기부금	
	· 특정 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 · 인정NPO법인에 대한 기부금	
	· 일반기부금	· 공제 비허용
법인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	· 전액 손금산입
	· 지정기부금	
	·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 · 인정NPO법인에 대한 기부금	· 소득금액 × 2.5% + 자본금 등의 금액 × 0.25%
	· 일반기부금	· (소득금액 × 2.5% + 자본금 등의 금액 × 0.25%) × 50%

2. 기부금 관련 세제

(1) 개인에 의한 기부금

개인에 대한 기부금의 경우 특정기부금 소득공제와 정당 등 기부금 특별공제로 구분할 수 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특정기부금이 우선 다음 ‘가’의 금액이 ‘나’의 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한 금액을 총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다.¹⁰⁷⁾

107) 일본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가. 지출한 특정기부금의 합계액(단, 합계액이 거주자의 총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산림소득금액의 합계액의 백분의 4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백분의 40을 적용한 금액)

나. 2천 엔

‘특정기부금’이란 다음의 기부금을 말한다.¹⁰⁸⁾

-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
- 공익사단법인, 공익재단법인,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행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금(해당 법인의 설립을 위한 기부금 또는 그 밖의 해당 법인의 설립 전에 기부된 금액은 정령으로 정한 것을 포함) 중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 대중으로부터 널리 모집되는 것
 - 교육 또는 과학의 진흥,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의 공헌, 그 밖에 공익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지출로 긴급을 필요로 한 것에 충당된 것이 확실할 때
- 별표 제1에 언급한 법인,¹⁰⁹⁾ 그 밖에 특별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중 교육 또는 과학의 진흥,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의 공헌, 그 밖에 공익의 증진에 현저하게 기여한 것으로 정령으로 정한 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에 관련된 기부금.
- 거주자가 특정공익신탁¹¹⁰⁾ 중 그 목적이 교육 또는 과학의 진흥,

108) 일본 소득세법 제78조 제2항.

109) 별표 제1은 공공법인 등에 관한 표로 구체적인 공공법인과 그 근거법이 표시되어 있다.

110) 일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217조의 2. 법 제78조 제3항에 규정한 정령으로 정한 요건이란, 다음에 언급한 사항이 신탁행위에 있어 분명하고 또한, 수탁자가 신탁회사로 있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공익신탁의 종료(신탁의 병합에 의한 종료를 제외한다. 다음 호에 있어 동일)의 경우에 있어, 그 신탁재산이 국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귀속하고, 또는 해당 공익신탁이 유사한 목적을 위한 공익신탁으로서 계속한 것인 것.
2. 해당 공익신탁은, 합의에 의한 종료를 할 수 있지 않는 것인 것.
3. 해당 공익신탁의 수탁자가 그 신탁재산으로서 받아들인 자산은, 금전에 한정된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의 공헌, 그 밖에 공익의 증진에 현저하게 기여한 것¹¹¹⁾으로 정령으로 정한 것

인증NPO법인은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중 보건, 의료, 교육 또는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국세청장에 의해 인정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¹¹²⁾

이들 단체에 대한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는 당해 연도에 지출한 특정기부금의 합계액과 당해 연도 총소득금액¹¹³⁾의 40% 중 적은 금액

것인 것.

4. 해당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의 운용은, 다음에 언급한 방법에 한정된 것인 것.
 - 가. 예금 또는 적금
 - 나. 국채, 지방채, 특별한 법률에 의하고 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대부 신탁의 수익권의 취득
 - 다. 앞의 가와 나에 준한 것으로 하고 재무성령으로 정한 방법
 5. 해당 공익신탁에 대해 신탁관리인이 지정된 것인 것.
 6. 해당 공익신탁의 수탁자가 그 신탁재산의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자는, 해당 공익신탁의 목적에 관하고 학식 경험을 갖는 자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 것.
 7. 해당 공익신탁의 신탁관리인 및 전호에 규정한 학식 경험을 갖는 자에 대해 그 신탁재산으로부터 지불된 보수의 이마는, 그 임무의 수행을 위해 통상 필요한 비용의 이마를 초과하지 않는 것인 것.
 8. 해당 공익신탁의 수탁자가 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보수금액은, 해당 공익신탁의 신탁 사무의 처리에 필요로 한 경비로서 통상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인 것.
- 111) 공익의 증진에 현저하게 기여한 것으로 정령으로 정한 것에 대해 일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217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독립행정법인법(平成 15년 법률 제118호) 제2조 제1항(정의)에 규정한 지방독립행정법인으로 동법 제21조 제1호 또는 제3호로부터 제5호까지에 언급한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 자동차 안전운전센터, 일본 사법지원센터, 일본 사립학교 진흥·공제 사업단 및 일본적십자사,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 사립학교법(昭和 24년 법률 제270) 제3조(정의)에 규정한 학교법인으로 학교의 설치 또는 학교 및 전수학교 또는 각종 학교의 설치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 또는 사립학교법 제64조 제4항(사립 전수학교 등)의 규정에 의하고 설립된 법인으로 전수학교 또는 각종 학교의 설치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 사회 복지 법인, 갱생보호법인
- 112) 예컨대, 총수입금액 등에서 기부금총액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5분의 1이상이어야 하고, 기부자의 기부액이 전체 기부금액의 5%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부금총액 등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본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기관으로부터 위탁사업수입은 총수입금액으로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 113) 총소득금액은 결손금, 잡손실, 기타 각종 손실의 이월공제 후의 총소득금액,

에서 5천 엔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여기서 특정기부금이란 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 ② 지정기부금(재무대신이 지정), ③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 ④ 정치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을 말한다.

(2) 법인에 의한 기부금

법인에 의한 기부금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업연도 종료 시점의 자본금등의 금액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의 금액을 기초로 정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부분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¹¹⁴⁾

단, 다음의 기부금이 있을 경우에는 한도계산을 위한 기부금 총액에 산입하지 않는다.¹¹⁵⁾

-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
- 공익사단법인, 공익재단법인,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행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금(해당 법인의 설립을 위한 기부금 또는 그 밖의 해당 법인의 설립 전에 기부된 금액은 정령으로 정한 것을 포함) 중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 대중으로부터 널리 모집되는 것
 - 교육 또는 과학의 진흥,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의 공헌, 그 밖에 공익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지출로 긴급을 필요로 한 것에 충당된 것이 확실할 때

특별공제 전의 분리과세의 장·단기 양도소득의 금액, 주식 등에 관한 양도소득 금액, 선물거래에 관한 잡소득 금액, 산림소득금액 및 퇴직소득 금액의 합계액을 말함.

114) 일본 법인세법 제37조 제1항.

115) 일본 법인세법 제37조 제3항.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기부금 손금산입에 대한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앞서 개인에 의한 기부금의 경우 한도가 적용되는 것과 차이가 난다.

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¹¹⁶⁾

○ 일반법인, 협동조합, 인격이 없는 사단의 경우

- (해당 사업연도 종료 시점 자본금 × 0.25%)¹¹⁷⁾ +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2.5%)

다만, 일반법인, 협동조합, 인격이 없는 사단 중 자본 또는 출자를 하지 않은 경우, 별표 제2에 언급된 사단 및 재단법인, 재무성령으로 정한 법인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2.5%를 한도로 한다.

특정공익증진법인¹¹⁸⁾에 대한 기부금과 인정NPO법인에 대한 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의 2.5%와 자본금 등의 금액의 0.25%¹¹⁹⁾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116) 일본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117)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할계산하여야 한다.

118) 특정공익증진법이란 다음을 말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독립행정법인통칙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독립행정법인, 지방독립행정법인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방독립행정법인으로 시험연구, 병원사업의 경영, 사회복지사업의 경우의 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민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법인 중 (재)일본체육협회, (재)무역연수센터, (재)관서문화학술연구도시추진기구, 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 방송프로그램센터, (재)장수사회개발센터, (재)일본올림픽위원회, 식품유통구조개선추진기구, (재)대판만지역개발추진기구, 정신장애사사회복지추진센터, 학술에 관한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일본육영회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제6호의 지정을 받은 것, 민법법인으로 교육 또는 과학의 진흥,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에의 공헌, 기타 공익의 증진에 현저히 기여하는 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 사립학교법 제3조에 규정하는 학교법인으로 학교의 설치 또는 학교 및 전수학교 또는 각종 학교의 설치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 또는 사립학교법 제64조 제4항에 의해 설립된 준학교법인에서 전수학교의 설치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 규정하는 사회복지법인, 갱생보호사업법 제2조 제6항에 규정하는 갱생보호법인

119) 해당 사업연도 종료 시 자본금 등의 금액(자본금 등의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을 적용)을 12로 나눈 후,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해 0.25%를 곱한다.

다만, 일반기부금의 경우 개인의 경우에는 공제가 허용되고 있지 않았으나, 법인에 대해서는 허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반기부금의 한도는 소득금액의 2.5%와 자본금액의 0.25%를 합한 금액의 50%가 적용된다.

3.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제도¹²⁰⁾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1) 상속세 비과세¹²¹⁾

상속세 비과세 대상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다음의 자를 말한다.¹²²⁾

사회복지법 제2조(정의)에 규정하는 사회복지사업, 갱생보호사업법 제2조 제1항(정의)에 규정하는 갱생보호사업, 학교교육법 제1조(학교의 범위)에 규정하는 학교를 설치해, 운영하는 사업 그 외의 종교, 자선, 학술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그 사업 활동에 의해 문화의 향상, 사회 복지에의 공헌 그 외 공익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실시하는 자¹²³⁾

종교, 자선, 학술 및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이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해 취득한 재산을 해당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 그 상속재산은 상속세의 과세가격에 산입하지 않는다.

120) 김진수·김태훈·김정아, “주요국의 기부관련 세제지원제도와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09.8, 66-72면.

121) 일본 상속세법 제12조

122) 일본 상속세법 제12조 제3항

123) 일본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2) 증여세 비과세¹²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다음의 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¹²⁵⁾

사회복지법 제2조(정의)에 규정하는 사회복지사업, 갱생보호사업법 제2조 제1항(정의)에 규정하는 갱생보호사업, 학교교육법 제1조(학교의 범위)에 규정하는 학교를 설치해, 운영하는 사업 그 외의 종교, 자선, 학술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그 사업 활동에 의해 문화의 향상, 사회 복지에의 공헌 그 외 공익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실시하는 사람¹²⁶⁾

종교, 자선, 학술 및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이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재산을 해당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 그 증여재산은 증여세의 과세가격에 산입하지 않는다.

3) 인정NPO법인 기부금 상속세 면제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가 면제된다. 상속·유증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재산을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인정NPO법인에 대해 그 인정NPO법인이 수행하는 특정 비영리활동에 관련된 사업에 기부한 경우에는 그 기부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의 승인요건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하고, 이익을 구성원으로 분배하지 않고, 또한 해산시에 그 재산을 국가 등에 기증하여야 한다. 한편, 사원자격 부여에 대해 부당한 조건이 없어야

124) 일본상속세법 제21조의3

125) 일본상속세법 제12조 제3항

126) 일본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하고, 이 때 사원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임원으로 3명 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시가 있어야 하고, 보수를 받을 임원의 수가 이사총수의 3분의 1이하이어야 한다. 종교 활동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하며, 특정 공직자(후보자 포함) 또는 정당 추천, 지지, 반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아야 한다. 폭력단이나 폭력단의 통제에 있는 기관이 아니어야 한다.

특정비영리활동이란, 다음의 17분야의 활동으로 불특정 다수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¹²⁷⁾

- 보건·의료 또는 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 활동
- 사회 교육의 추진을 도모하는 활동
- 마을 만들기의 추진을 도모하는 활동
- 학술, 문화, 예술 또는 스포츠의 진흥을 도모하는 활동
- 환경의 보전을 도모하는 활동
- 재해 구원 활동
- 지역 안전 활동
- 인권의 옹호 또는 평화의 추진을 도모하는 활동
- 아이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는 활동
- 정보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활동
- 과학기술의 진흥을 도모하는 활동
-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활동
- 직업 능력의 개발 또는 고용 기회의 확충을 지원하는 활동
- 소비자의 보호를 도모하는 활동
- 이러한 각 호로 내거는 활동을 실시하는 단체의 운영 또는 활동에 관한 연락, 조언 또는 원조의 활동

127) 일본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제2조 관련 별표, <http://npo-hiroba.or.jp/know/answer02.html#a01>

(2) 공익법인(운용소득 등)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1) 공공법인의 법인세 납부의무 면제

일본 법인세법상 비영리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공공법인과 공익법인 등이 있다.

우선 공공법인은 일본 법인세법 별표 제1호에서 열거한 법인을 말한다.¹²⁸⁾ 구체적으로, 국립대학법인(국립대학법인법), 지방공공단체(지방자치법), 일본중앙경마회(일본중앙경마회법), 일본방송협회(방송법) 등이 있다.

공익법인 등이란 일본 법인세법 별표 제2호에서 열거한 법인¹²⁹⁾으로, 다음은 별표 제2호에서 열거된 법인의 일부 예시이다.

- 일반재단법인(비영리형) : ‘일반사단법인및일반재단법인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법인
- 일반사단법인(비영리형) : ‘일반사단법인및일반재단법인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법인
- 공익재단법인 : ‘일반사단법인및일반재단법인에관한법률’ 및 ‘공익사단법인및공익재단법인의인정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법인
- 공익사단법인 : ‘일반사단법인및일반재단법인에관한법률’ 및 ‘공익사단법인및공익재단법인의인정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법인
- 의료법인 : 의료법 제42조의2 제1항(사회의료법인)에 규정하는 사회의료법인
- 종교법인 : 종교법인법에서 규정하는 법인

128) 일본 법인세법 제2조 제5호

129) 일본 법인세법 제2조 제6호

비영리형 사단법인·재단법인이란 일반사단법인 또는 일반재단법인(공익사단법인 또는 공익재단법인은 제외) 중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것을 말한다.¹³⁰⁾

- 영리 획득 또는 이익분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정관에 잉여금의 분배를 실시하지 않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것
- 법인이 해산했을 경우에는 정관에 그 잔여 재산이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공익사단법인 또는 공익재단법인 등에 귀속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것 등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로 해당 회원에게 공통이익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법인의 경우,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이 적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회원의 상호 지원, 교류, 연락 그 외의 해당 회원에 공통되는 이익을 도모하는 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함.
- 정관에 그 회원이 회비로 해서 부담해야 할 금전액의 규정 또는 해당 금전액을 사원총회 혹은 평의원회의 결의에 의해 정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어야 함.
- 각 이사에 대해서, 해당 이사 및 해당 이사의 배우자 또는 삼촌 이내의 친족 등 특수관계자인 이사의 총수가 이사의 총수 중에서 1/3이하이어야 함 등임.

2) 공공법인의 법인세 납부의무 면제

공익법인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없다.¹³¹⁾ 내국법인인 공익법인 등의 각 사업연도 소득 중 수익사업으로부터 생긴 소득 이외의 소득

130) 일본 법인세법 제2조 제9의2호

131) 일본 법인세법 제4조

및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각각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¹³²⁾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한다.

- 수익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 법인 과세 신탁의 인수를 실시하는 경우
- 일본 법인세법 제84조 제1항(퇴직연금 등 적립금의 액수의 계산)에 규정하는 퇴직연금 업무 등을 실시하는 경우

공익법인 등이 수익사업을 수행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에서 열거한 33개의 업종¹³³⁾으로, 사업장에서 계속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을 말한다.

공익사단법인·공익재단법인, 비영리형 일반사단법인·일반재단법인에 대한 세율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30/100¹³⁴⁾이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8백만엔 이하인 경우, 22/100의 세율이 적용된다.¹³⁵⁾ 이외의 공익법인 등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22/100가 세율로 적용된다.¹³⁶⁾

공익법인 등이 수익사업 이외의 사업 또는 이것에 속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에 대해 부과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을 지불받는 경우, 이 ‘이자 및 배당 등’에 부과되는 소득세에 대해서는 기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¹³⁷⁾

132) 일본 법인세법 제7조

133) 물품판매업, 부동산판매업, 금전대부업, 물품대부업, 부동산대부업, 제조업, 통신업, 운송업, 창고업, 청부업, 인쇄업, 출판업, 사진업, 석대업(席貸業), 여관업, 요리점업 그 외의 음식점업, 중개업, 대리업, 중립업, 도매상업, 광업, 토석 채취업, 목욕탕업, 이용업, 미용업, 흥행업, 유희소행, 유람소행, 의료보건업, 기예교수업, 주차장업, 신용보증업, 무체재산제공업

134) 일본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135) 일본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136) 일본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137) 일본 법인세법 제68조 제2항

3) 간주기부금 제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지출을 기부금으로 간주하여 일정비율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을 간주기부금 제도라고 한다. 간주기부금의 한도는 공익법인 등의 경우 소득금액의 20%까지 손금이 허용되고,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갱생보호법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50%가 손금으로 허용된다.

4.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관련 제도

(1) 비영리법인의 범위

일본의 경우 ‘NPO’는 영어의 Non-profit Organization에서 유래한 것이므로 비영리조직을 의미하지만, 이는 광의의 개념이고 다양한 의미로 NPO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비영리단체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로 정의한다면, 지방공공단체나 동창회 등도 포함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비영리단체라 하면 ‘민간조직으로서 공익을 위한 목적을 수행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법상의 공익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이나 특별법에 의한 의료법인·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 등이 「공익 목적을 갖는 민간비영리조직」으로서 광의의 NPO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협의의 NPO라고 하면, 광의의 NPO에서 민법상의 공익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이나 특별법에 의한 의료법인·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 등을 제외한 조직을 의미한다.

NPO법인이란 1998년 12월 1일에 시행된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에 따라 법인격을 얻은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을 말한다.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은 ‘NPO법’으로,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은 NPO법인으로 약칭하여 많이 사용한다. NPO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민간비영리활동단체가 법

인격을 취득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조직운영상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간단히 법인격을 취득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였고 민간 자선단체(프론티어) 조직이 재해 원조에 큰 역할을 할 것이 계기가 되어 NPO법이 제정되었다.

(2) NPO법인

1) NPO법인의 정의

NPO법은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을 NPO법인이라 정의하고 있다.¹³⁸⁾

- 특정비영리활동을 행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단체
-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
 - 사원 자격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당한 조건이 없고 임원 중 보수를 받는 자의 수가 임원 총수의 3분의 1 이하인 단체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
 - 종교활동, 정치활동, 선거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
- NPO법이 정하는 것에 따라 설립된 법인

특정비영리활동이란 다음에 열거된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¹³⁹⁾

- 보건, 의료 및 복지의 증진을 위한 활동
- 사회교육의 추진을 위한 활동
- 마치즈쿠리¹⁴⁰⁾ 추진을 위한 활동

138) NPO법 제2조 제2항

139) NPO법 제2조 제1항

140) 주민 주체의 커뮤니티형성 운동으로서, 지역사회 재생을 위한 물리적·사회적·문화적인 각종 프로그램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임.

- 학술, 문화, 예술 및 스포츠 진흥을 위한 활동
- 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 재해지원 활동
- 지역안전 활동
- 인권옹호 및 평화 추진을 위한 활동
- 국제협력활동
- 남녀공동참여사회의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
- 자녀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활동
- 정보화사회의 발전을 위한 활동
-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활동
-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
- 직업능력의 개발 및 고용기회의 확충을 지원하는 활동
- 소비자 보호를 위한 활동
- 상기 열거된 활동을 행하는 단체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원조 및 지원 활동

2) NPO법인의 정보공개 및 감독

① 정보공개

NPO법은 NPO법인의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에 대한 각종 규정을 두고 있다. 즉, NPO법인은 설립이 인정된 후에도 NPO법이 규정하는 것에 따라 외부에 대해 정보공개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보공개 제도가 마련된 배경은 「NPO법 해석(191항)」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업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시민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그 사업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시민 상호의 확인에 의해 자정작용을 기대’하기 위한 것이다. NPO법인에 대한 정보공개제도는 시민에 의한 확인을 통해 NPO법인을 사회적으로 감독하는 것이고 행정청

의 관여를 사후적인 것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또한 NPO법인은 정보공개를 통해 시민으로부터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NPO법인은 매 사업연도 초 3개월 이내에 전 사업연도에 대한 해당 서류를 작성하고 다음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즉 3년간)주요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NPO법 제28조 1항).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는 사업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등과 임원명부 및 전년도 보수를 받은 자의 명부, 10인 이상의 사원 서명 및 주소를 기재한 서면 등이다. NPO법인은 사원 및 기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사업보고서 등, 임원명부 등, 정관, 증명, 등기에 관한 서류의 열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열람되어야 한다(NPO법 제28조 2항). 이해관계인으로는 예를 들어, NPO법인에 대한 채권자, 자금 제공자, 서비스 수익자 등이 있다.

NPO법인은 내각부령·도도부현 조례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 매 사업연도 1회, 다음의 서류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NPO법 제29조 1항).

- 내각부령·도도부현 조례에서는 사업연도 초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사업보고서 등 제출서와 함께 공개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관 변경이 없는 경우의 제출서류: 사업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임원명부 등
 - 전 사업연도에 정관 변경이 있었던 경우의 제출서류: 전기 사업보고서 및 임원명부 등에 추가하여 정관, 정관변경에 관한 인증서류의 사본(단, 정관 변경이 인증사항인 경우), 정관 변경에 관한 등기서류의 사본(단, 정관 변경이 등기사항인 경우)
- 관할청은 NPO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상기 서류에 열람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내각부령·조례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 열람해야 함(NPO법 제29조 2항)

- 이 열람청구는 사무소 비치서류의 열람 경우와 달리 이해관계인에 한정되지 않고 누구라도 열람청구를 할 수 있음
- o NPO법인은 임원의 성명·주소변경이 있는 경우, 임원이 새로 취임한 경우, 경미한 사항에 대한 정관 변경을 한 경우 등에는 관할 부서에 당해 사항을 신고해야 함

② 감독제도

NPO법은 민간비영리조직이 비교적 간소한 절차로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NPO법인이 해야 하는 정보공개에 대해 규정하고 시민이 해당 NPO법인의 활동을 파악하여 그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NPO법인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정보공개제도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위법 행위 및 부당행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후적인 제도로서 NPO법인에 대한 관할청의 감독제도도 마련하였다. 감독 방법으로는 보고 및 검사(NPO법 제41조), 개선명령(NPO법 제42조), 설립인정의 취소(NPO법 제43조)에 관한 규정 외에 NPO법인에 대한 폭력단의 관여를 배제하는 측면에서 경찰청장관, 경시총감, 도부현 경찰본부장과 관할청과의 사이에 의견청취 등의 수단도 규정하고 있다.

○ 보고·검사

관할청은 ① NPO법인의 의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② 해당법인의 사무소 기타 시설에 들어가 업무, 재산상황, 장부, 서류 등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그러나 NPO법인의 자주성을 배려하기 위하여 보고·감사는 「법령, 법령에 기초하는 행정청의 처분 및 정관에 위반한다고 하는 혐의가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NPO법 제41조 1항). 검사에 있어서 검사를 행하는 직원은 ‘상당한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검사대상 사무소 등의 관리권한이 있는 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또한 교부 요구가 있으면, 당해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NPO법 제41조 2항). 검사를 하는 직원은 신분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가 NPO법에 근거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NPO법 제41조 3항).

보고·검사의 전제가 되는 ‘상당한 이유’는 단순한 ‘의혹’으로는 부족하고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다.

- 이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지만 2003년 2월에 내각부 「NPO법의 적절한 운용 등에 관한 검토회」에서 발표한 「시민활동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NPO법의 운용방법에 대하여-논점정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제시하고 있다.
- 경찰당국, 검찰당국이 NPO법인이 행한 사업에 대해 당해 NPO법인의 임원 등을 강제 수사한 경우(절도죄나 상해죄 등, 법인의 업무와 관계없이 개인적인 범죄는 제외)
- 그 시행행정이 법령에 근거하여 NPO법인에 대해 업무의 정지 등의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
- NPO법인의 사업내용에 대해 동종의 심각한 소비자피해 등이 다수 보고되는 등의 사실이 발생하고, 법령위반 등의 의심이 상당하며, 동시에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여지는 경우
- 허위의 내용 보고가 행해지고 있다는 의심이 상당한 경우

NPO법상 「법령, 법령에 기초하는 행정청의 처분 및 정관에 위배하는 혐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할청이 보고징수 등을 할 수 있다(NPO법 제41조 1항). 그러나 보고 징수 등은 관할청의 감독권한의 행사이므로, 보고 징수 등의 감독권한의 행사 이전에 NPO법인이 자발적으로 개선조치를 취하여 사태가 개선되고 있다면 관할청이 감독권한을 굳이 행사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시민활동의 발전을 목표로 한 NPO법 운용방법에 대하여-논점정리-」에서는 법령위반 등의 혐

의가 있는 ‘상당한 이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NPO법의 설립취지·이념이 NPO법인의 설명책임과 시민에 의한 검토 기능을 기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우선은 당해 NPO법인에 대해, 그러한 혐의에 대한 자발적인 설명을 시민에게 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NPO법인에 대해서 시민을 향해 자발적인 설명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것을 관할청에게 요구하고 있다. 행정지도는 본래 강제력을 갖지 않는 것이고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는 것을 이유로 불리한 취급을 할 수 없지만, 실제로 행정지도를 받는 측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지도가 있고 그것이 활발해지면 NPO법인의 자주성을 상당히 손상시키게 되어 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미 법령위반 등의 의혹이 ‘상당한 이유’의 존재가 확실하고 관할청에 의한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보고징수를 하는 것이 가능한 단계에 이르러 있다면 감독권한의 행사보다도 NPO법인의 자주성을 존중할 수 있는 행정지도가 NPO법인제도에서도 바람직한 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정지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NPO법인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주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할청은 NPO법인에 법령위반 등의 의혹이 있는 ‘상당한 이유’를 발견한 경우 원칙적으로 우선 해당 NPO법인에 대하여 그 의혹에 대한 자발적인 설명을 시민에 대해 행하도록 요청하고 해당 설명이 이루어져도 여전히 사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보고징수 등을 행해야 한다.

NPO법인은 NPO법이 규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관할청으로부터 인정받아 법인격이 부여된 것이므로 NPO법인으로의 설립인증을 받은 후에도 운영상으로 NPO법 소정의 인증기준을 만족하지 않으면, 법령위반이 되므로 관할청으로부터의 보고·검사의 대사이 된다. 내각부는 2003년 3월 25일부로 「‘NPO법의 운용방침’에 대하여」라고 하는 서면에 따라 「특정비영리활동을 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

는 것」(NPO법 제2조 2항),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NPO법 제2조 2항 1호)의 요건에 관하여 보고·검사이 대상이 되는 감독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① 특정비영리활동에 관한 사업의 지출 규모가 2개 사업연도에 연속하여 총지출액의 3분의 1 이하인 경우, ② 기타사업에 있어서 2개 사업연도에 연속해서 적자인 경우, ③ 기타 사업의 수익이 2개 사업연도에 연속해서 특정비영리활동 관련 사업회계에 전액 이월되지 않은 경우, ④ 관리비가 총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개 사업연도 연속해서 3분의2 이상 있는 경우에는 보고·검사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기준이 많은 NPO법인의 실태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와 상관없이 NPO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이러한 기준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 개선명령

개선명령은 관할청이 NPO법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감독권 행사의 하나로 NPO법인에 대하여, 기한을 정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명하는 것이다(NPO법 제32조). 개선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① NPO법 제12조 1항 2호, 3호 또는 4호에 규정하는 요건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령, 법령에 기초하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경우, ③ NPO법인의 운영이 뚜렷하게 적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NPO법인의 인증요건은 법안 인증 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해서 유지해야 한다.

NPO법 제41조의 보고징수·검사 또는 NPO법인으로부터 받은 제출서류를 통해 개선명령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관할청은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NPO법만이 아니라 일반의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도 개선명령의 대상이 된다. NPO법인의 내부적인 규범인 정관규정을 위반한 경우도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무엇보다도, 관할청에 의해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개선명령을 하는 것이 가능한 단계라면 감독권한의 행사보다도 NPO법인의 자중성을 존중할 수 있는 행정지

도가 되는 것이 NPO법인제도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정지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NPO법인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주적인 개선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활동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 NPO법의 운용방법에 대하여-논점정리-」에는 NPO법인으로부터 보고징수 등을 행한 개선명령을 하기 전에, 우선은 당해 NPO법인 대하여, 자발적인 설명을 시민에 대하여 하도록 요청하고 사태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 개선명령을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NPO법인의 자주성을 존중할 수 있는 행정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청은 당해 NPO법인에 개선명령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도 보고징수와 마찬가지로 우선은 당해 NPO법인에 대하여 자주적인 설명을 시민에게 하도록 요구하고, 후에 사태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개선명령을 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 인증 취소

NPO법은 NPO법인이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할청이 법인 설립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¹⁴¹⁾ NPO법 설립의 인증 취소는 법인의 해산사유가 되므로 설립인증이 취소되면 NPO법인은 청산하고 최종적으로는 법인격이 소멸된다.¹⁴²⁾

관할청이 설립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NPO법인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¹⁴³⁾

- 첫째, NPO법인이 NPO법 제42조의 개선명령에 위반한 경우에 있어서 다른 방법에 의해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둘째, 3년 이상에 걸쳐 NPO법 제29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임원명부 및 정관 등의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141) NPO법 제43조

142) NPO법 제31조 1항 7호

143) NPO법 제43조 1항

- 다만, NPO법인의 법령 위반의 경우에 있어서, 개선명령에 의해 개선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명확하고 다른 법에 의해 감독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하지 않고 관할청은 NPO법인의 설립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NPO법 제43조 2항).

설립인증의 취소처분은 NPO법인에 있어서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수속법에 의거하여 「청문」의 수속이 필요하다(행정수속법 제13조 1항 1호). 이러한 審理에는 관할청의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기 위해 NPO법인이 공개에 의해 심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은 공개에 노력하여야 한다(NPO법 제43조 3항). 그러나 공개의 심리를 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개에 의해 행하지 않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해당 NPO법인에 교부하여야 한다(NPO법 제43조 4항).

○ 벌 칙

NPO법은 NPO법 위반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벌칙에는 형벌로서 벌금형과 행정상의 처벌로서 과태료(過料)가 있다.

벌금형의 경우, NPO법 위반의 벌칙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NPO법 제47조 및 제48조가 규정하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이다. 이것은 NPO법 제42조가 규정하는 업무개선명령에 따른 자에 대한 벌칙으로 이사,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업무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따르지 않은 자에게는 NPO법 47조에 의해 벌금형이 내려진다. 벌금형은 형벌이므로 수속에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되고 또한 벌금형에 처해지면 전과가 된다. NPO법인의 이사,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NPO법 제47조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가 NPO법 제47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것 외에 NPO법인도 50만엔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NPO법 제48조). 즉, NPO법인에는 이른바 양벌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과태료(過料)의 경우,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이 NPO법 제49조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0만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過料」란 금전을 지불하는 제재로서 형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벌금 및 科料와는 다른 것이다. 「過料」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제재로서 형벌은 아니며, 소속에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비송사건수속법이 적용된다.

(3) 인정 NPO법인

1) 인정 NPO법인의 성립요건

① public support 테스트

public support 테스트란 NPO법인이 얼마나 많은 지지를 얻는지 수입 면에서 판단하는 기준이다. 인정 NPO법인 요건 중 가장 충족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 public support 테스트의 요건에 있어 실적판정기간에 대해 다음의 판단기준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적판정기간이란, 신청사업연도의 직전에 종료한 사업연도종료일 전 2년 이내에 종료한 사업연도 중 가장 오래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당해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직전 2사업연도를 합한 기간을 말한다.

- o 판단기준: 수입기부금총액 등 ÷ 총수입금액 등 $\geq 1/5$

단, 실적판정기간 내의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상기비율 $\geq 1/10$ 을 만족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상기 기준은 원래 3분의 1이지만 특례에 의해 5분의 1로 기준이 완화된 것이다.

수입기부금총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기부자의 이름이 불명확한 기부금, 1인당 연간 1,000엔 미만의 기부금, 1인당 기준한도액을 초과하는 기부금이다.

- o 1인당 기준한도액 = 수입기부금 총액 $\times 5\%$

총수입금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다.

- 국가, 지방공공단체, 일본이 가입한 국제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등의 수입
- 국가, 지방공공단체, 일본이 가입한 국제기관으로부터의 위탁사업 수입
-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부담 수입
- 자산의 매각으로 인한 임시적인 수입
- 상속·유증에 의한 기부 중 1인당 기준한도초과액
- 1인당 연간 1,000엔 미만의 기부금
- 기부자 이름이 불명확한 기부금

소규모법인(실적판정기간 내의 각 사업연도의 총 수입금액의 평균이 800만엔 미만인 법인)이 실적판정기간에 임원 및 사원을 제외한 50인 이상의 기부자로부터, 1인당 3,000엔 이상의 기부금으로 기부자가 명확한 것을 받는 경우에는 2006년 4월 1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의 신청에 대해 public support 테스트 대신에 다음과 같은 계산식으로 판정할 수 있다. 만일 이 계산식을 적용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기준(1/10 이상)은 적용하지 않는다.

$$\{(\text{수입기부금 총액} - \text{1인당 기준하도초과액}) + \text{국가 등의 보조금} + \text{사원의 회비}\} / (\text{총수입금액} - \text{국가등의 위탁사업수입등}) \geq 1/3$$

② 공익적인 활동에 관한 요건

단체 구성원만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나 특정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배제하기 위하여 설계된 요건으로, 다음의 네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활동을 합계한 것이 전체의 사업활동의 50% 미만이어야 한다.

- 회원 등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활동(대가를 받지 않는 활동 제외) 및 회원 등 상호교류, 연락, 의견교환 등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사업활동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 특정 범위의 자에게 편익이 미치는 활동이 사업활동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 특정의 저작물 또는 특정인과 관련된 활동이 사업활동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 특정인의 뜻에 반하는 활동이 사업활동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회원 등이란 ① 법인으로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 및 용역의 제공이나 대부를 받는 자로서 그 법인의 장부서류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자, 동시에 그 법인으로부터 재화 및 용역의 제공이나 대부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받는 자 ② 상호교류, 연락, 의견교환에 참가하는 자로서 그 법인의 장부서류 등에 이름이 기재된 자, 동시에 실제로 상호교류, 연락, 의견교환에 참가한 자 ③ 임원을 포함한다.

대가를 받지 않는 활동 등은 다음의 행동을 포함한다.

- 이용자가 전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활동
- 이용자가 통상의 대사보다도 극히 적은 대가(약 10%정도)를 지불하는 활동
- 법인이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따라 필요한 비용 중 이용자가 본래 부담할 교통비나 소모품비 등의 어느 것이든 실비상당액만을 이용자가 지불하는 활동
- 법인의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따라 그 비용으로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최저임금 이하(최저임금법의 규정에 따라)의 금액과 그에 부수하는 실비상당액만을 이용자가 지불하는 활동

특정 범위의 자에게 편익이 미치는 활동이란 특정 단체의 구성원, 특정 직위의 자, 특정 지역의 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을 말한다.

특정 저작물 또는 특정인에 관련된 활동이란 특정의 저작물이나 특정인에 관련하여 보급계발, 광고선전, 조사연구, 정보제공 등의 활동을 말한다.

③ 운영조직·경리의 적정성 요건

인정 NPO법인은 운영조직 및 경리에 대해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o 운영조직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

$$\frac{\text{임원 또는 사원 중 친족 등으로 구성하는 가장 큰 그룹의 사람수}}{\text{임원 또는 사원의 총수}} \geq 1/3$$

$$\frac{\text{임원 또는 사원 중 「특정의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인」으로 구성하는 가장 큰 그룹의 사람수}}{\text{임원 또는 사원의 총수}} \geq 1/3$$

- o 회계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는 것 혹은 청색신고법인과 동일한 거래기록, 장부를 보존할 것
- o 부적정한 경리를 하지 않을 것

④ 사업활동의 적정성 요건

인정 NPO법인이 상시 사업 활동에 있어서 만족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다.

종교활동, 정치활동 및 특정의 공직자 또는 정당을 추천, 지지 또는 반대하는 활동을 행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임원, 종업원 또는 기부자들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지 않을 것과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자들에게 기부하지 않아야 한다. 이 요건은 인정 NPO법인이 특정인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 사업비에서 특정비 영리활동에 관계된 사업비가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비율을 사업비 이외의 지표에 따라 산정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그 사업비 이외의 지표에 의해 산정한 비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비에 따라 산정한 비율 대신, 사업비 이외의 지표에 의해 산정한 비율에 의해 그 요건을 판정할 수 있다.

수입기부금 총액 중 특정비영리활동에 관계된 사업비에 충당한 금액이 70%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도 있는데, 이는 기부금의 70% 이상을 NPO법인의 본래 목적인 특정비영리활동에 관계된 사업에 충당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부금을 모집하여, NPO법인의 급여나 관리비에만 충당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요건이다.

마지막으로, 200만엔 초과 해외송금 등을 행하는 경우는 사전에 그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화재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사후제출).

⑤ 정보공개에의 적정성 요건

인정 NPO법인은 항상 다음의 서류를 주 사무소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업보고서 등, 임원명부 및 정관 등
 - NPO법인이 사업연도 종료 후에 일괄하여 관할청에 제출하는 자료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사업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임원명부, 사원 중 10명 이상의 자를 기재한 명부
- 임원보수 또는 종업원급여의 지급에 관한 규정
- 사업활동의 적정성 요건 중 조성금의 지급 및 해외송금 또는 해외 송금시 국세청장관에 제출한 서류
- 자금에 관한 정보 : 수입금액의 원천별 명세, 차입금 명세 등
- 자산의 양도 등에 관한 정보 : 판매나 서비스의 제공을 행하는 경우 그 내용, 요금조건 등을 기재한 서류를 말함
- 거래에 관한 정보

제 4 장 주요국의 입법례

- 수입·지출에 대한 거래 금액의 상위 5위까지의 거래처 이름, 명칭, 주소, 거래금액, 거래내용 등 사업활동의 적정성 요건에서 임원 등과의 거래에 관한 거래처 이름, 명칭, 관계, 주소, 거래금액, 거래내용 등을 기재한 서류
- o 회원제도에 관한 정보
 - 회원의 자격요건, 회비제도, 회원의 주소 또는 사업소 소재지의 시정촌별 수 등을 기재한 서류
- o 기부에 관한 정보
 - 기부금모집에 관한 사항, 수입기부금의 사용, 금액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o 20만엔 이상의 기부자에 관한 사항
 - 20만엔 이상 기부를 한 자의 이름, 명칭, 기부금액, 수령 연월일을 기재한 서류
- o 임원보수와 종업원의 급여에 관한 정보
- o 지출기부금의 정보
 - 지출한 기부금액, 지출처의 이름, 명칭, 주소, 지출 연월일을 기재한 서류
- o 200만엔 이하의 해외송금 금액 등
- o 기부금으로 충당할 예정인 구체적인 사업내용

⑥ 기 타

기타 요건으로 인정 NPO법인은 항상 법령위반, 부정행위, 공익에 반하는 사실 등이 없어야 하고 인정 NPO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제출한 날을 포함한 사업연도 개시일에 있어서 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인정 NPO법인의 인정시에는 관할청으로부터 법령 등의 위반혐의가 없다는 취진의 증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⑦ 인정 NPO법인 선택의 장단점

인정 NPO법인 선택의 장점은 기부자에게 세제상 우대조치가 있기 때문에 기부를 모집하기가 일반 NPO법인보다 쉽다는 점이다. 또한 인정 NPO법인은 간주기부금제도가 인정되므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행하는 경우 법인세 등이 경감된다. 간주기부금제도란 세법상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으로부터 비수익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동일법인의 내부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에서 비수익사업으로의 기부금 처리가 가능하므로 외부로 지출한 기부금과 합산하여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을 말한다.

현실적으로 인정 NPO법인의 인정요건은 상당히 엄격하고 많은 일반 NPO법인에 있어서 그 요건을 만족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므로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로 신뢰도가 상승될 수 있다.

인정 NPO법인 선택의 단점은 인정 NPO법인이 일반 NPO법인에 비해 운영상의 관리비용·사무비용이 증대한다는 점이다. 인정의 유효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정의 연장이나 갱신이라는 절차가 없고 인정을 계속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운영상의 관리비용·사무비용의 발생·증대뿐만 아니라 20만엔 이상의 기부자(임원 및 사원 또는 그 친족 등에 한해)의 이름 또는 명칭, 임원·종업원(사원 및 임원 또는 사원의 친족에 한해) 개인의 보수액이 열람대상이 된다는 단점도 있다. 또한 public support 테스트 요건을 계속 만족하려면 특정의 단체 등으로부터 거액의 기부를 받는 것이 어렵다.

(4) 공익법인

민법에 의하면,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은 주무관청에 있다. 공익법인의 목적 또는 사업이 복수의 주무관청에 관련되어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각각의 주무관청이 공동으로 지도 감독한다.

1) 공익법인의 회계처리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공익법인의 건전한 운영을 목적으로 공익법인의 회계에 대해 기준을 정한 것으로 1977년 3월에 公益法人監督事務連絡協議會에서 결정하고 1978년 4월 1일 이후 가능한 신속하게 적용하게 되었다. 이후 상기 기준의 운용 결과에 따라 1985년 9월에는 동 협회회의 역할을 이어받은 공익법인지도감독연락협의회에서 기준을 개정하였다. 2004년 10월 14일에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재검토에 대하여」를 발표하여 새로운 공익법인회계기준을 2006년 4월 1일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지도감독기준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원칙적으로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적절한 회계처리를 행하여야 한다. 실제 회계처리 상황은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완전히 적용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75.7%(18,838개 법인), 수익사업을 행하고 그 부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므로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일부만 적용하는 경우가 15.9%(3,963개 법인), 기업회계를 적용하는 경우가 2.5%(621개 법인) 기타가 5.9%(1,417개 법인)이다.

< 표 21 > 회계기준의 적용상황별 법인 수

(단위: 개, %)

		법인수	회계기준의 적용상황별 법인 수			
			공익법인회계 기준을 완전 적용	공익법인회계 기준을 일부 적용	기업회계 기준 적용	기타
국가 소관	사 단	3,683	3,286	342	27	28
	재 단	3,093	2,795	248	27	23
도도 부현	사 단	8,985	6,282	1,825	225	653

		법인수	회계기준의 적용상황별 법인 수			
			공익법인회계 기준을 완전 적용	공익법인회계 기준을 일부 적용	기업회계 기준 적용	기타
소관	재단	9,263	6,594	1,563	343	768
합계		24,893	18,838	3,963	621	1,471
		비율	75.7	15.9	2.5	5.9
전년도 합계		25,263	18,899	4,151	668	1,545
		비율	74.8	16.4	2.6	6.1

자료: 일본 총무성, 『평성 19년판 공익법인백서』, 2007.

공익법인의 회계처리에 대한 공인회계사, 세리사의 참여 현황을 보면, 참여하지 않는 법인이 49.1%(12,234), 공인회계사감독을 받은 법인이 12.6%(3,135개), 회계·경리 업무를 의뢰하고 있는 법인이 11.8%(2,934개), 지도·상담을 받는 법인이 26.2%(6,511개), 임원으로 있는 법인이 11.5%(2,873개)이다.

2) 공익법인의 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 공익법인 감독체제의 충실

공익법인 운영 및 지도감독의 바람직한 방향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상황에 따라, 정부는 공익법인에 대한 엄정한 지도감독을 철저히하기 위해 지도감독의 책임체제를 확립함과 동시에 지도감독의 전제가 되는 법인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立入検査¹⁴⁴⁾에 충실하기 위하여 2001년 2월 9일 공익법인 등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관계각료회의간사회에서 「공익법인의 지도감독체제의 충실 등에 대하여」를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44) 행정기관의 직원이 행정법규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사무소·영업소·공장·창고 등에 가서 업무상황 또는 장부서류·설비 기타 물건을 검사하는 것.

제 4 장 주요국의 입법례

- 지도감독의 책임체제 확립
 - 각 府省에 총괄공익법인지도감독관 및 연락회의를 설치
- 立入檢査의 충실
 - 立入檢査를 적어도 3년에 1회 실시
 - 立入檢査 실시계획을 작성
 - 확실하고 체계적인 검사를 하기 위한 검사표(check list) 작성
 - 立入檢査의 실시 결과를 발표
-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의 요청
 - 각 府省은 자산액 100억엔 이상 및 부채액 50억엔 이상, 또는 수지결산액 10억엔 이상의 소관 공익법인에 대해 공익회계사에 의한 감사를 받도록 요청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3년간 각 府省이 立入檢査를 실시한 소관 법인 수는 7,100개 법인(국가소관 법인 수 전체(7,242개)의 98%)이고 국가 소관 법인에 대해서는 3년 동안 모든 법인이 적어도 1회의 立入檢査가 실시되었다. 또한 2005년 결산 기준으로 외부감사의 요청의 대상이 된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 소관 법인은 1,127개 법인이고 이 중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은 국가 소관 법인이 832개 법인이다. 각 도도부현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새로운 공익법인제도에서는 대규모일반사단법인 및 대규모일반재단법인(부채액 200억엔 이상)에 대해서 회계감사인의 설치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② 인터넷에 의한 공익법인의 공개

2001년 7월 23일에 개최된 행정개혁추진본부에서 내각총리대신의 지시에 따라, 공익법인의 공개 충실에 의한 업무운영의 투명화·적정화를 도모하면서 「행정개혁대강」등을 기초로 공익법인개혁의 추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동년 8월 28일, 공익법인 등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關係閣僚會議幹事會에서 「인터넷에 의한 공익법인의 공개에 대하여」를 합의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 소관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각 府省이 소관 공익법인에 대해 가능한 2001년 중에 업무·재무 등에 관한 자료를 인터넷에 의해 공개하도록 요청한다. 그리고 국가로부터 위탁·추천을 받은 공익법인에 관해서는 각 府省이 2001년 말까지 소관 공익법인 중 국가로부터 사무·사업의 위탁·추천 등을 받은 법인 또는 보조금·위탁비 등의 교부를 받은 법인에 대하여 업무·재무 등에 관한 자료 등을 각 府省의 홈페이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보 공개 상황의 관리 및 공익법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한다.

현재 각 府省은 상기 합의내용을 기초로 소관 공익법인의 일람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총무성에는 전국 공익법인의 명칭·주소 등의 기초적인 정보가 검색 가능한 「공익법인 데이터베이스」를 동일한 省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또한 각 도도부현에 대해서는 본 합의와 동일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고 있어 각 도도부현에서도 국가와 동일한 조치가 추진되고 있다.

제 4 절 영 국

1. 개 요

영국의 경우 기부받는 단체로 Charities Commission과 OSCR에 등록된 자선단체가 있다.

기부방법은 개인과 법인의 경우 Gift Aid, 부동산·지분·증권의 기부가 있고 개인의 경우 이에 더하여 Payroll Giving 방법이 있다.

< 표 22 > 기부금에 관한 개인과 법인 관련 세제개요

기부 주체	기부받는 단체	기부방법	조세혜택
개 인	Charities Commission와 OSCR에 등록된 Charities(Charities의 성립요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고 판례로서 발전)	Gift Aid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은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에서 차감
		부동산, 지분, 증권의 기부	시장가격과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에 기부로 인해 얻은 이득을 차감한 금액을 Gift Aid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
		Payroll Giving	급여에서 일정한 금액을 직접 기부금으로 차감
법 인		Gift Aid	회사의 과세대상소득에서 기부금액을 차감
		부동산, 지분, 증권의 기부	시장가격과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에 기부로 인해 얻은 이득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소득에서 차감

2. 기부금 대상단체

관련 세법은 조세목적상의 자선단체가 되기 위해서 네 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 자선목적으로만 설립되었을 것
- 관할요건을 충족시킬 것
- 등록요건을 충족시킬 것
- 운영요건을 충족시킬 것

자선목적으로만 설립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모든 수입과 자산이 정관이나 관련 서류에서 자선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명시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관할요건의 충족을 위해서는 자선행위와 관련하여 관할 법원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등록요건은 단체가 등록을 받드시 함으로써 자선활동과 관련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England와 Wales의 경우 CC(Charity Commission)나, OSCR(The Office of the Scottish Charity Regulator)이 있다. Northern Ireland에 대해서는 CCNI(The Charity Commission Northern Ireland)가 관할하고 있다. CC, OSCR, CCNI 등은 자선단체로부터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자선단체의 인정여부를 판단한다. 등록된 자선단체들은 매년 활동내역이나 재정사항 등을 CC와 OSCR 등에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운영요건이란 단체의 통제와 운영의 권한을 가지는 자의 적절성에 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¹⁴⁵⁾

아마추어 스포츠 클럽(Community Amateur Sports Clubs)으로 등록된 스포츠 클럽은 2002년부터 여러 세금경감조차와 자선단체와 유사한 조세혜택을 받고 있다. 예컨대, 스포츠 클럽에 대한 개인의 Gift Aid의 경우 자선단체에 한 기부금과 동일한 혜택이 인정된다.

3. 개인에 의한 기부금

개인의 기부금에 관해 주어지는 조세혜택은 Gift Aid, Payroll Giving, 부동산·지분·증권의 증여(Gift of Land, Buildings, Shares and Security)로 구분한다.

Gift Aid 제도는 1990년도에 도입되었는데, 2000년을 기점으로 구분되어진다. 당해 제도는 개인이나 회사들로 하여금 현금으로 기부한 경우 부여하는 세제상의 혜택이다. 원래 세제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금액을 초과하여야 했으나, 현행법은 이러한 최소금액 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

145) 'fit and proper person'이라고 불린다.

세무상의 처리를 살펴보면 우선, 자선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기본세율(basic rate)로 세금을 차감한 것으로 처리되고, 기부받은 자선단체들은 국세청에 Gift Aid Payment를 청구하는 독특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의 경우 소득공제 시에 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부를 받은 단체는 고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한 Gift Aid Payment를 청구하여야 한다.

예컨대,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가 1,000파운드를 기부한 경우, 자선단체는 기부금의 기본세율인 20%의 250파운드($20/80 \times 1,000$)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선단체에 전달된 총기부금액은 1,250($1,000 + 250$)파운드가 된다. 만약 고세율의 납세자가 같은 금액을 기부하였다면, 자선단체는 기본세율(20%)인 250파운드를 추가로 국세청에 청구할 수 있으며, 고세율의 기부자는 세금반환(tax relief)을 기부금에 대한 고세율인 40%와 20%의 차이인 20%(250파운드)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기부자의 총비용은 750파운드($1,000 - 250$)가 되는 셈이다.

Finance Act 2000에 의한 개정으로 인해 종전에 있었던 공제한도(250파운드)가 폐지되었다. 따라서 Gift Aid에 대한 공제한도는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다.

2000년 개정 전에는 영국 거주자에 의한 기부만이 Gift Aid에 해당할 수 있었으나, 개정을 통해 그 범위가 일부 확대되었다. 예컨대, Crown Servants인 개인 또는 UK 군대 멤버인 개인이 기부한 경우, 비거주자가 벌어들이는 소득 또는 자본이득에 대해 영국 세법에 의해 과세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거주자에 의한 기부의 경우 Gift Aid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기부는 현금, 수표, 신용카드, 직불카드(debit card), 우편환 등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외환도 가능하며, 자선단체가 클레임을 청구하는 경우 외환이 기부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 기부

는 실제금액을 지불하여야 하고 채권 포기나 보증에 관한 권리 등을 포기하는 것으로는 기부가 될 수 없다.

기부금이 Gift Aid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기부자는 자선단체에게 신고서(Gift Aid declaration)를 수령하여야 한다. 신고서를 받지 못할 경우 Gift Aid에 의한 소득공제제도를 적용받지 못한다. Gift Aid의 신고서에는 기부자의 이름과 주소, 자선단체의 이름, 기부내용, 기부내용이 Gift Aid로 인정되는 확정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서비스나 권리, 기타 상품 등에 대한 대가로서의 지불은 기부가 될 수 없고, 기부세제 혜택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의 경우들은 Gift Aid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 특정인에 대한 학비에 대한 지불
- 책이나 음식 등의 구입에 대한 비용, 마사회 등에서 구입 비용
- 행사 등에 대한 입장료
- 복권이나 복권식 판매(Raffle)에 대한 구입비용, Raffle 티켓 구입 비용은 기부가 아니지만, Raffle 행사 입장권은 기부로 인정. 상을 탈 가능성이 적고, 기대가 낮다는 것은 기부금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항이 아니며, 상의 가치가 낮다는 것 등도 기부여부와 무관

Payroll Giving이란, 급여로부터 자선단체에 직접 기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연금소득자 역시 이러한 Payroll Giving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¹⁴⁶⁾

고용주가 Payroll Giving Scheme을 운영하는 경우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기부금을 지불하고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의 형태로 조세감면을 받게 된다. 조세감면은 기부자의 최고세율을 기준으로 한다.

146) 이하에서는 편의상 급여소득자로 표현하기로 한다.

종업원이 고용주에게 급여에서 기부금을 차감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경우 고용주는 이 금액을 급여에서 차감하며, 해당 기부금은 국세청에서 승인한 Agency Charities에 보내지게 된다.

Agency Charities는 이렇게 모은 기부금을 자선단체에 전달하게 된다. Gift Aid와 달리 자선단체가 국세청에 repayment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다.

최소금액에 대한 규정은 입법당시부터 없었고, 최대금액에 대한 규정은 2000년 개정을 통해 삭제되었다.

기부금은 세금이 과세되기 전 급여 총액에서 차감되어진다. 따라서 해당 급여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의 세율로 공제되어지는 결과와 동일하다. 예컨대, 기본세율(20%)을 적용받는 납세자의 경우 납세자가 매달 10파운드를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경우 납세자는 실제로 2파운드가 절감되어(10파운드 × 20%) 결과적으로 8파운드를 기부금으로 납부한 셈이 된다.

Agency Charities는 “Charitable Deduction Regulations 1986” 시행규칙을 실행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의하여 승인된 기관이다. 영국 국세청의 산하기관인 IR Charities에서는 Agency Charities 신청에 대한 승인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Agency Charities와 고용주는 시행규칙에서 요건으로 하는 내용들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부단체는 기부자에게 어떠한 혜택도 반대급부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부동산·지분·증권의 증여는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0년 4월 6일 이후 인정되기 시작한 방법이다.¹⁴⁷⁾

당해 제도는 기부자가 무상으로 증여하거나 시장가치(market value)보다 적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영국의 Charity에 요건을 충족하는

147) 단, 부동산에 대해서는 2002년 4월 6일에 도입되었다.

투자를 할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란 다음을 의미한다.

- 증권거래소에 상당된 지분 또는 증권
- 영국에서 지정된 시장에서 거래되어지는 지분 또는 증권. 현재 지정된 시장은 런던증권거래소의 Alternative Investment Market(AIM)와 PLUS임.
- Authorised Unit Trust(AUT)
- UK Open-Ended Investment Company(OEIC)에 대한 지분 등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이름과 증여받는 자선단체의 이름을 명시한 주식이전서식(stock transfer form)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증여의 경우 소득세에 대한 조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선단체로부터 증여에 대한 증명서를 발부받아야 한다. 당해 증명서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설명과 처분일자, 자선단체가 해당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하였다는 확인설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모든 권리 일체를 자선단체에 양도하여야 하므로, 예컨대 자선단체에 건물을 증여하면서 증여자가 당해 건물에 계속 거주할 수 없다.

< 사례 > 기부자가 5,000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를 자선단체에 기부하였다. 기부 당시 가치는 각 주당 10파운드였고 기부자는 브로커 수수료로 50파운드를 지출하였으며, 감사의 표시로 자선단체는 기부자에게 50파운드 가치의 책을 증정하였다.¹⁴⁸⁾

이 경우 기부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은 50,000이 된다(주식가치 50,000 + 브로커 수수료 50 - 받은 혜택 50).

148) 사례는 손원익·박대규, “한국의 민간기부에 관한 연구-규모, 구조와 특징, 관련 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8. 2, 64면에서 발췌

4. 법인에 의한 기부금

법인이 기부단체에 요건을 충족하는 기부를 하였을 경우 해당 기부금에 대해 공제를 할 수 있다.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의 종류로, Gift Aid와 부동산·지분·증권의 증여, 법인의 각종 설비, 재고 및 용역 기부 등이 있다.

법인이 자선단체에 대해 기부한 금액 전체는 법인세를 계산할 때 사업수익(total profits of business)에서 공제되어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법인이 Gift Aid를 자선단체에 기부한 경우, 기부금액은 과세소득(charge on income)으로 일단 처리된다. 법인은 ‘법인세자진평가서’(its corporation tax self assessment ; CTSA)에서 해당 기부액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한다. 이 때 기부금액이 과세소득을 초과할 때 과세소득은 0으로 한다. 법인은 회계기록을 남겨야 한다.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Gift Aid를 할 수 있으나, 영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영국 세법에 의해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한 Gift Aid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인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기부법인이나 이해관계인(connected person)¹⁴⁹⁾이 자선단체로부터 받은 혜택(benefit)이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¹⁵⁰⁾

149) 이해관계인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① 기부자의 배우자, 동성애자(civil partner), ② 자녀, 부모, 조부모와 같은 직계가족, ③ 배우자의 직계가족, ④ 기부자의 지배(control)를 받는 법인이나 위의 이해관계인들의 지배를 받는 법인
150) 구체적인 한도는 아래와 같이 기부금액의 일정한 구간에 따라 정해져 있다.

기부금액(Amount of donation)	혜택가치의 한도(Benefit value limit)
0파운드 ~ 100파운드 이하	기부금액의 25%
101파운드 ~ 1,000파운드 이하	25파운드

- 다시 되돌려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기부
- 법인이나 이해관계인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혜택을 받는 경우,
- 자선단체가 해당 법인이나 이해관계인에게서 자산을 구매하는 것이 기부의 조건인 경우 등
- 자선단체에 의한 기부

부동산과 지분, 증권의 증여에 대한 조세혜택은 개인의 경우와 같이 기부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0년에 도입된 바 있다. 시장가격과 부대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기부로 인해 획득하는 혜택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수익에서 차감한다.

한편, 각종 설비(equipment)나 재고(trading stock), 그리고 임시적으로 종업원들을 자선단체를 위하여 근무하도록 용역을 기부하는 경우에도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각종 설비나 재고를 기부하는 경우 사업을 통하여 얻은 과세수익(taxable profit)에서 법인이 기부한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과세수익에서 차감되어 보다 적은 세금을 내게 된다. 설비의 경우 설비의 가치만큼 자본이득공제(capital allowance)가 인정되어 조세혜택을 법인이 받을 수 있다. 사업상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재고자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가격을 사업상 과세이익에서 제외한다. 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용역을 자선단체에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의 급여와 기타 비용을 들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고용자가 자발적으로 근로시간 이외 자선단체에 용역을 기부하는 경우에도 고용주는 근로자의 급여와 보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기부금액(Amount of donation)		혜택가치의 한도(Benefit value limit)
1,001파운드 이상	2007년 4월 6일 ~ 2011년 4월 5일 사이에 기부한 경우	기부금액의 5%(500파운드가 한도)
	2011년 4월 6일 이후 기부한 경우	기부금액의 5%(2,500파운드가 한도)

제 5 절 프랑스

1. 개인에 의한 기부¹⁵¹⁾

프랑스는 2003년 8월 1일 세법 개정으로 종전 공익성 기부금에 대하여 손금산입하던 방식에서 세액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개인이 공익단체(public utility organizations, associations of general interest), 종교단체에 기부한 경우 기부금액의 66%까지 세액공제할 수 있다. 이때 한도는 과세소득의 20%로 한다.

특정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의 경우 470유로까지는 7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소득의 20%까지 66%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향후 5년간 이월공제한다.

2. 법인에 의한 기부

법인의 경우 공익협회, 공익재단 등에 기부한 경우 기부액의 60%까지 세액공제할 수 있다. 이 때 한도는 매출액의 0.5%로 한다.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개인의 기부와 마찬가지로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 표 23 >

기부주체	기부받는 단체	기부방법	조세혜택
개인	공익단체,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	기부액의 66%를 세액공제	과세소득의 20%

151) 손원의 · 이순태 · 박세경,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2010, 117-119면.

기부주체	기부받는 단체	기부방법	조세혜택
	특정자선단체에 대한 기부	1. 470유로까지는 기부액의 75% 세액공제 2. 470유로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기부액의 66%를 세액공제	470유로 초과금액의 경우 과세소득의 20%가 한도
법인	공익단체,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	기부액의 60%까지 세액공제	매출의 0.5%

* 출처: U.S. International Granting, 2006.

제 6 절 주요국의 세제비교

지금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캐나다, 일본, 영국, 프랑스의 기부금 관련 세제를 살펴보았다.

국가별로 조세혜택을 인정하고 있는 기부금 수령단체들의 범위는 각기 다르나, 국가 또는 공공기관과 종교, 복지, 문화, 환경, 교육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부금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방식을 통해 부여될 수 있는데, 프랑스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소득공제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소득공제방식을 채용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공제한도를 설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국이 예외적으로 공제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경제적 상황, 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기부문화의 정착 정도, 비영리단체의 성격 등이 국가별로 다르므로, 단순히 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공제단체의 범위, 공제범위 등을 비교하여 그 우위를 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고찰범위에 속한 국가들은 모두 법인에 의한 기부에 대해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대개의 국가들은 손금산입한도에 있어 개인에 비해 한도율을 적게 설정하고 있다. 법인기부에 대하여는 주주의 권익침해 또는 기부의 비순수성 등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주요국의 법인에 관한 현행법 규정이 그러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져보면 주주의 권익침해라는 비판도 이론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직까지는 개인에 의한 기부와 법인에 의한 기부에 대해 큰 차별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기부금에 대해 명확한 개념적 정의를 두고 있는 국가는 찾기 어렵다. 하지만 실제적인 세제상 혜택을 주기 위해 수령단체를 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미국, 캐나다, 영국과 같이 일반적인 요건을 규정하는 포괄주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국가가 있는 반면,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이 해당 단체들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있는 열거주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국가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민간에서의 공익적 활동은 다양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열거주의를 취해서는 그 속에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현행 법규정의 태도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제 5 장 기부금 조세지원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 1 절 논의의 기초

1. 입법형식의 측면

(1)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

기부금 공제는 이미 그 자체로 과세요건에 관한 문제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이라는 측면도 있으나 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 역시 조세법률주의의 적용을 받는다.¹⁵²⁾

(2) 포괄위임금지

조세법률주의는 행정입법에 의한 규율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

152)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의 충족을 위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에게 반대급부없이 일방적·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헌법은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주의 및 법치주의의 원리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헌법 제38조·제59조)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즉,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의 근거 없이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현재 1996.06.26, 93헌바2 ; 조세란 공공경비를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 상호간에는 조세의 전가관계가 있으므로 특정인이나 특정계층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를 하는 것은 특정한 납세자군이 조세의 부담을 다른 납세자군의 부담으로 떠맡기는 것에 지나지 않아 조세감면의 근거 역시 법률로 정하여야만 하는 것이 국민주권주의나 법치주의의 원리에 부응하는 것이(다). 현재 1996.06.26, 93헌바2

지정기부금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공익성에 관한 대강의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헌법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입법에의 위임을 허용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상황 변화에 따른 적절하고 공정한 과세의 실현 즉, 조세평등주의와의 조화에 있는바, 기부금 공제에 관한 행정입법의 내용은 더더욱 평등의 실현에 맞추어져야 한다.

참고로 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행정권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조세의 면제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적합하지도 아니하므로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시 대응하여야 할 필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함이 허용되는 것이고, 헌법 제75조도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개별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¹⁵³⁾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등의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153) 헌재 1996.06.26, 93헌바2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배제함으로써 국민생활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에 있는 것으로 그 핵심적인 내용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이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를 지나치게 철저하게 시행한다면 복잡다양하고도 끊임없이 변천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하여 적확하게 과세대상을 포착하고 적정하게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어려워 담세력에 응한 공평과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조세평등주의와의 조화를 위하여 경제현실에 응하여 공정한 과세를 할 수 있게 하고 탈법적인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중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적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¹⁵⁴⁾

한편,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그 규율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특히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반면에,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될 수도 있을 것이며, 그 밖에 이 사건과 같은 조세감면규정의 경우에는 법률의 구체적인 근거없이 대통령령에서 감면대상, 감면비율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감면요건 등을 규정하였는가 여부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¹⁵⁵⁾

154) 헌재 2006.06.29, 2004헌바8

155) 헌재 1996.06.26, 93헌바2

2. 입법내용의 측면 : 실질적 법치주의, 평등의 원칙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적법절차를 요구하는 법치주의를 의미하며, 헌법 제38조, 제59조가 선언하는 조세법률주의도 이러한 실질적 적법절차가 지배하는 법치주의를 뜻하므로, 비록 과세요건이 법률로 명확히 정해진 것일지라도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고 조세법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 요구되는 제 원칙에 합치되어야 한다.¹⁵⁶⁾

헌법은 그 기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차원에서 조세의 부과징수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률적 근거를 필요로 하게 하고, 아울러 조세관계 법률의 내용이 형평의 원칙 내지 평등의 원칙에 합당하여 조세부담이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 대상자로서의 국민이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평등하게 처우되도록 하고 있다.¹⁵⁷⁾

차별이 문제되는 유형으로 공제여부와 평등, 공제의 방식 또는 공제의 수준과 평등, 공제를 위한 요건과 평등을 들 수 있다.

기부자에 따른 차별은 기부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여부, 공공기관(각 기관별), 학교(각 학교별), 종교단체(각 종교 또는 단체별), 사회복지단체(각 유형 또는 단체별) 등은 기부대상에 따른 차별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별들은 기부금 소득공제제도가 조세 또는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엄격한 심사가 요구된다고도 할 수 있으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혜택을 부여한다는 측면이 보다 강조

156) 헌재 1995.07.21, 92헌바27

157) 헌재 1990.09.03, 89헌가95

되며, 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라 유연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심사의 기준은 합리성 심사 내지 자의금지심사가 적용될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인지 여부는 무엇보다 공제의 취지인 “공익성”의 유무와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이러한 공익성의 판단은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컨대, 기부자의 경우에는 기부자가 가지는 공공적 지위에 따라 그 형식적 공익성과 실질적 공익성이 반영되어야 하며, 기부의 동기 내지 취지, 기부자와 기부대상간의 관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기부대상의 경우에도 기부대상자가 가지는 공공적 지위에 따라 그 형식적 공익성과 함께 실질적 공익성이 반영되어야 하며, 이 때 실질적 공익성은 기부대상자의 사업 내용은 물론 실제로 공제혜택을 부여한 당해 기부금의 사용이 공익목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고려되어야 한다.

기부금 소득공제제도는 경제에 관한 국가의 조정이라고 할 수 있고, 사회발전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넓은 입법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헌법은 소득공제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의 개별규정이 분명한 효력의 우열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지만, 기부금 소득공제는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그리고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념적 측면 또는 규정형식의 측면에서 헌법의 개별규정이 가지는 국가에 대한 구속력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기부대상 선정에서 차별의 합리적인 기준을 헌법에서 직접 찾아보려는 시도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일반론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① 헌법이 특별히 단체의 결성과 활동의 자유를 포함하는 내용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기본권 규정으로 해석되는 경우(전자-정당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 노동3권, 쾌

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후자-소비자의 권리, 보건권 등)의 관련 단체, ② 헌법이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는 목적(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 여자 및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 재해예방, 환경보전,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등)에 부합하는 단체에 대한 기부금 소득공제에 우선순위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①과 ②의 경우 굳이 우선순위를 정리하자면, 이는 기본권 규정과 국가목표규정 내지 입법위임규정 사이의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는바, ①에 우선순위를 인정할 수 있다.

둘째, 헌법이 특별히 정치적 중립이나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공무원, 국군, 국교부인과 정교분리,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금지, 사회적 특수계급의 금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여자의 근로 등) 관련 단체에 대한 기부금 소득공제에서도 평등이 보다 엄격하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헌법이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이유와 정도에 따라 기부금 소득공제는 물론 기부 자체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 기부금 사용의 목적 내지 사용내역에 대한 통제를 전제로 소득공제가 인정되어야 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개별적 측면에서 고려가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관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공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며, 기부금에 대한 관리도 직접적으로 공적인 통제하에 놓인다는 점에서 기부대상에 적극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각 기관의 성격과 공적 통제의 정도에 따라 평등과 합리적인 차별이 반영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공무원 내지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특히, 기부가 국회의원 등에 대한 입법로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둘째, 헌법이 정당의 자유를 매우 강하게 보장하고 있고,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의 헌법적 근거까지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도 기부 대상에 적극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정당 설립을 준비하는 단체도 포함시킬 것인지,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따른 차별이 가능한지 등이 논의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기부 역시 로비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이다. 헌법은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은 다른 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취급되며 다만,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그 자금을 사용한다. 이처럼 노동조합이 가지는 공익성은 한계가 있고, 노동조합에게는 헌법상 ‘자주성’이 요구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기본권인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자금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 또는 그 가족 등에게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종교단체에 관한 사항이다.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은 특별히 국교의 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 소득공제는 평등의 원칙이 매우 강하게 요구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제 2 절 공익성 기준에 대한 법적 정합성

1. 공익의 일반적 개념

공익(public benefit)이란, 사회 전체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공익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판단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시대적 환경,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그 뜻이 달라질 수 있는 까닭이다. 다른 사안이기는 하나, 최근 헌법재판소가

공익의 개념의 구체성의 한계에 관해 판시한 결정¹⁵⁸⁾이 있어 참고할 가치가 있다. 한편, 공익이 아닌 반대개념으로서의 사익은 특정한 개인의 이익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접근에 따를 경우 공과 사를 어떻게 구분할지에 대한 어려움도 있다. 이처럼 공익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내리기란 쉽지 않다.

2. 세법상 공익의 개념

기부금 공제와 관련한 법령에서의 공익의 개념은 어떠한가? 우선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은 관련 조문에서 직접적으로 관련 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결국 공익이 무엇인지 법을 통해 그 개념을 규명하는 것은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현행법 체계에서 공익의 개념은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등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행법상 태도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공익성 판단에 있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는 각목의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영리법인은 무엇인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법인으로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함)

158) 2010. 12. 28. 2008헌바157, 2009헌바88(병합)

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종합해보자면, 현행 법인세법은 비영리법인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해 기부금 공제와 관련하여 공익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공제대상 기부금의 범위의 상당부분을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까닭에 소득세법과 관련하여서는 소득세법상의 독자적인 규정만을 살펴보도록 한다. 지정기부금에 대해서 노동조합이나 교원 단체 등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하는 회비, 비영리법인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법인세법 시행령상 지정기부금 대상 범위에 추가하고 있다. 특히 비영리법인단체 지원법에 관한 요건 중의 하나로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으로 규정¹⁵⁹⁾하고 있어 공익이라는 용어를 되풀이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세목에서의 공익은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가? 예컨대, 부가가치세법에서 공익의 개념이 규정되고 있다면 이를 준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법인세법 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에서도 공익단체, 공익사업, 비영리사업자 등 공익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다.

우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관한 규정에서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공익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공익법인으

159)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다목.

로, 종교사업, 교육사업, 사회복지사업,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지금까지 열거된 사업 중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과 기부금단체를 제외한 유사한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¹⁶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단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법인세법의 공익성 개념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그 범위가 반드시 같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소득세법도 마찬가지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법의 경우 면세의 범위에 관한 규정¹⁶¹⁾에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고 하여 공익에 관해 조문에서 언급하고 있다. 대통령령은 앞의 각 위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고 있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

16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16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제19호.

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1의2.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정한다)
2.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한한다)의 경내지 및 경내지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3. 공익을 목적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 또는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음식 및 숙박용역에 한한다)
4.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용역
5.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른 비영리교육재단이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설립·경영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학교시설 이용 등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된 용역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은 법에서 정하는 공익단체를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로 한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의 개념을 준용하고 있다. 물론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익사업

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는 공익단체로 볼 수 있다.¹⁶²⁾

부가가치세법상 공익의 개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법인세법상 공익에 관한 규정 일부를 준용하면서도 그 범위에 있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해보자면, 법인세법을 비롯한 다른 세목 역시 공익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내리지 않다. 다만, 다른 세목들의 공익을 수행하는 경우라고 규정되는 사항들을 일부 준용함으로써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을 앞에서 확인하였다.

3.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익의 반대개념은 사익인데, 사익은 특정 개인의 이익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과 사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공익과 사익의 구분은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공익이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정의내리기 힘들다는 점은 공익성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공익사업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 단체를 열거하고 있는 현행법의 태도를 합리할 수 있는 논거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열거주의는 필연적으로 기부금 공제대상 단체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세법의 개정을 필요로 한다.

입법기술상 한 형태로서의 열거주의가 가지는 장·단점은 기부금 공제제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공익성을 가지는 단체가 법에 빠짐없이 규정되지 않는 이상 비슷한 수준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중 법에 규정된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정립되지 않은 공익의 개념은 조세혜택의 차등적 부여에 대한 현행 규정의 근거를 약화시킨다. 어떤 기부금은 세제상 혜택을 전혀

16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받지 못하고, 어떤 기부금은 100%의 한도를, 또 다른 기부금은 50%의 한도를 적용받는데, 그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범위를 넓혀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의 개념은 다른 것인지에 대한 의문 역시 제기될 수 있다. 법으로 보호받거나 장려되어야 할 공익이라는 것이 각 세목마다 달라야할 구체적인 논거 역시 모호하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공익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입법론적 측면에서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기부금 공제단체가 아니라고 볼 이유를 생각해내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논의와 별개로 현행법에서 열거되거나 관련부처의 장관에 의해 지정되는 기부금 공제대상 단체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고찰 필요성도 있다.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의 하나로 노동조합, 교원단체,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하는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이들 단체들이 공익적 활동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가? 이러한 단체들은 특정인들의 사익을 대변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공익성과는 무관하거나 설사 있더라도 그 상관성은 현저히 낮다고 봄이 타당하다.

공익성과 무관한 단체들이 현행 법령에서 기부금 공제대상단체로 열거되는 경우는 적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할 것이다.

다른 예로서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되고 있다. 요건 중의 하나로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관한 정확한 판단 내지 선별기준이 없어 결국 관련부처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상당하다.

현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2011년 9월 30일 현재 1841개 단체가 있다. 해당 단체들을 살펴보면, 앞에서 예로 든 것과 마찬가지로 공익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해석하거나 무관한 경우를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한편, 소득세법상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2011년 6월 30일 공고 기준으로 40개가 공고되고 있는데, 당해 단체들은 개인기부금에 한해 공제가 허용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에 비해 개인기부금의 확대를 꾀하는 입법조치로 이해하더라도 이러한 단체들이 법인 기부금 공제대상단체에 포함되지 않는 타당한 이유를 찾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였을 때 공익의 개념을 법에 담는 것보다 기부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단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법에 공제가능한 기부금 단체들의 요건을 규정하는 미국의 내국세입법 방식이 바람직한 대안 중의 하나이다. 기부금공제 단체로서 인정할 수 없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이나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결국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정부나 국회의 자의적인 개입이나 통제를 방지할 수 있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기부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제 3 절 기부금의 재분류 문제

1. 문제점

법인에 대한 기부금과 관련하여 최근까지 세 가지 종류의 기부금이 있었고, 개인의 경우 네 가지가 있었으나, 2011.7.1. 이후 지출분부터는 한 가지씩을 줄여 법인은 두 종류, 개인의 경우 세 종류의 기부금의 종류가 존재한다.

물론 이는 지속적으로 학계나 관련 단체에서 지나치게 기부금의 종류가 많음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그 구분에 대한 타당성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종류의 다과를 떠나 분류 자체가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이나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단체이기만 한다면 기부받은 재산 등의 실제 사용처와 관계없이 법정이나 지정기부금의 분류를 적용받는다. 이러한 방식은 기부 받은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평가는 배제한 채 기부 받은 단체가 법에서 어떻게 분류되는지에 따라 공제혜택을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예컨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단체가 실제로 공익목적사업에 재산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세제상의 혜택을 받게 된다. 결국 이는 국가가 이러한 행위를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른 예로 법정기부금단체와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하였을 경우 소득공제의 한도에 차등을 주는 것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단체가 보다 큰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리라는 전제에 따른 것인데, 실제로 지정기부금 해당 단체가 법정기부금 해당 단체보다 공익적 사업을 보다 많이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이 역시 앞의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전술한 기부금공제 단체가 법이나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해 구체적으로 지정되는 현행 법체계를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지정단체로의 지정에 있어 발생한 형평성 문제는 이후 실제 사용처를 고려하지 않은 세제상의 혜택부여로 인해 더욱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한편, 비교법적 측면에서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소득공제의 한도의 제한이 개인에 의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차등을 주고 있지만,

법인에 의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수령단체가 어디인지에 관계없이 동일한 한도가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손금산입의 한도를 고려한 기부금의 차등적 지원은 적어도 법인에 의해 기부가 될 경우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개인에 의한 기부의 경우 소득공제의 제한에 차등이 있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처럼 열거주의에 따른 공제대상단체가 규정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미국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의 기부금공제방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며, 공제한도도 너무 적고, 이월공제 혜택 등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¹⁶³⁾ 이러한 비판도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기부금공제단체 지정의 문제점, 사용처를 고려하지 않는 혜택의 부여의 문제점이 선결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비판을 반영한 개선안은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2. 지출기준의 적용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을 적용받는 단체들이더라도 실제로 모집한 기부금을 어느 사업에 지출하는지 실제 사용비율을 따져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정기부금 단체이더라도 실제로 공익적 사업에 지출하는 비율이 어느 이상이 된다면, 법정기부금 단체에 적용되는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비용지출 행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기 어려운 공공재 공급에 쓰인 것이므로 이러한 공공재 공

163) 박훈·이상신, “개인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결과 발표”, 2009, 98면.

급에 쓰인 직접 사용된 비용에 기부하는 행위는 그 실질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출과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¹⁶⁴⁾

구체적인 입법단계에서는 여러 대안이 제시될 수 있다. 지정단계에서 법정기부금 단체와 지정기부금 단체로 임시적으로 분류되고, 실제 기부금의 사용단계에서 다시 공익적 활동을 재검증하여 최종적으로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반면, 지정단계에서의 분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 다만 일정 수준 이상 공익활동으로의 지출이 발생한 단체의 경우 선택에 의해 더 높은 세제상의 혜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 4 절 기부 방법 및 평가에 관한 문제점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기부행위가 금전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형태, 예컨대 주식이나 부동산 등 여러 형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우선 현행법에 따르면 인적용역의 제공은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적법한 기부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 기부문화의 확산은 고소득층에 의한 단위당 큰 금액의 기부를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저소득층의 단위당 적은 금액의 기부를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저소득층에 의한 기부는 금전이나 기타 재산을 통하기 보다는 인적용역의 제공을 통해 기부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 부모가 스스로 적은 금액이더라도 기부를 하는 습관을 자녀들에게 보이고,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에는 형태와 상관없이 공헌하려는 모습을 통해 오늘날 미국이 기부문화를 뿌리내릴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164) 박훈·이상신, “개인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결과 발표”, 2009, 100면.

기부문화 역시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단기 간에 목적하는 바를 성취할 수 없다. 따라서 세대 간의 물림을 통해 그 저변을 확대시킨다는 사고를 가지고 저소득층이 행하는 기부행위에 대해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면세점 이하의 계층에 대한 세제 혜택은 아무런 효과가 없으므로 입안 단계에서는 이 점을 분명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을 기부하는 경우 현행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비영리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은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 고유목적사업과 무관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부를 받을 당시 고유목적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하지만 세무관서의 판단을 받지 않는 이상 그러한 판단이 옳은지 명확하지 않다.

비상장주식을 기부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평가에 관한 사항이다. 상장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 해당 주식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이에 대해 이론적으로도 이견이 많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¹⁶⁵⁾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출연받은 주식,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 및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공익법인 외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발생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된다.

당해 규정은 기업이 공익재단 등을 통해 세금을 포탈하고 편법적으로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16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주식을 통한 기부를 저해하는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고 최근 이와 관련하여 큰 사회적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다.¹⁶⁶⁾

2. 개선방안

(1) 기부방식의 다양화

현금이나 전통적인 재산에 의한 기부만을 허용하는 현행법의 태도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물론 급속도로 진보하는 기술과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법인 그 보조를 완벽히 맞출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기부방식의 다양화를 위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기부문화가 확산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기부에 관한 여러 세제상의 혜택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다보니 비교법적 측면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기부방식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었고, 반드시 그렇다고 결론내릴 수는 없겠지만 기부의 정도도 미미한 편이었다.

따라서 이제는 여러 다각도의 측면에서 기부방법을 다각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나 기부를 받는 단체 간의 지속적인 정책협의를 통해 기부형태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여, 현실태와 향후 기부를 확산시키기 위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166) 대표적인 사례가 생활정보지인 수원교차로를 설립한 황필상씨의 장학재단 설립과 관련한 과세관청과의 다툼이다. 황필상씨는 자신이 설립한 수원교차로의 주식 90%와 현금을 기부해 수원장학재단을 2002년에 설립,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대학발전기금을 내는 등 실질적인 장학사업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2008년 관할 세무서는 황필상씨에게 증여세로 약 140억 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불복한 황필상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판결에서는 황씨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에서는 황씨가 패소하였다.

예컨대 미국의 자치단체 중에는 수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자를 상환하는 채권 즉 revenue bond를 발행하여 그 재원으로 문화센터 등 공공시설을 건축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¹⁶⁷⁾ 이 경우 수익이 잘 나지 않으므로 사실상 채권을 발행한 지방자치단체는 채권의 상환기간 동안 사실상 무이자로 자금을 빌리는 결과가 된다. 그럼에도 이러한 채권이 발행될 수 있고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채권의 발행자가 채권의 매수자에 대하여 무엇인가 대가를 받고 있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때문일 것이다.

현행법상 비영리법인이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대규모 펀드를 구성하여 그에 따른 배당금 등을 지급받아 공공시설을 건축할 수도 있다. revenue bond 사례는 이와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한편, Giving USA 2009를 통해 미국의 유증 현황을 살펴보면, 유증은 기부주체별 순위에서 세 번째를 차지하며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2008년 미국의 유증에 의한 기부는 226.6억 달러로 전체 기부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유증이 기부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¹⁶⁸⁾ 현재 우리나라 유증의 규모가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 않은데, 유증에 의한 기부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도 유증에 의한 기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재검토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공익신탁은 기부의 한 방법으로서 기부의 의사를 가지고 설립된 번복할 수 없는 신탁을 말하며, 공익잔여기부신탁(Charitable remainder trusts, CRT)과 공익우선신탁(Charitable lead trusts, CLT)이 존재한다.¹⁶⁹⁾

167) 박훈·이상신, 전계발표문, 2009, 92면. 당해 사례에 관한 후술하는 논의는 같은 문헌에서 인용하였다.

168) 손원익 외 2인,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2010, 134-135면

169) 손원익 외 2인, 전계보고서, 2010, 135-136면

공익잔여기부신탁은 기부자가 재산을 기부하고 생존하는 동안 기부한 신탁에서 나오는 재원을 통해서 생활을 유지한 후 남은 재산을 기부하는 것으로 우리의 사회환원기부신탁과 유사한 기부모델이다. 공익잔여기부신탁은 기부한 금액의 일부를 기부자에게 소득으로 제공하여 기부자가 생존하는 동안 유동성을 제공해줌으로써 생활을 유지시켜줄 뿐만 아니라 이후 기부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감면해 준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 제도의 특징은 신탁을 설정한 이후에는 이를 반복할 수 없다는 것이며, 은퇴에 대한 계획과 소득분배에 있어 유연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사회환원기부신탁의 경우 2008년 도입되었으나, 지금까지 활용실적이 미미한 상황이다.

공익우선신탁도 고정된 금액이나 신탁의 일정비율을 기부자에게 지불한다는 점에서 공익잔여기부신탁과 유사하나, 공익우선신탁은 신탁기간의 말미에 잔여분을 기부자 또는 상속자에게 되돌려 줄 수 있게 되어 있다.

공익신탁은 부유층의 기부를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립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장점이 있는 기부수단이다. 현재 법무부가 주관하여 도입을 위한 검토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기부의 확산을 위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기부자조언기금(donor advised fund)은 재단을 설립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으로 민간재단 설립시 발생하는 다양한 번거로움 없이 민간재단의 설립과 유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기부자조언기금은 가족이나 개인 및 법인 등이 가지고 있는 자산(현금, 뮤추얼 펀드, 채권, 거래 가능한 증권, 부동산 등) 자체를 기부할 수 있도록 형성된 기부의 한 형태로서 반복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으며, 기부자조언기금을 통해 기부를 하게 되면, 기금의 이름 및 자선단체에 기부되는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재단의 설립 및 운용에는 다양한 제약이 존재하지만, 기부자조언기금은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나 직접 민간재단을 설립하는 것보다 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민간재단을 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니며, 기부자는 각종 비용의 절감과 관리의 편리성 및 조세감면 등의 포괄적인 혜택을 받는다.

미국의 기부자조언기금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82,266개에서 2007년 112,539개로 약 49% 증가하였다. 2007년 기준 미국의 기부자조언기금은 2006년에 비해 12.2% 성장하였으며, 평균 규모는 225.875달러로 전년 대비 8% 성장하여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기부자조언기금은 설립 시 재단의 설립비용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고, 인적·법적 비용을 포함한 관리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기부자조언기금의 설립으로 각종 조세 및 재단에 대한 제재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공제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2) 주식기부에 제한의 완화

주식기부에 대한 현행 세제는 분명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공익법인을 통한 편법증여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선의에 의한 주식기부에 대해 현행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상당한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실질적인 공인재단의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선의의 기부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규정의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것은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주식을 통한 기부가 일어나기 전에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면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만큼 기부가 우리 사회에서 이례적인 것이기에 기부자의 입장에서 해당 규정을 검토할 생각도 가지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으로도 이해해볼 수도 있다.

규정의 입법취지, 만연한 조세포탈행태, 선의의 기부자의 불이익 등을 감안하였을 때 해당 규정을 폐지하는 주장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시기상조로 판단된다.

당해 규정으로 인해 선의의 기부자가 입는 피해도 중요하지만, 제도를 악용하여 세금을 회피하려는 일부 부류들의 행태도 간과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규정의 가치는 입법취지는 유지되도록 하되, 그 운영에 있어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컨대, 5%를 초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 과세의 요건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앞서 제안한 바와 같이 지출행위 단계에서 세제상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상속세법은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받은 주식 등에 대한 제한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독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독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6호에 의하면 공익적 활동을 하는 법인에 대한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다.

다만, 일본의 총무성에서 공익법인을 감독하기 위한 기준서에서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를 제한하고 있다.¹⁷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i. 운영재산의 관리운용은 해당 법인의 건전한 운영에 필요한 자산(현금, 건물 등)을 제외하고, 원본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고, 가능한 한 높은 운용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
- ii. 공익법인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영리기업의 주식 보유 등을 할 수 없음.

- ① 상기 i의 재산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경우. 다만, 공개시장을 통하는 등 포트폴리오를 통한 운용인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

170) 公益法人の設立許可及び指導監督基準

② 재단법인에 있어서 지분재산으로서 기부된 경우

- iii. ii에 의해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있어서도 해당 영리기업의 전체 주식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할 수 없음.
- iv. ii의 이유에 의하여 주식보유 등을 행하는 경우(전체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에 대해서는 매년 사업 연도의 사업보고서에 해당 영리기업의 개요를 기재

(3) 자원봉사 용역의 필요경비를 인정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적용역의 제공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적법한 기부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만이 자원봉사의 경우에 한정될 수는 없을 것이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면세점을 넘어서는 저소득층 내지 중간계층의 기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적용역에 의한 기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주요국의 입법례에서와 같이 인적용역에 대한 기부금공제의 전면적 확대는 실무상 여러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대표적으로 공제금액의 산정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예컨대, 하루에 20만원을 벌어들이는 자와 5만원을 버는 자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하루 동안 제공한 자원봉사를 전자의 경우 20만원으로 평가하고 후자의 노동력을 5만원으로 평가할 지, 아니면 다른 방법에 따를 것인지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한다. 만약 기회비용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자원봉사의 가치를 급여수준에 따라 달리 책정한다는 불만이 제기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은 자원봉사를 하는데 소요된 필요경비를 세제상 공제가능 기부금으로 삼는 것이다. 대가를 바라고 행하는 것이 기부행위가 일어나는 동기요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회비용을 모두 보상하지 않더라도 기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4) 이월공제한도의 조정

기부금공제는 정당기부금을 제외하고는 소득공제방식만을 인정하고 있다.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이월할 수 있는 기간은 법정기부금의 경우 1년, 지정기부금의 경우 5년이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 지출분에 대해서는 3년이 적용된다.

이러한 현행 규정은 고액을 기부하는 자에게 기부금공제 혜택이 제한적으로 부여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낳는다.

기부라는 것이 총액은 같아도 여러 해에 걸쳐 분산되어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한 해 또는 두 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조세의 중립성이라는 측면에서 위의 두 경우에 대해 세제상의 혜택을 달리 부여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으로는 단기에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기부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세부담 측면에서 불리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1년과 5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15년의 이월공제가 허용되고 있다.

제 5 절 기부자 의사를 반영한 제도 마련

1. 평 가

일반적으로 소액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행위를 통해 이전되는 금전이나 재산의 사용은 기부 이후 기부자가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이 통상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고액을 기부하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라는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현행법상 공익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그 범위 또한 굉장히 넓어 단순히 공익사업을 수행한다는 것만으로

기부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한편, 기부된 자산이 바람직하지 않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도 언론을 통해 자주 보고되고 있다. 물론 공익단체들의 운영과 관련하여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여러 장치가 있지만, 이와 별개로 기부를 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만으로 더욱 자신이 기부한 재산의 사용처를 확인하고자 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어떠한 용도로 사용을 원하는 기부자가 나타날 가능성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기부자의 의사와 적절히 조화될 필요성이 있다.

2. 개선방안

(1) 기부자의 수익자 지정권의 인정¹⁷¹⁾

기부가 있는 경우 기부재산에 대한 소유권 및 관리권이 수증단체에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기부자의 수익자 지정권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의 수익권을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우리 세제는 예컨대 사업자가 공원부지를 건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기부채납을 하고 일정기간 동안 관리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관리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있다. 결국입법정책에 의해 범위를 설정할 문제이지만 공원의 일부 예컨대 공원 내 매점 일부 등에 대한 운영권을 주는 방식 등 기부자에게 수익자 1인을 지정할 권한을 주는 방식 등의 기부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총 기부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권이 인정된다든지 하는 경우이다. 기부 후 갑작스런 재산의 변동이나 배우자 기타 상속인 등에 대한 법정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어느 정도 이러한 분쟁 해결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171) 박훈·이상신, 전계발표문, 2009, 103-104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이것이 과연 기부자의 단독재산인지 문제될 여지가 있다. 부부가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은 공유로 추정하고, 이혼 시에는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중 형성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반대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실질적으로는 배우자와의 공유재산인데 명의가 기부자의 단독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기부가 되었다면 배우자가 반대하는 것은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심정적으로는 그 자손들도 자신이 재산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십상이어서 더더욱 그러하다. 민법개정안은 전체 재산 중 절반에 대해서 배우자공제를 한 후 나머지 재산에 대해 상속을 개시하도록 하는 체제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처리방안을 시사해주는 예로 볼 수 있다. 특히 기부 후 재산상태에 변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기부자가 곤란한 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부를 하더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수익자지정권을 수여하는 방안을 인정해 준다면 배우자나 자손들의 반대를 완화시키면서 동시에 기부자의 재산상태 변화의 위험성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합리적인 범위는 입법상의 판단사항이지만, 합리적인 범위에 속한다면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그에 따른 세제혜택, 예컨대 수익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2) 지정된 용처를 위반한 사용에 관한 문제

용처를 지정하여 기부한 기부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재단법인의 목적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민법 45조 2항)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정에 따른 계약위반이라고 인정할 수는 있어도 공익을 위한 기부라는 차원에서 완전한 계약위반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법원에 맡겨져야 할 것이다. 다만,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용처를 지정하여 기부한 기부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계약위반이라는 이유로 기부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발생할 때, 만약 해당 기부금을 다른 단체에 기부한다면 가산세나 가산금을 추징함이 없이 종전의 세제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 6 절 기부금 수령단체의 투명성 제고

1. 공익법인 규모별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관리감독 방법

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현행 법령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¹⁷²⁾

첫째, 모든 법인에 대해 소액의 기부이더라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제도 등은 행정비용만의 증가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둘째, 세제 혜택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영리법인의 자치를 최대한 인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미국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시의무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즉 공익법인의 인원이나 보유자산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그 규모에 따른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상법상 주식회사의 휴면회사제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상 활동을 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산 및 청산을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3-4월 사이에 출연재산보고서, 외부감사보고서, 결산서공시, 세무확인서 제출 등 다양한 신고가 몰려 있어 제도적 개선을 통해 이 중신고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외부감사보고서 제출법인에

172) 박훈·이상신, 전계발표문, 2009, 101-102면.

대하여는 ‘외부전문가로부터의 세무확인’보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

2. 수입 및 사용내역의 공시

공익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을 표방하는 것만으로 해당 단체에 기부를 하는 행위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부를 하는 자의 입장에서 해당 단체가 어느 정도의 기부금을 모집하는가가 기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단체에 기부를 함으로써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문에 실질적인 혜택을 효과적으로 주도록 의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사용내역을 확인함으로써 모집된 기부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할 수 있다.

공익법인¹⁷³⁾은 결산서류 등¹⁷⁴⁾을 해당 공익법인의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 외부감사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규제가 없었던 것과 달리, 공시를 하지 않거나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등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를 부과한다.¹⁷⁵⁾ 다만, 이러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정보공시가 자산기준으로 10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에 한정되므로 기준에 미달하는 공익법인과 종교법인에 대해서는 공시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173)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과 종교법인은 제외된다. 상증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내지 제2항.

174)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해당 공익법인 등의 대표자·이사·출연자·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주식보유 현황 등을 말한다.

175) 공시의무 불이행 및 허위공시에 따른 시정요청 불이행시 자산총액의 0.5% 가산세를 부과한다. 상증법 제78조 제11항.

최근 시민사회정보시스템(Civil Information System)을 국내에 최초로 도입한 민간단체인 가이드스타한국재단¹⁷⁶⁾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익법인의 회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국세청이 Form 990을 통해 자선단체와 재단이 제출한 자료 170만여 개를 가이드스타 US에 제공하여 모든 단체들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상에 게시하고 있다. 연간 2만5000달러 이상의 기부금 수입이 있는 단체들은 가이드스타 홈페이지에 회계를 공시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는 영국 및 웨일스의 자선단체 위원회(Charity Commission)와 협조하여 등록된 자선단체 16만8000여 개에 대한 정보를 가이드스타(GuideStar) UK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연간 1만 파운드 이상의 기부금 수입이 있는 자선단체들은 회계 공시의무를 가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많은 고정자산을 가질 필요가 없는 자선단체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이 10억 원을 넘기 위해서는 기부 받은 자산이 그 정도 수준이어야 한다는 뜻이 된다. 물론 그 기준을 넘어서는 단체들도 있겠지만 예컨대 연말 전에 모집된 기부금의 상당 부분을 사용하는 단체의 경우 연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많은 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시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미국과 같이 연간 수입기준으로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공익법인에 관한 여러 규제를 한 곳에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각종 법령에 존재하는 결산서류 공시 등 의무를 세법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고, 비영리법인의 설

176) www.guidestar.or.kr

립 및 운영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면세자격의 취득 및 유지 등에는 국세청에서 일괄하여 관리하는 방안 마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제 6 장 결 론

금융위기, 사회양극화 심화 등으로 감세와 재정지출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경제위기 극복 및 사회통합을 위한 기부문화 활성화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부에 대한 조세 규정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기부금 공제제도는 기부하는 자가 기부금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가 공제분에 대해 보조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는 원래 징수하여야 할 세수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기부금 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것은 불필요한 세수의 누수 방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부금 공제대상 단체에 대한 조세지원의 효과를 고려할 때 지정단체의 적정성은 조세지출의 적정성 문제와 결부되므로, 기부금 공제제도가 원래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제도를 올바르게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행 기부금 공제제도는 공익성 기준이 불명확함에 따른 조세혜택의 불합리성, 기부금 공제대상 여부 및 공제 수준에 대한 일관성 결여, 각 공제한도의 타당성 결여, 공제율 격차의 과다 등에 대한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다. 공익성기부의 사회적 효과를 고려하였을 때, 원래의 입법취지가 법규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관련 법규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고찰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 고찰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부금 공제제도의 헌법적 문제와 관련하여 입법형식의 측면과 입법내용의 측면에서 각각 고찰하였다. 차별이 문제되는 유형으로 공제 여부와 평등, 공제의 방식 또는 공제의 수준과 평등, 공제를 위한 요건과 평등을 들 수 있다. 기부자에 따른 차별은 기부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여부, 공공기관(각 기관별), 학교(각 학교별), 종교단체(각 종교 또는 단체별), 사회복지단체(각 유형 또는 단체별) 등은 기부대상에 따른 차별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별들은 기부금 소득공제제도가 조세 또는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엄격한 심사가 요구된다고도 할 수 있으나 공익목적에 위하여 특별한 혜택을 부여한다는 측면이 보다 강조되며, 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라 유연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심사의 기준은 합리성 심사 내지 자의금지심사가 적용될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인지 여부는 무엇보다 공제의 취지인 “공익성”의 유무와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이러한 공익성의 판단은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익성 기준에 대한 법적 정합성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을 살펴보았다. 우선, 공익의 일반적 개념을 정의내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 세법상 공익의 개념 역시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공익이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정의내리기 힘들다는 점은 공익성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공익사업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 단체를 열거하고 있는 현행법의 태도를 합리할 수 있는 논거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열거주의는 필연적으로 기부금 공제대상 단체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세법의 개정을 필요로 한다. 입법 기술상 한 형태로서의 열거주의가 가지는 장·단점은 기부금 공제제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공익성을 가지는 단체가 법에 빠짐없이 규정되지 않는 이상 비슷한 수준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중 법에 규정된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정립되지 않은 공익의 개념은 조세혜택의 차등적 부여에 대한 현행 규정의 근거를 약화시킨다. 공익성과 무관한 단체들이 현행 법령에서 기부금 공제대상단체로 열거되는 경우는 적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였을

때 공익의 개념을 법에 담는 것보다 기부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단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기부금의 재분류에 관한 문제를 고찰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이나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단체이기만 한다면 기부 받은 재산 등의 실제 사용처와 관계없이 법정이나 지정기부금의 분류를 적용받는다. 이러한 방식은 기부 받은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평가는 배제한 채 기부 받은 단체가 법에서 어떻게 분류되는지에 따라 공제혜택을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미국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의 기부금공제방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며, 공제한도도 너무 적고, 이월공제 혜택 등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비판도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기부금공제단체 지정의 문제점, 사용처를 고려하지 않는 혜택의 부여의 문제점이 선결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비판을 반영한 개선안은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을 적용받는 단체들이더라도 실제로 모집한 기부금을 어느 사업에 지출하는지 실제 사용비율을 따져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기부방법 및 평가에 관해 다음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우선 현행법에 따르면 인적용역의 제공은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적법한 기부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을 기부하는 경우 현행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비영리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은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 고유목적사업과 무관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부를 받을 당시 고유목적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하지만 세무관서의 판단을 받지 않는 이상 그러한 판단이 옳은지 명확하지 않다. 비상장주식을 기부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평가에 관한 사항이다. 상장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 해당 주식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이에 대해 이론적으로도 이견이 많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부방법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물기부 부동산 등 관리의 용이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주식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지주회사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약이 있고, 최근 큰 사회 문제가 되었다. 이제는 여러 다각도의 측면에서 기부방법을 다각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나 기부를 받는 단체간의 지속적인 정책협의를 통해 기부형태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여, 현실태와 향후 기부를 확산시키기 위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기부자의 의사를 반영한 제도의 구축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소액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행위를 통해 이전되는 금전이나 재산의 사용은 기부 이후 기부자가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이 통상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고액을 기부하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라는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현행법상 공익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그 범위 또한 굉장히 넓어 단순히 공익사업을 수행한다는 것만으로 기부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특정 용도로 사용을 원하는 기부자가 나타날 가능성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기부자의 의사와 적절히 조화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기부가 있는 경우 기부재산에 대한 소유권 및 관리권이 수증단체에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기부자의 수익자 지정권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의 수익권을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용처를 지정하여 기부한 기부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계약위반이라는 이유로 기부금을 돌려받는 경

우가 발생할 때, 만약 해당 기부금을 다른 단체에 기부한다면 가산세나 가산금을 추징함이 없이 종전의 세제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현행 법령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법인에 대해 소액의 기부이더라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제도 등은 행정비용만의 증가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둘째, 세제 혜택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영리법인의 자치를 최대한 인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미국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시의무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즉 공익법인의 인원이나 보유자산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그 규모에 따른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상법상 주식회사의 휴면회사제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상 활동을 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산 및 청산을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수입 및 사용내역의 공시에 관한 사항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미국과 같이 연간 수입기준으로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I. 국내문헌

1. 논 문

이은미, 기부금세제에 관한 소고 - 소득세법상 기부금공제제도를 중심으로 -, 원광법학 제25권 제4호, 2009.

2. 간행물

김진수·김태훈·김정아, 주요국의 기부관련 세제지원제도와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09.8.

박 훈·이상신, 개인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결과 발표, 2009.

손원익·박태규, 한국의 민간기부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8.2.

손원익·이순태·박세경,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2010.

옥무석, S/W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정책연구 04-13.

II. 외국문헌

1. 저 서

金子宏, 租税法(第14版), 弘文堂, 2009.

Paul R, McDaniel, Federal Income Taxation, Cases and Materials, Third Edition, 1994.

2. 논 문

Boris I. Bittker and George K. Raedart, The Exemp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 from Federal Income Taxation, 85 Yale Law Journal, 1976.

Boris I. Bittker, Charitable Contribution : Tax Deductions or Matching Grants?, 28 Tax Law Review, 1972.

Mark P. Gergen, The Case For a Charitable Contributions Deduction, 74 Virginia Law Review, 1989.

Paul R. McDaniel, Federal Matching Grants for Charitable Contribution : A Substitute for the Income Tax Deduction, 27 Tax Law Review 1972.

Saul Levmore, Taxes as Ballots, 65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1998.

William D. Andrews, Personal Deduction in an Ideal Income Tax, 86 Harvard Law Review, 1972.

3. 간행물

Giving USA foundation, “The Annual Report on Philanthropy for the Year 2010 - Executive Summary”, 2011.

John G. Simon, Charity and Dynasty under the Federal Tax System, in Economics of Nonprofit Institutions, Susan Rose-Ackerman, 1986.

개

임

<붙임 1>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 단체

1.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번호	세부 단체	비 고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p>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p> <p>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p> <p>나. 비영리 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증설, 시설 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만 해당한다)</p> <p>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p> <p>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p> <p>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p> <p>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p> <p>사.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p> <p>아.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p> <p>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에 한한다)</p>	<p>자목은 별표 6의4</p>

번호	세부 단체	비고
5	<p>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p> <p>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p> <p>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p> <p>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p> <p>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p> <p>마.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p> <p>바.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p> <p>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p> <p>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p> <p>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p> <p>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p> <p>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p> <p>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p> <p>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p>	
6	<p>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p>	<p>별표 6의5</p>
7	<p>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p> <p>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p> <p>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p>	<p>별표 6의6</p>

2. 한국학교의 범위((법칙 제18조의3 제4항, 별표 6의4)

번호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1	건국유·소·중·고등학교	2011.7.1. 부터 2016.12.31. 까지
2	교토국제중학교고등학교	
3	금강학원소중고등학교	
4	대련한국국제학교	
5	동경한국학교	
6	무석한국학교	
7	북경한국국제학교	
8	브라질한국학교	
9	상해한국학교	
10	선양한국국제학교	
11	아르헨티나한국학교	
12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13	젯다한국학교	
14	천진한국국제학교	

3. 전문모금기관 지정(법칙 제18조의3 제4항, 별표 6의5)

번호	단체명	추천기관	설립목적	비고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보건복지부	기부금모집배분	2011.7.1 ~ 2016.12.31
2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행정안전부	기부금모집배분	

4. 공공기관 지정(법칙 제18조의3 제4항, 별표6의6)

번호	법정기부금단체	지정 기간
1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한국과학창의재단	2011.7.1. 부터 2016.12. 31.까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별표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3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4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6	「독립기념관법」에 따른 독립기념관	
7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8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9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3조에 따른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붙임 1>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 단체

번호	법정기부금단체	지정 기간
12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2012여수 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13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교류재단	
14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5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재단	
16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18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19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	
20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른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	
21	「포플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포플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2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붙임 2>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번호	지정기부금단체	비고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3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4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5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	
6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u>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u>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기획재정부

번호	지정기부금단체	비고
	<p>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p> <p>(4)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p> <p>(5)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제8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p>	홈페이지에 공고
8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u>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u>	
9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11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u>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u>	별표 6의3
12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번호	지정기부금단체	비고
	<p>가.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p> <p>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다만, 1)에 따른 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말한다) 범위의 금액은 1)에 따른 양로시설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지급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2)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전문병원 3)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 4)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이용자 본인이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가를 전부 부담하는 시설 <p>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다) 외의 자가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물 판매시설 3)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p>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p>	

번호	지정기부금단체	비고
	<p>마.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p> <p>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p> <p>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p> <p>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p> <p>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노숙인 시설</p> <p>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p>	
14	<p>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외국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국제기구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외국법인 또는 국제기구(이하 이 조에서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지정기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p> <p>가. 비영리외국법인으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거나 국제기구일 것</p> <p>나. 제1항제1호사목(1)부터 (5)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p>	<p>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공고</p>

※ 1~ 8의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별표 6의2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제18조제1항 관련)

번호	지정기부금단체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3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또는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한일친선협회 및 한일협력위원회
4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그 산하 조직을 포함한다)
5	어린이육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8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경우회
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10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11	「결핵예방법」에 따른 대한결핵협회
12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13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번호	지정기부금단체
1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15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1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17	「도서관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된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18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1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
20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사학진흥재단
21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및 환경운동연합
2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23	「과학관육성법」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2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
2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26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각 단체
27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
28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시설법인
29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번호	지정기부금단체
3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3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중앙회
33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3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35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카우트주관단체
36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청소년연맹
37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38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39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40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
4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42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4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44	「산지관리법」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45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
4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47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4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협력재단
49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50	「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번호	지정기부금단체
5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52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53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5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55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56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중전의 친환경상품진흥원의 업무로 한정한다)
57	「소방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58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59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60	「공탁법」에 따라 설립된 공탁금관리위원회
6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보호협회
62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6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64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에 따른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65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재단
6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67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번호	지정기부금단체
68	「재해구호법」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69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상공인진흥원
70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등산지원센터
71	「도서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서관협회
72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73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간의 한-아세안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설립된 한-아세안센터
74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협회
7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경영진흥원
76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
77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에 따른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7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79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80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
8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별표 6의3

지정기부금의 범위(제18조제2항 관련)

번호	기부금
1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번호	기부금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시설비·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4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5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사업회에 전쟁기념관 또는 기념탑의 건립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출연하는 기부금
7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 및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의 건립비와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설만 해당한다)의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9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의 정보자원(정보 및 설비, 기술, 인력 등 정보화에 필요한 자원을 말한다) 도입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0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자원 조성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1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2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3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여성경제인박람회개최비 또는 연수원 및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5	「방송법」에 따라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번호	기부금
16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지역협의회 및 그 전국연합회에 청소년 선도보호와 범법자 재범방지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7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지출하는 출연금
18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9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20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로 기부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에 근로자훈련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2	「숙련기술장려법」 제6조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숙련기술장려적립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와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에 각각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4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5	사단법인 한국중화총상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화상대회 개최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번호	기부금
26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한다)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사업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농수식품씨시오연합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28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소방공제회에 직무수행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지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한국장애경제인협회에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비, 장애경제인 창업지원사업비, 장애경제인협회 회관·연수원 건립비, 장애경제인대회 개최비 및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0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른 대한민국헌정회에 정책연구비 및 헌정기념에 관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1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 재정지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32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신용대출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그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4.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2011년 9월 30일 현재 1841개 단체가 지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명단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공고되고 있다.

< 붙임 3 > 소득세법상 기부금대상민간단체 (2011.6.30. 현재)

단체명	대표자	사업목적	등록번호
원누리후원회	정은택	의료비 지원사업, 재활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전라북도 제2011-5호
참여와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김홍영외 2인	민주적 지역 공동체를 위한 지원	강원도 제157호
생명누리공동체	권술용	생명과 평화의 정신에 기초한 마을공동체 운동	서울 제96호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모임	유정칠	자연생태계와 경관 보존	환경부 제2002-51호
지구시민운동연합	권영주	나눔실천, 교육문화, 사회공헌네트워크 결성	보건복지부 제138호
울산시민연대	박영규 외 2인	참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사회 정의를 실천	울산시 제77호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시민과 환자를 위한 단체로서 보건의료의 공공성 추구	보건복지부 제29호
초록교육연대	이기영	교육 현장에서 초록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서울시 제1002호
함께사는사람들	임은동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	보건복지부 제62호
희망청원 평화봉사단	김경애	지역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 소외계층에 지원	충북 제16호
한국정신문화 공동체	김수연	다문화사회로 인한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립	문광부 제2007-1호

붙임

단체명	대표자	사업목적	등록번호
국학운동시민연합	이성민	민족정신 회복운동, 건강사회실현운동, 홍익교육운동	문광부 제2004-4호
이주민노동 인권센터	안건수	이주노동자의 교육 및 문화교류사업 등	충북 제2006-11호
울산이주민센터	김광식	이주민 생활상담, 한글교육, 의료구호사업 등	울산시- 제261호
문화연대	강내희	사회적 공공성과 다양성을 확대시키는 운영기반 등	문광부 제2001-9호
포항시민간 스포츠문화재단	정석목	스포츠문화행사 및 독거노인과 결식아동 돕기 등	경북 제2008-3호
한국동지만들어 주기운동본부	박윤산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 사회개혁 연대활동 등	서울시 제933호
아시아의 친구들	이미영	이주노동자 인권교육사업, 지역문화교육사업 등	경기 제2청사- 201호
한국근육 장애인협회	조병식	신경, 근육계 장애인의 발생 예방 및 치료연구지원 등	보건복지부 제2009- 124호
크리스천 라이프센터	이문희	건강가정운동, 지역사회복지, 직장인아카데미 등	서울시 제904호
한국재정지원 운동본부	차명식	소외아동 및 불우이웃돕기 등	강원도 제2002- 178호
평등교육실현을 위한천안학부모회	소삼영	대시민교육사업, 교육개혁지원사업, 청소년문화사업 등	충남 제2002- 175호

<붙임 3> 소득세법상 기부금대상민간단체(2011.6.30. 현재)

단 체 명	대표자	사업목적	등록 번호
포항사랑실천의집	남태규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 등	경북 제2011-5호
한국반려동물 사랑연합	정은화	반려동물 관리에 대한 교육 및 미자립보호소 지원 등	인천 제2008-1호
희망을여는사람들	손명찬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 후원	부산시 제322호
한국사랑봉사협회	윤옥중	백혈병·소아암·심장병 어린이와 장애인에게 봉사 및 지원	서울 제2005- 682호
고양시장래인 통합부모회	전미수	고양시 장애인 가족체계 지원사업, 교육복지, 정책사업	경기 제2청사- 281호
성남참여자치 시민연대	조희태	시민교육, 지방행정 감시 등	경기 제2000-13호
지구를 살리는 청주여성모임	김미자	여성·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및 대안제시, 교육활동	충북 제2008-10호
함께하는 거창	신용균	예산감시운동, 모니터링 및 정책제안, 장학사업	경남 제2006- 415호
전국카톨릭지역아동 센터공부방협의회	전영순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 교육 및 복지지원, 교육사업	보건복지 가족부 제152호
결혼이민자 여성평등찾기	김혜련	여성의 권익을 위한 역량강화와 경제세력화 사업	서울 제2008- 996호

붙임

단체명	대표자	사업목적	등록번호
청소년안전센터	김상호	안전문화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사업, 관련 교육활동	경북 제2006-14호
좋은사람 좋은세상	강성현	소외 아동·청소년 복지지원 및 봉사활동 등	경기(2청) 제2009-330호
캄보디아의친구들	정효경	캄보디아 빈민지역 의료지원 및 교육지원 사업	부산 제2009-464호
세계다문화진흥원	김미영	국내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회통합 등	경기(1청) 제2009-58호
서울국제 친선협회	이순주	국내거주 외국인의 현지적응 도움과 국제교류 등	서울 제2003-451호
고양사회창안센터	심옥섭	고양사회창안센터 및 시민포럼 운영 등	경기 제2010-1113호
중앙조이봉사단	김석훈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정신 구현과 지역사회 발전	서울 제2009-1076호
충북참여자치 시민연대	노영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행동으로 지역공동체 실현 목적	충북 제2002-60호

* 위 단체들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인정됨.